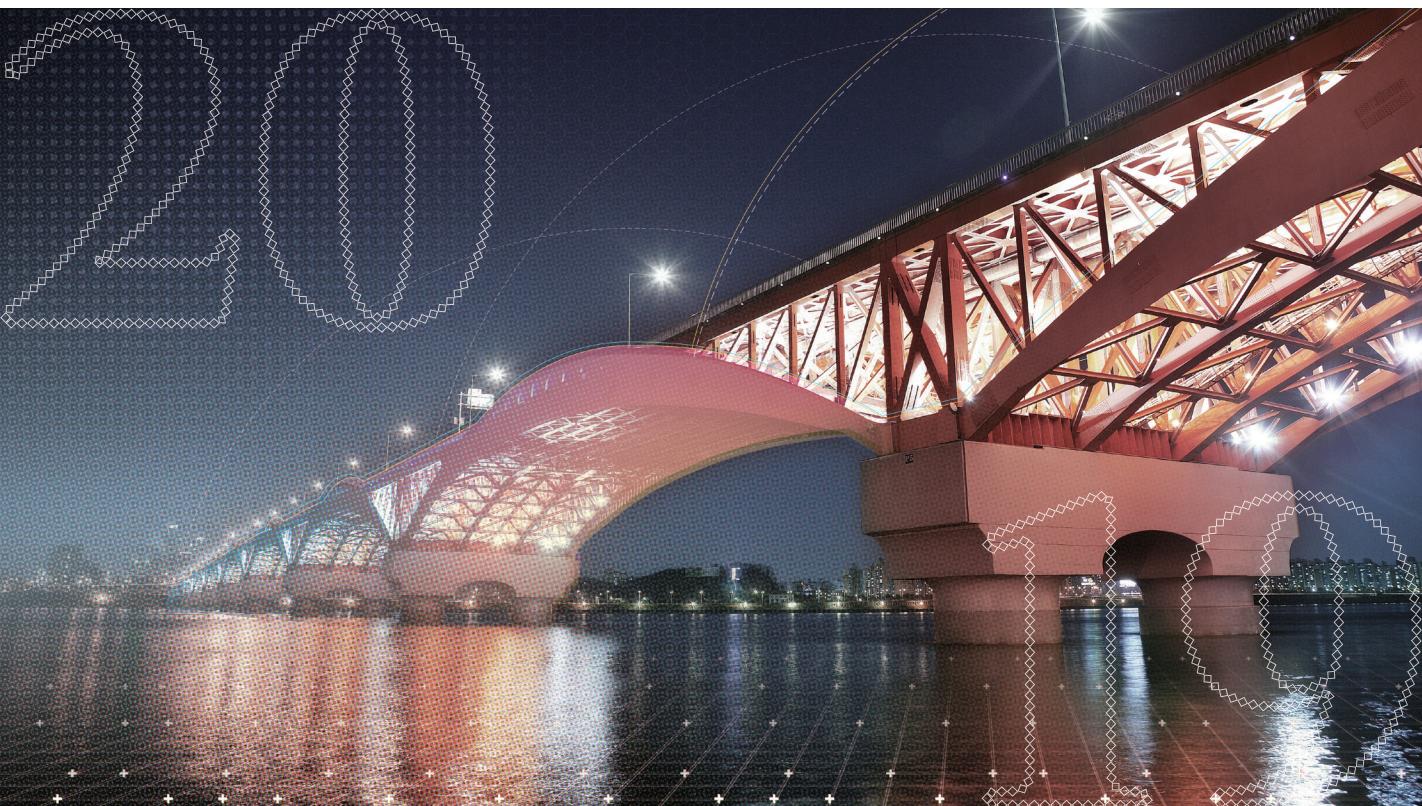


# 2019년도 건설근로자 고용복지 사업연보



## 공제회 사업 주요 통계 현황(최근 5년간)

### 연도별 퇴직공제 납부사업장 및 납부액



### 연도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피공제자 수 누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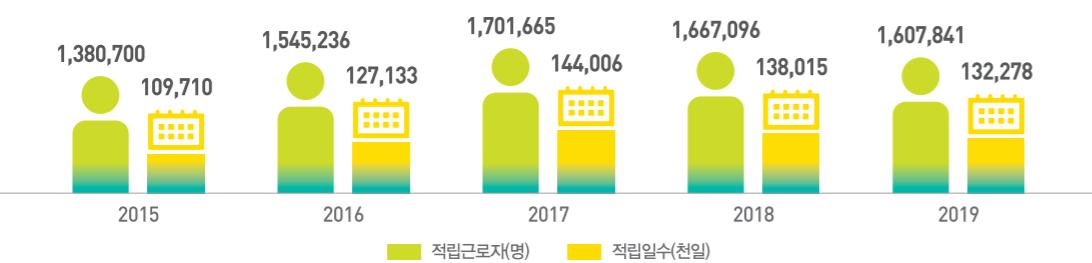
### 연도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및 지급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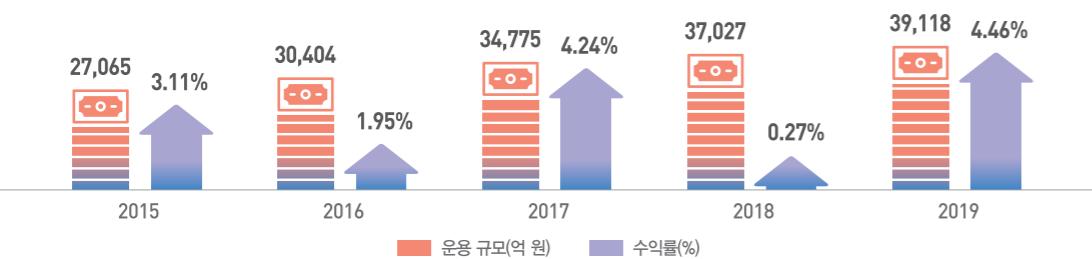
### 연도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누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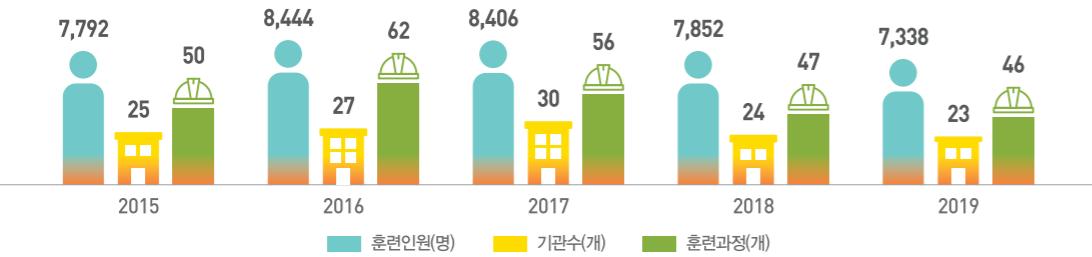
### 연도별 퇴직공제 적립근로자 수 및 적립일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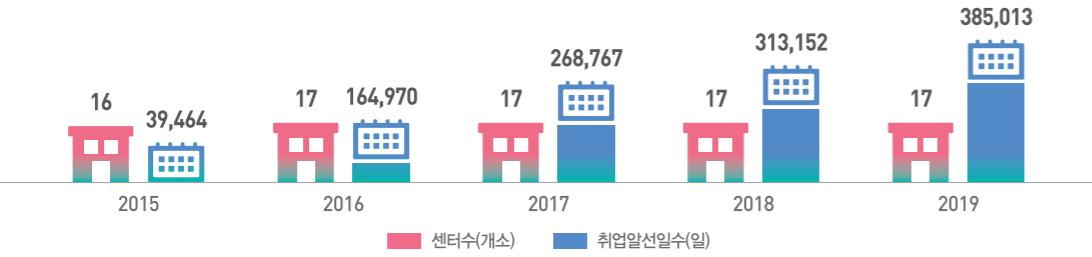
### 퇴직공제부금 운용규모 및 수익률



### 건설근로자 기능향상 훈련사업



### 건설근로자 무료취업지원사업



### 건설근로자 복지지원사업



고용이 불안정하여 시중 은행권 이용이 어려운 건설근로자를 위해 본인의 퇴직공제금 적립액의 50% 범위 내에서 주택자금, 학자금, 입원·수술비 등 긴급 필요자금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무이자 대부

건설현장, 일상생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상해 등에 대한 다양한 보장

열악한 외부환경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건강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건설근로자에게 무료 종합 건강검진을 지원

생활형편이 어려운 건설근로자의 자녀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에 대해 자녀장학금 지원

청년 건설근로자의 결혼·출산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

건설업에 공적이 있거나 감동있는 사연을 통해 선정된 건설근로자 가족을 격려하고 해외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

건설근로자에 대한 직업 이미지 개선 등을 위해 매년 사진공모전 개최 및 수상작 전시

건설현장 및 새벽인력시장을 직접 찾아가 퇴직공제 적립내역 확인 및 축소신고 접수, 고용·복지사업 안내 등 상담서비스

매년 11월 22일 건설기능인의 날(국토부 지정 기념일) 기념식에서 건설업 발전에 공적이 있는 근로자를 발굴·추천하여 훈장 등을 수여하고 노고를 치하·격려

# CONTENTS

## PART 01

### 건설근로자공제회 개관

| 제1장 | 조직 및 기능 ..... 20

- 1. 설립목적 및 주요연혁 ..... 20
- 2. 기능 ..... 21
- 3. 조직 및 인원 ..... 22
- 4. 회계 ..... 23

| 제2장 | 주요사업 ..... 26

## PART 02

### 주요사업 현황

제1부 퇴직공제사업 ..... 31

| 제1장 | 사업 개요 ..... 32

- 1. 가입 범위 ..... 32
- 2. 퇴직공제 이행 ..... 33
- 3. 퇴직공제금 지급 ..... 33

| 제2장 | 주요 추진 사업 ..... 34

- 1. 공제가입 사업장 관리 강화 ..... 34
- 2. 피공제자 권익 보호 및 지급업무의 편의성 제고 ..... 38
- 3. 피공제자 정보관리 및 공제부금 수납처리 강화 ..... 39

| 제3장 | 추진 현황 ..... 40

- 1. 퇴직공제 가입 현황 ..... 40
- 2. 공제부금 납부 및 적립일수 ..... 41

- 3. 퇴직공제 가입 근로자 현황 ..... 41
- 4. 퇴직공제금 지급 현황 ..... 42

### 제2부 고용지원사업 ..... 43

| 제1장 | 기능향상훈련 ..... 44

- 1. 사업 개요 ..... 44
- 2. 주요 추진 사업 ..... 45
- 3. 추진 현황 ..... 46

| 제2장 | 무료취업지원 ..... 50

- 1. 사업 개요 ..... 50
- 2. 주요 추진 사업 ..... 50
- 3. 추진 현황 ..... 52

| 제3장 | 관련 사업 ..... 53

- 1. 건설기능인등급제 도입 추진 ..... 53
- 2. 건설인력 고용지수 산정 ..... 54

### 제3부 고객복지사업 ..... 57

| 제1장 | 사업 개요 ..... 58

| 제2장 | 주요 추진 사업 및 추진 현황 ..... 60

- 1. 생활안정 및 금융지원 ..... 60
- 2. 건설근로자 건강관리 지원 ..... 61
- 3. 건설근로자 자녀교육 지원 ..... 62
- 4. 건설근로자 가족친화 지원 ..... 64
- 5. 건설근로자 상담서비스 ..... 65
- 6. 건설근로자 직업 이미지 개선 ..... 66

## CONTENTS

### PART 03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통계

제1장   건설경기 및 건설노동시장 동향	83
1. 건설경기 동향	83
2. 건설노동시장 동향	88
제2장   퇴직공제사업 운영실적	91
1. 개요	91
2. 공제부금 적립일수	95
3. 공제부금 납부	116
4. 퇴직공제금 지급	125

제4부   자산운용사업	69
제1장   사업 개요	70
제2장   주요 추진 사업	71
1. 자산운용 관련 위원회 운영	71
2. 효율적인 자산운용	72
3. 자산운용 리스크관리	74
제3장   추진 현황	75
1. 자산운용 현황	75
2. 운용 규모 및 수익률	76

### PART 04

#### 부록

퇴직공제사업 세부 통계	137
--------------	-----

## CONTENTS

### 표 차례

〈표 1〉 주요 연혁	20
〈표 2〉 주요 기능	21
〈표 3〉 직급별 정원	23
〈표 4〉 2019년도 부금회계 수입 및 지출 현황	24
〈표 5〉 2019년도 특별회계 수입 및 지출 현황	24
〈표 6〉 2019년도 일반회계 수입 및 지출 현황	25
〈표 7〉 2019년도 외부수탁사업회계 수입 및 지출 현황	25
〈표 8〉 퇴직공제의 당연가입 대상 건설공사 범위의 확대 추이	32
〈표 9〉 전자카드제 적용사업장 현황	36
〈표 10〉 전자인력관리 현황	36
〈표 11〉 전자카드 발급 및 계좌 현황	37
〈표 12〉 2019년도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시스템 연계현황	37
〈표 13〉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현황	40
〈표 14〉 공제부금 납부 및 적립일수 현황	41
〈표 15〉 퇴직공제 가입 근로자 현황	41
〈표 16〉 퇴직공제금 지급 현황	42
〈표 17〉 고용노동부 위탁 훈련사업 추진 실적	46
〈표 18〉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사업 추진 실적: 직종별	47
〈표 19〉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사업 추진 실적: 과정별	47
〈표 20〉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사업 추진 실적: 연령별	48
〈표 21〉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사업 추진 실적: 성별	48
〈표 22〉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사업 추진 실적: 참여유형별	49
〈표 23〉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사업 추진 실적	52

〈표 24〉 최근 3개년 건설고용지수 점수별 업체분포 현황	55
〈표 25〉 최근 3개년 건설고용지수 임금체불 명단공개 감점 업체 현황	55
〈표 26〉 생활안정대부 지급 현황	61
〈표 27〉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추진 현황	61
〈표 28〉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자녀장학금 추진 현황	62
〈표 29〉 건설근로자 협성장학금 추진 현황	63
〈표 30〉 고등학생 자녀 무료 인터넷 수강 지원 추진 현황	63
〈표 31〉 결혼·출산 지원금 지원 추진 현황	64
〈표 32〉 가족 힐링캠프 추진 현황	65
〈표 33〉 종합지원 이동상담버스 운영 현황	66
〈표 34〉 노무·건강 등 건설근로자 상담서비스 실시 현황	66
〈표 35〉 건설기능인의 날 “정부포상” 수여 현황	67
〈표 36〉 사진·영상공모전 추진 현황	68
〈표 37〉 2019년 사진·영상전시회 실시 현황	68
〈표 38〉 공제부금 자산운용 현황	76
〈표 39〉 공제부금 운용 규모 및 수익률 추이	77
〈표 40〉 특별회계 운용 규모 추이	77
〈표 41〉 건설투자 동향	85
〈표 42〉 건설업취업자의 직종별 구성 변화: 최근 10년간	89
〈표 43〉 퇴직공제사업 운영 현황(1998~2019)	92
〈표 44〉 연도별 공제부금 적립근로자 및 적립일수 추이(2006~2019)	96
〈표 45〉 성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98
〈표 46〉 연령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99
〈표 47〉 직종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100
〈표 48〉 적립일수규모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101

## CONTENTS

〈표 49〉 지역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103
〈표 50〉 월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105
〈표 51〉 내·외국인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106
〈표 52〉 신규 가입자의 성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107
〈표 53〉 신규 가입자의 연령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108
〈표 54〉 신규 가입자의 직종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109
〈표 55〉 신규 가입자의 지역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111
〈표 56〉 외국인 근로자의 성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112
〈표 57〉 외국인 근로자의 연령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113
〈표 58〉 외국인 근로자의 직종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114
〈표 59〉 외국인 근로자의 지역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116
〈표 60〉 연도별 퇴직공제부금 납부사업장 및 납부액 추이(1998~2019)	117
〈표 61〉 공사유형별 퇴직공제부금 납부 현황	119
〈표 62〉 납부액 규모별 공제부금 납부현황	120
〈표 63〉 공사규모별 공제부금 납부 현황	122
〈표 64〉 지역별 공제부금 납부 현황	123
〈표 65〉 공사종류별 공제부금 납부 현황	125
〈표 66〉 연도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및 지급액 추이(1999~2019)	126
〈표 67〉 성별 퇴직공제금 지급 현황	128
〈표 68〉 연령별 퇴직공제금 지급 현황	129
〈표 69〉 직종별 퇴직공제금 지급 현황	130
〈표 70〉 적립일수별 퇴직공제금 지급 현황	132
〈표 71〉 지급액규모별 퇴직공제금 지급 현황	133
〈표 72〉 지급사유별 퇴직공제금 지급 현황	135

## 그림 차례

〈그림 1〉 조직도(2019. 12. 31. 시행) : 3본부 1실 12팀, 7지사 8센터	22
〈그림 2〉 사업 개요	26
〈그림 3〉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사업 추진 체계	45
〈그림 4〉 공제부금 운용 규모 및 수익률 추이	76
〈그림 5〉 국내 건설수주 중장기 추이	84
〈그림 6〉 발주 부문별 국내 건설수주 추이	85
〈그림 7〉 건설투자와 건설기성 증감률 추이	86
〈그림 8〉 건설수주 및 건설기성 순환 변동치	86
〈그림 9〉 건설투자 순환 변동치 추이	87
〈그림 10〉 건설경기 선행 및 동행 지표의 경기순환주기 중 현재 위치	87
〈그림 11〉 건설투자 및 건설업취업자 추이	88
〈그림 12〉 건설기능인력의 규모 및 고령화 추이	90
〈그림 13〉 퇴직공제 피공제자 및 퇴직자 누계 추이(1998~2019)	93
〈그림 14〉 공제부금 납부액 누계 및 연도별 수지 추이(1998~2019)	94
〈그림 15〉 연도별 퇴직공제 적립근로자 및 적립일수 추이(2006~2019)	96
〈그림 16〉 성별 공제부금 적립근로자수	98
〈그림 17〉 성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98
〈그림 18〉 연령별 공제부금 적립근로자수	99
〈그림 19〉 연령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99
〈그림 20〉 직종별 공제부금 적립근로자수	100
〈그림 21〉 직종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100
〈그림 22〉 적립일수규모별 공제부금 적립근로자수	101
〈그림 23〉 적립일수규모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101

## CONTENTS

〈그림 24〉 지역별 공제부금 적립근로자수	102	〈그림 49〉 납부액규모별 공제부금 납부사업장	120
〈그림 25〉 지역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102	〈그림 50〉 납부액규모별 공제부금 납부액	120
〈그림 26〉 월별 공제부금 적립근로자수	104	〈그림 51〉 공사규모별 공제부금 납부사업장	121
〈그림 27〉 월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104	〈그림 52〉 공사규모별 공제부금 납부액	121
〈그림 28〉 내·외국인별 공제부금 적립근로자수	106	〈그림 53〉 지역별 공제부금 납부사업장	123
〈그림 29〉 내·외국인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106	〈그림 54〉 지역별 공제부금 납부액	123
〈그림 30〉 성별 신규 적립근로자수	107	〈그림 55〉 공사종류별 공제부금 납부사업장	125
〈그림 31〉 성별 신규 적립일수	107	〈그림 56〉 공사종류별 공제부금 납부액	125
〈그림 32〉 연령별 신규 적립근로자수	108	〈그림 57〉 연도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및 지급액 추이(1999~2019)	126
〈그림 33〉 연령별 신규 적립일수	108	〈그림 58〉 성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128
〈그림 34〉 직종별 신규 적립근로자수	109	〈그림 59〉 성별 퇴직공제금 지급액	128
〈그림 35〉 직종별 신규 적립일수	109	〈그림 60〉 연령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129
〈그림 36〉 지역별 신규 적립근로자수	110	〈그림 61〉 연령별 퇴직공제금 지급액	129
〈그림 37〉 지역별 신규 적립일수	110	〈그림 62〉 직종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130
〈그림 38〉 성별 외국인 적립근로자수	112	〈그림 63〉 직종별 퇴직공제금 지급액	130
〈그림 39〉 성별 외국인 적립일수	112	〈그림 64〉 적립일수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132
〈그림 40〉 연령별 외국인 적립근로자수	113	〈그림 65〉 적립일수별 퇴직공제금 지급액	132
〈그림 41〉 연령별 외국인 적립일수	113	〈그림 66〉 지급액규모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133
〈그림 42〉 직종별 외국인 적립근로자수	114	〈그림 67〉 지급액규모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133
〈그림 43〉 직종별 외국인 적립일수	114	〈그림 68〉 지급사유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134
〈그림 44〉 지역별 외국인 적립근로자수	115	〈그림 69〉 지급사유별 퇴직공제금 지급액	134
〈그림 45〉 지역별 외국인 적립일수	115		
〈그림 46〉 연도별 공제부금 납부사업장 및 납부액 추이(1998~2019)	117		
〈그림 47〉 공사유형별 공제부금 납부사업장	119		
〈그림 48〉 공사유형별 공제부금 납부액	119		

## CONTENTS

### 부표 차례

〈부표 1〉 연도별 피공제자수	139	〈부표 24〉 연도별 퇴직공제금 지급 피공제자 및 금액	220
〈부표 2〉 연도별 연령별 신규 피공제자수	140	〈부표 25〉 연도별 연령별 퇴직공제금 지급자수	221
〈부표 3〉 연도별 시도별 신규 피공제자수	142	〈부표 26〉 연도별 시도별 퇴직공제금 지급자수	223
〈부표 4〉 연도별 적립금액별 신규 피공제자수	144	〈부표 27〉 연도별 지급금액별 퇴직공제금 지급자수	225
〈부표 5〉 연도별 적립일수별 신규 피공제자수	146	〈부표 28〉 연도별 적립일수별 퇴직공제금 지급자수	227
〈부표 6〉 연도별 성별 신규 피공제자수	148	〈부표 29〉 연도별 성별 퇴직공제금 지급자수	229
〈부표 7〉 연도별 내외국인 피공제자수	149	〈부표 30〉 연도별 퇴직사유별 퇴직공제금 지급자수	230
〈부표 8〉 연령별 시도별 누적 피공제자수	150	〈부표 31〉 연령별 시도별 퇴직공제금 지급자수	231
〈부표 9〉 연령별 적립금액별 누적 피공제자수	160	〈부표 32〉 연령별 적립금액별 퇴직공제금 지급자수	233
〈부표 10〉 연령별 적립일수별 누적 피공제자수	170		
〈부표 11〉 연령별 성별 누적 피공제자수	180		
〈부표 12〉 연령별 내외국인 피공제자수	182		
〈부표 13〉 시도별 적립금액별 누적 피공제자수	184		
〈부표 14〉 시도별 적립일수별 누적 피공제자수	194		
〈부표 15〉 시도별 성별 누적 피공제자수	204		
〈부표 16〉 성별 적립금액별 누적 피공제자수	206		
〈부표 17〉 성별 적립일수별 누적 피공제자수	208		
〈부표 18〉 월별 연도별 적립일수	210		
〈부표 19〉 연도별 연령별 신규 외국인 피공제자수	211		
〈부표 20〉 연도별 시도별 신규 외국인 피공제자수	213		
〈부표 21〉 연도별 적립금액별 신규 외국인 피공제자수	215		
〈부표 22〉 연도별 적립일수별 신규 외국인 피공제자수	217		
〈부표 23〉 연도별 성별 신규 외국인 피공제자수	219		

2019년도

건설근로자 고용복지

사업연보

## PART 01

### 건설근로자공제회 개관

| 제1장 | 조직 및 기능

| 제2장 | 주요사업



## | 제1장 |

# 조직 및 기능



## 1. 설립목적 및 주요연혁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이라 한다)에 따라 퇴직공제사업, 복지증진사업 및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사업 등을 실시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설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공제회는 설립 당시 비영리법인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공제부금 규모 증가와 건설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고용·복지 서비스 제공 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13년 1월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 2. 기능

공제회의 기능은 건설근로자법과 공제회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데,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 및 피공제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유지, 공제부금의 수납과 퇴직공제금의 지급, 피공제자에 대한 자금의 대부, 적립된 공제부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 건설근로자에 대한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 복지증진 사업,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직업능력의 개발·향상, 취업지원을 위한 사업,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위의 사업에 딸린 사업 등이다.

건설근로자법 1차 개정(2002.12.30 법률 제6848호)을 통해 공제회의 명칭을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로 변경하고, 법률 제9조의2(공제회의 사업)를 신설해 퇴직공제제도 이외에 공제회가 수행할 다양한 사업을 열거했다. 공제회의 명칭을 변경한 취지는 공제회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서, '퇴직 이후'의 건설근로자를 위한 사업인 퇴직공제 이외에, '재직 중'인 건설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고용지원 및 복지사업을 수행하겠다는 취지였다.

그 결과 기존 정규직 근로자 중심의 각종 제도로부터 소외됐던 비정규직 건설근로자들은 보다 강화된 고용지원 및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고, 그 사업을 수행하는 공제회는 건설근로자를 위한 고용·복지종합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2019년 말에는 고용 및 복지 개선의 초석이 될 내용을 담은 건설근로자법이 개정(2019.11.26. 법률 제16620호)됐다. 퇴직공제금의 지급대상 확대, 소멸시효 연장, 수급 범위 개선 등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수급권을 강화하는 한편, 건설기능인등급제, 전자카드제,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납부제 등 신규 제도 도입의 근거를 마련했다.

<표 1> 주요 연혁

시기	내용
1996.12.3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
1997.12. 9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설립(노동부장관 인가)
1998. 1. 1	업무 개시(퇴직공제사업 시작)
2003. 7. 1	「건설근로자공제회」로 기관명 변경
2006. 1. 1	전국 광역권 7개 지부 개소
2011.10.26	기능훈련, 취업지원, 복지사업 시작(건설근로자법 개정)
2013. 1.31	고용노동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지정
2014. 4.25	건설근로자 종합지원상담센터 개소
2017. 1. 1	직제 개편(3본부 1실 10팀, 6지사 9센터)
2018. 1. 1	퇴직공제부금 인상(4,200원 → 5,000원)
2019.11.26	건설기능인등급제 · 전자카드제 도입, 퇴직공제금 지급대상 확대(건설근로자법 개정)

<표 2> 주요 기능

구분	건설근로자법 제9조의2(공제회의 사업)	공제회 정관 제36조(사업)
주 요 기 능	1.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 및 피공제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유지	1.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 및 피공제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유지
	2. 공제부금의 수납과 퇴직공제금의 지급	2. 공제부금의 수납 및 퇴직공제금의 지급
	3. 제16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3. 퇴직공제부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의 지급
	4. 피공제자에 대한 자금의 대부	4. 피공제자에 대한 자금의 대부
	5. 적립된 공제부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	5. 공제사업에 관련된 간행물의 발행 및 홍보사업
	6. 건설근로자에 대한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 복지증진 사업	6. 적립된 공제부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
	6의2.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직업능력의 개발·향상, 취업지원을 위한 사업	7. 건설근로자에 대한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 복지증진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사업 외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직업능력의 개발·향상, 취업지원을 위한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9.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운영을 위한 사업
		10. 정관 제1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및 조사·연구 등을 위한 사업
		11.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의 사업에 딸린 사업

### 3. 조직 및 인원

2019년 4월에 송인회 이사장이 취임한 후 ‘고객존중·효율 극대화·함께행복’이라는 새로운 경영방침을 구현하고 공제회 관련 제도·정책 등 대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을 재설계했다. 또한 개정된 건설근로자법이 2019년 11월 26일에 공포됨에 따라 신설된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의 기능조정 등 추가 개편이 이루어졌다.

신규 사업의 추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전자카드기획팀과 기능등급기획팀을 신설하였고, 경인지사 내 인천센터를 인천지사로 승격하여 지역단위의 사업장관리 및 고객대응을 강화하였다. 이로써 기존 3본부 1실 10팀 6지사에서 3본부 1실 12팀 7지사로 개편됐다.

경영전략본부에는 혁신기획팀·경영관리팀·정보화운영팀·리스크관리팀, 고객사업본부에는 공제사업팀·고용지원팀·고객복지팀·전자카드기획팀·기능등급기획팀, 자산운용본부에는 투자전략팀·증권운용팀·대체투자팀이 배치되었다. 소속기관은 7지사(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와 8센터(서울남부, 원주, 의정부, 창원, 안동, 전주, 제주, 청주)로 편제됐다.

2018년의 6명 증원에 이어 2019년에는 17명을 증원했는데, 공제부금 누락 방지를 강화하고 퇴직공제금의 지급대상 확대(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파공제자가 65세에 이를 경우 퇴직공제금 지급 등)에 대비하기 위한 인력 충원이 주된 목적이었다. 그 결과 정원은 134명에서 151명으로 증가했다.

<그림 1> 조직도(2019. 12. 31. 시행) : 3본부 1실 12팀, 7지사 8센터



<표 3> 직급별 정원

(‘19.12.31 기준, 단위 : 명)

구분	계	임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기타
정원	151	3	5	9	15	27	39	43	10	—
현원	149	3	4	10	15	25	29	53	10	—
과부족	△2	—	△1	1	—	△2	△10	10	—	—

### 4. 회계

공제회의 회계는 부금회계, 특별회계, 일반회계, 외부수탁회계 등 크게 4개 분야로 구분된다.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사업장에서 하루 일할 때 사업주가 납부하는 공제부금 5,000원 중 4,800원은 부금회계로서 근로자 봉인 퇴직공제금으로 전액 적립되어 관리·지급되고, 200원은 공제회의 기관운영비 등인 일반회계로 구분하여 적립·운영되고 있다.

특별회계는 2006년 1월 퇴직공제금 신고 납부방식의 변경(증지부착방식 → 전산신고방식)으로 인한 미회수공제증지 판매대금과 그 운영수익을 관리하기 위해 2014년 1월부터 부금회계에서 분리됐다. 외부수탁사업회계는 고용보험기금 지원을 받는 정부 위탁사업(훈련, 취업지원) 관리를 위해 별도로 구분하는 회계다.

#### 가. 부금회계

부금회계 수입은 750,062백만 원으로 예산대비 61,802백만 원 증가했고, 지출은 총 556,528백만 원인데, 퇴직공제금 535,759백만 원, 특별퇴직공제금 3,944백만 원, 대부금 16,825백만 원이었다.

수입 측면에서 공제부금은 예산대비 11,186백만 원 감소했는데, 이것은 공사 이행단계별로 관리를 강화하고 강제이행조치도 강화해 공제부금의 납부를 촉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경기 하강(착공지연 등)으로 인한 공사의 감소 그리고 그에 따른 공제부금 감소의 규모가 더 커졌음을 의미한다. 지출 측면에서는 퇴직공제금이 예산대비 111,703백만 원 증가했는데, 이것은 법정 고지와 고령자 및 사망자 유족에 대한 안내 등을 통해 퇴직공제금 청구를 적극적으로 안내한 결과였다.

〈표 4〉 2019년도 부금회계 수입 및 지출 현황

(단위 : 백만 원)

과목		예산액	결산액	증감액
수입	계	688,260	750,062	61,802
	공제부금	592,610	581,424	△11,186
	이자수입 등	95,650	168,638	72,988
지출	계	449,317	556,528	107,211
	퇴직공제금	424,056	535,759	111,703
	특별퇴직공제금	3,225	3,944	719
	대부금	22,034	16,825	△5,209
일반관리비		2	-	△2
지불준비금		238,943	193,534	△45,409

## 나. 특별회계

특별회계 수입은 이자수입 7,123백만 원으로 예산대비 1,609백만 원 증가했고, 지출은 퇴직공제금 739백만 원으로 예산대비 175백만 원 감소했다.

이자수입의 증가 요인은 국내외 증시 상승 등이었고, 지출감소 요인은 복지수첩의 반납 감소였다.

〈표 5〉 2019년도 특별회계 수입 및 지출 현황

(단위 : 백만 원)

과목		예산액	결산액	증감액
수입	계	5,514	7,123	1,609
	이자수입	5,514	7,123	1,609
지출	계	914	739	△175
	퇴직공제금	914	739	△175
지불준비금		4,600	6,384	1,784

## 다. 일반회계

일반회계 수입은 27,728백만 원으로 예산대비 3,520백만 원이 감소했고, 지출은 29,700백만 원으로 사업비 9,151백만 원, 인건비 12,852백만 원, 경상운영비 7,697백만 원이며, 예산대비 1,548백만 원 절감했다. 공사 이행단계별로 관리를 강화하고 강제이행조치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경기 하

강(착공지연 등)으로 인한 공사의 감소로 인해 부가금은 25백만 원 감소했고, 잡수입은 이자수입 감소 등으로 10백만 원 감소했다.

〈표 6〉 2019년도 일반회계 수입 및 지출 현황

(단위 : 백만 원)

과목		예산액	결산액	증감액
수입	계	31,248	27,728	△3,520
	부가금	27,127	27,102	△25
	잡수입	636	626	△10
	재산조성적립금	3,485	-	△3,485
지출	계	31,248	29,700	△1,548
	사업비 <sup>1)</sup>	9,782	9,151	△631
	인건비 <sup>2)</sup>	13,458	12,852	△606
	경상운영비	7,557	7,697	140
예비비		451	-	△451

주 : 1) 전자소송 도입, 우편물 통합발송 업무 효율화로 인한 예산절감 등

2) 정현원 차로 인한 예산절감 등

## 라. 외부수탁사업회계

외부수탁사업회계의 총수입은 고용보험기금 10,234백만 원으로 예산대비 43백만 원 증가(이자수입 증가 등으로 잡수입 증가)했고, 총지출은 9,591백만 원으로 예산대비 598백만 원 감소했다.

〈표 7〉 2019년도 외부수탁사업회계 수입 및 지출 현황

(단위 : 백만 원)

과목		예산액	결산액	증감액
수입	계	10,191	10,234	43
	훈련 위탁사업비	6,807	6,807	-
	잡수입	1	34	33
	취업 위탁사업비	3,382	3,382	-
지출		1	11	10
지출	계	10,189	9,591	△598
	훈련 위탁사업비	6,807	6,295	△512
	취업 위탁사업비	3,382	3,296	△86

## | 제2장 |

# 주요사업



공제회의 사업은 크게 공제부금 수납, 공제부금 운용, 퇴직공제금 지급, 고용·복지 서비스 등으로 구성된다. 공제부금 수납은 퇴직공제 가입 사업장으로부터 피공제자인 근로자의 근로일수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수납하는 과정이고, 공제부금 운용은 피공제자에게 지급할 퇴직공제금을 더 많이 그리고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적립된 공제부금을 불리고 관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축적된 부금을 활용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거나 고용·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각 피공제자별로 적립일수가 얼마나 되는지 관리해야 하고, 퇴직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실 확인을 거쳐야 한다. 한편, 고용·복지 서비스는 건설근로자의 숙련도를 높여주는 기능훈련사업, 무료로 구인자와 구직자를 매개하는 취업지원사업, 실생활에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복지사업 등으로 구분된다.

건설업을 퇴직 또는 사망하거나 만60세에 이른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건설근로자법 개정(19.11.26 공포)에 따라 2020년 5월 27일부터는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를 경우에도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대상이 확대된다. 1998년에 시행된 퇴직공제제도는 이동이 잦은 건설근로자의 고용특성을 반영한 최초의 건설근로자 맞춤형 복지제도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둘째, 고용지원사업은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기능훈련 실시와 직업 소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무료취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으로 구성된다. 재원은 정부위탁 사업을 통한 고용보험기금이다.

셋째, 고객복지사업이란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설일용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 사기 진작, 직업이미지 제고 등 건설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생활자금 대부, 단체보험가입, 종합건강검진 지원, 자녀장학금 지급,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결혼·출산지원금 지급, 가족 힐링캠프 운영, 건설기능인의 날 기념식 개최, 새벽인력시장 편의시설 설치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넷째, 자산운용사업은 퇴직공제금 지급, 복지증진 사업, 피공제자에 대한 자금의 대부 등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수납하여 적립된 공제부금을 효과적으로 증식시키는 사업이다.

<그림 2> 사업 개요



첫째, 퇴직공제사업이란 퇴직공제제도 운영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말한다. 퇴직공제제도에 가입된 건설사업주는 소속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근로자가 매월 근로한 일수만큼 근로내역 신고와 그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납부하고, 12개월(또는 252일) 이상 공제부금을 적립한 건설근로자는

2019년도

건설근로자 고용복지

사업연보



## PART 02

### 주요사업 현황

#### 제1부 퇴직공제사업

- | 제1장 | 사업 개요
- | 제2장 | 주요 추진 사업
- | 제3장 | 추진 현황

#### 제2부 고용지원사업

- | 제1장 | 기능향상훈련
- | 제2장 | 무료취업지원
- | 제3장 | 관련 사업

#### 제3부 고객복지사업

- | 제1장 | 사업 개요
- | 제2장 | 주요 추진 사업 및 추진 현황

#### 제4부 자산운용사업

- | 제1장 | 사업 개요
- | 제2장 | 주요 추진 사업
- | 제3장 | 추진 현황



## 제1부

# 퇴직공제사업

| 제1장 | 사업 개요

| 제2장 | 주요 추진 사업

| 제3장 | 추진 현황



## | 제1장 |

# 사업 개요

## 제1부 퇴직공제사업



퇴직공제사업은 건설사업장의 퇴직공제 가입 및 공제부금 납부와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 및 적립금액 등의 관리를 통해 퇴직공제금 및 대부금을 지급하는 공제회의 핵심 사업이다. 공제가입 사업장 및 피공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안정적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업의 목표다.

### 1. 가입 범위

퇴직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당연가입 대상 공사의 범위는 여러 차례의 법령 개정을 거쳐 확대되어 왔는데, 2019년 현재 공공공사는 3억 원 이상, 민간공사는 100억 원 이상이다.

〈표 8〉 퇴직공제의 당연가입 대상 건설공사 범위의 확대 추이

공사종류	1998.1.1	2001.9.1	2004.1.1	2008.1.1	2010.9.30
국가·지자체 발주공사	100억 원 이상	50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	5억 원 이상	3억 원 이상
정부출자·출연법인 발주공사	100억 원 이상	50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	5억 원 이상	3억 원 이상
민간투자사업 시행공사	-	-	10억 원 이상	5억 원 이상	3억 원 이상
공동주택공사, 주상복합공사, 오피스텔공사	500호 이상	500호 이상	300호 이상	200호 이상	200호 이상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	-	-	-	-	100억 원 이상

주 : 1) 근거 법령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임.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4조의2(2003.6.25)의 개정으로 2003. 7. 1 이후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적용대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등이 포함됨.

2) 공사예정금액은 ‘설계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의미하며,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도 포함한 금액을 말함. 공사예정금액 = 설계금액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금액(관급자설치 관급자재 금액은 제외)

퇴직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피공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다. 적용제외자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고용된 상용근로자, 1년 이상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등이다.

### 2. 퇴직공제 이행

퇴직공제 가입 대상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공사 시작일로부터 당연 가입되고, 실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을 공제회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퇴직공제가입 사업주는 익월 15일까지 당해 가입공사에서 매월 고용하고 있는 건설근로자의 적립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납부해야 한다.

공제부금은 발주자가 부담(물량명세서 및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반영하고 준공 시 정산)하는데, 소요비용은 ‘직접노무비×2.3%’(국토교통부장관 고시 제2019-86호, ’19.12.2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공제부금은 근로자 둘인 퇴직공제금과 공제회의 사업 및 운영비에 쓰이는 부가금으로 구성된다. 공제부금은 네 차례 인상되었는데, 퇴직공제금의 인상이 세 차례 그리고 부가금의 인상이 한 차례 있었다.

특히 2008년부터 10년째 동결됐던 퇴직공제금이 2017년 12월 22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4,0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되어 2018년 이후 신규 입찰공고 공사부터 적용되었다. 즉, 건설근로자 공제부금 일액이 기준 4,2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되었다.

공제부금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퇴직공제제도 출범 이후 2006년 말까지 2,100원이었고, 2007년부터 3,100원, 2008년부터 4,100원, 2012년 4월부터 2017년까지 4,200원, 2018년부터 5,000원이다.

### 3. 퇴직공제금 지급

퇴직공제금 지급 대상은 공제부금의 납부월수가 12개월 이상(252일)이고, 건설업에서 퇴직 또는 사망하거나 60세에 이를 건설근로자다.

퇴직공제금 지급액은 본인에게 적립된 퇴직공제금과 매월 복리로 적립된 이자(공제회가 매년도 2월 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을 받아 고시)의 합계액이다. 7년 이상 장기근속자에게는 특별퇴직공제금이 추가 지급되는데, 7년 이상 30만 원, 10년 이상 50만 원, 15년 이상 100만 원이다.

## | 제2장 |

# 주요 추진 사업

### 제1부 퇴직공제사업



2019년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퇴직공제사업의 주요 내용은 공제가입 사업장 관리 강화, 건설근로자 권리 보호 및 퇴직공제금 등 지급업무의 편의성 제고, 피공제자 정보 관리 및 공제부금 수납처리 강화 등이다.

## 1. 공제가입 사업장 관리 강화

### 가. 사용자 중심의 온라인 퇴직공제 업무시스템 구축·오픈

2019년에는 근로내역 신고를 비롯한 사업주 관련 업무를 웹(WEB) 기반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퇴직공제 EDI시스템」을 구축하고 오픈함으로써 건설사업주의 퇴직공제 업무 환경을 개선했다.

기존에 운영되던 사업주 EDI 및 내부업무 프로그램은 2000년에 개발된 것으로서, 시스템 노후화에 따른 호환성 및 관리기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건설사업주는 퇴직공제업무 처리를 위해 2개의 시스템(신고-EDI, 가입-온라인)을 병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업무편의성 및 효율성이 저하됐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공제회는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과 프로젝트팀 운영을 거쳐, '18.12월에 3개로 분산된 시스템을 1개의 웹방식으로 통합하는 신규시스템 개발용역에 착수했고, 10개월 후인 '19.10월에 「퇴직공제 EDI시스템」을 구축·오픈하였다.

신규 시스템에 의해 퇴직공제 가입부터 근로내역 신고 및 준공처리까지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원스톱 업무처리가 가능하게 되었고, 실시간 신고·납부내역 조회 및 알림서비스 제공 등 사용자의 편의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웹방식 전환을 통해 별도 프로그램의 설치 없이 인터넷 망에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접근성 및 시스템 간 연계 성도 강화됐다.

### 나. 중·소규모 사업장 관리 강화

증가하는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특별점검반을 신설했으며, 중소규모 사업장 담당자를 위한 퇴직공제제도 교육도 실시하였다.

첫째, 관리사업장의 수가 증가('18년 말 26,755개소 → '19년 말 30,600개소)함에 따라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커졌으며, 이에 따라 기존 매뉴얼의 관리방법 이외에 특별점검반을 설치·운영하였다. 현장점검 경력이 많은 전담자를 지정하여 중소규모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특별점검반을 운영했는데, 5개월(8월~12월) 간 92개소를 점검하여 414백만 원을 소급하여 신고하도록 했다.

둘째, 중소규모사업장 담당자를 대상으로 특화 교육을 확대 실시하였다. 시공능력평가 100위 이하 사업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에 총 63개사(70명)가 참석하였으며, 교육은 주로 실무(사례)위주로 진행되었다. 또한 교육 횟수도 증가(49회 → 62회)하였으며, 연간 교육일정을 사전에 공개하여 사업주가 원하는 일정에 참석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였다.

셋째, 공제부금 미납사업장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였다. 5~6월 2개월간 운영하였으며 해당기간 동안 총 796개소에서 2,541백만 원의 미납액을 해소하는 실적을 거두었다.

### 다. 퇴직공제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상생기반 확충

기존에 운영 중이던 지역별 유관기관 협의체의 구성원을 사업주, 근로자, 일반시민 등으로까지 확대하고, 회의방식 또한 필요할 때 수시로 개최하던 방법 대신 지사별로 실정에 맞추어 연간계획을 수립한 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였다.

첫째,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퇴직공제제도에 대한 홍보를 확대·강화했다. 유관기관과 홍보물을 교차비치하고 기관별 합동홍보를 실시하여 건설근로자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했다.

둘째, 자자체와 연계해 채용박람회에 합동으로 참여하거나 일자리확대 협약 등을 맺어 건설근로자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계 고용서비스를 활성화했다.

셋째, 사랑의 집 고쳐주기, 지역병원과의 의료지원 협약, 콘서트 개최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역연계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했다.

### 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확대 및 법제화 대비 관리체계 구축

2019년에는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 확대, 민간·공공 시스템과 연계,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제도개선,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 개선에 주력했다.

첫째, 정부 및 자자체 등 주요 발주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어 전자카드제 확대를 추진해, 서울시·경기도·부산시·대전시·조달청 등이 발주한 50억 원 이상 공사와 국토부 및 산하기관이 발주한 100억 원

이상 현장에 전자카드제를 의무적용토록 했다. 그 결과, '15년 시범사업을 통해 6개소로 시작한 전자 카드 적용 현장이 '19년에는 230개소로 확대되어, 전자카드제 활용이 활성화됐고 적용사업장 관리 체계도 강화됐다.

**<표 9> 전자카드제 적용사업장 현황**

구분	적용현장	적용확대 추진 현황
'15년	6개소	▶전자인력관리 시범사업 도입방안 시달 ▶서울특별시 시범사업장 선정 및 MOU 체결
'16년	36개소	▶제2단계 시범사업 착수
'17년	36개소	▶전자카드 시범사업 성과평가
'18년	74개소	▶전자카드제 도입을 위한 MOU 체결(국토교통부, 부산광역시)
'19년	230개소	▶전자카드제 도입을 위한 MOU 체결 (경기도, 대전광역시, 서울시 강동구, 조달청, 한국철도공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11.26)

사업장 방문교육과 홍보물 배포 등 전자카드 사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 전체 전자인력관리 연인원 중 전자카드 태그 연인원 비중이 작년대비 13.6%p 증가한 68.6%를 차지했다.

**<표 10> 전자인력관리 현황**

(19.12.31 기준, 단위 : 명)

구분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연인원		
	계	전자카드	지문
전체	3,001,954 (100.0%)	1,884,436 (62.8%)	1,117,518 (37.2%)
'19년	1,435,022 (100.0%)	983,897 (68.6%)	451,125 (31.4%)
'18년	649,644 (100.0%)	357,019 (55.0%)	292,625 (45.0%)
'17년 이전	917,288 (100.0%)	543,520 (59.3%)	373,768 (40.7%)

또한, 전자카드 및 전용 통장(건설근로자 전용 급여통장(KEB하나은행)) 발급 매수(좌수)는 전자 카드 109,193매와 통장 105,879좌이며, 건설근로자 전용 급여통장(건설愛통장)의 1인당 평균 계좌잔고는 326천원으로 '15년 9월의 39천원 대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전자카드의 용도가 건설근로자의 출력확인기능 뿐 아니라 금융활동 측면에서도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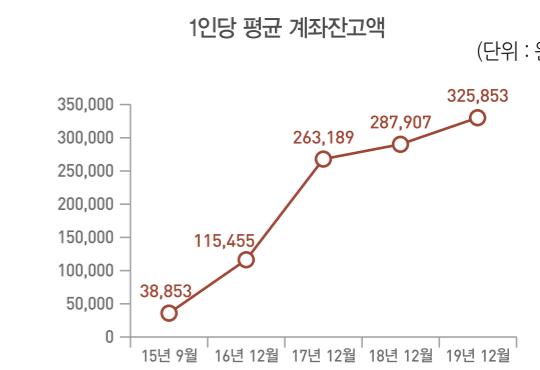
**<표 11> 전자카드 발급 및 계좌 현황**

(19.12.31 기준)

구분	건설愛카드 (매수)	건설愛통장		
		발급좌수	계좌잔액	1인당 계좌잔액
KEB하나은행	109,193	105,879	34,501백만원	326천원

구분	통장 발급매수	1인 평균 계좌잔고(원)	1인당 평균 계좌잔고액	
			(단위 : 원)	
'15년 09월	1,081	38,853	38,853	38,853
'16년 12월	12,085	115,455	115,455	115,455
'17년 12월	42,954	263,189	263,189	263,189
'18년 12월	75,177	287,907	287,907	287,907
'19년 12월	105,879	325,853	325,853	325,853



둘째, 전자카드 시스템의 활용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시스템과 연계되도록 추진했다. 공공발주기관인 조달청,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경기도, 인천국제공사 그리고 민간기관인 GS건설 등과 정보를 연계함으로써 시스템의 확장성과 사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특히,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와 연계를 통해 전자카드 근로내역을 바탕으로 근로자 임금대장을 생성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 적정임금제와 임금 직접지급제의 기반을 마련했다.

**<표 12> 2019년도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시스템 연계현황**

관리 기관	연계 시스템(연계내용)	기대효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현장정보, 근로내역 등)	▶근로자 임금대장 자동생성 및 적정임금 지급 기반 마련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소방안전지도 (현장정보, 근로내역 등)	▶위급사항 발생 시, 사업장 정보 연계를 통한 정확한 구조작업 수행
경기도 인천국제공항공사	건설사업관리시스템 (현장정보, 근로내역 등)	▶발주처의 현장 근로자 관리 효율화 제고
GS건설	건설사업관리시스템 (근로자 전자카드 태그 정보)	▶전자카드 현장정보 및 출역정보 연계를 통한 사업주 편의성 제고

셋째, 다양한 측면의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였다. 현장출장, 제도설명회, 발주처 합동교육 및 유관기관 간담회 등 의사소통 통로를 확대하였고, 이를 통해 단말기, 시스템, 카드발급, 제도운영 등 각 항목별 개선요구를 수렴해 전자카드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단말기의 경우 복수 사업자를 확보하여 단독 사업자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였고, 분리발주 공사에는 단말기 공유기능을 배포하여 공사 관리의 효율을 향상시켰다. 또한, 전자카드 발급 후 다음날 정보가 반영되어 발급 당일에는 현장 출입이 불가능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연계함으로써 발급 즉시 현장 출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밖에도 카메라 모듈이 부착된 단말기가 출시될 예정이므로, 향후 전자카드 부정사용이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먼저 시스템 기능개선 사항을 배포하였고, 보안서버 구축을 통해 근로자의 카드정보 및 근로내역 등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였다. 또한, 외부기관 연계를 위해 공통 API<sup>1)</sup>를 구축하였고, 이를 통해 추후 타 기관과의 정보연계 시 시스템 안정성 및 보안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2. 피공제자 권리 보호 및 지급업무의 편의성 제고

### 가. 퇴직공제금 찾아주기 대상 확대를 통한 수급권 보호 강화

2019년도에는 고령자, 산업재해 사망자 유족 및 중증장애 건설근로자 이외에 최근 2년간 근로내역 신고가 없는 건설근로자와 외국인 건설근로자에게도 퇴직공제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함으로써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수급권을 보호하고자 노력하였다.

첫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주민등록주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최근 2년간 근로내역 신고가 없는 건설근로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퇴직공제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하여 퇴직공제금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였다.

둘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업무협의를 통해 민원실에 안내문을 비치하고 본부 내 각종 매체를 활용해 퇴직공제제도에 대해 홍보하였다.

셋째, 앱방지통장에 대한 홍보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수급권 포기를 예방하였다. 각종 고지 시 앱방지통장 발급가능기관을 안내하거나, 공제회 및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앱방지통장 개설 및 이용을 안내했다. 이로 인해 2019년 앱방지통장 개설 건수는 전년대비 51% 증가한 9,379건으로 늘었다.

### 나. 고객 만족형 업무 개선

퇴직공제금, 대부, 복지서비스 등의 신청과 경력증명서 발급을 원스톱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시스템과 경력증명서 발급정보 연계방식을 개선하여 민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했다.

첫째, 건설근로자가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를 통해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12개에서 15개로 확대했고, 모바일 웹을 통해 청구할 수 있는 사유도 14개로 확대했다. 이로 인해 퇴직공제금 온라인 신청은 전년대비 79% 상승하였다.

둘째,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발급정보에 대한 연계방식을 개편하였다.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전용선으로 연계하는 방식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활용하는 연계방식으로 개편함으로써 안정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신청사유를 추가하여 민원업무의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 3. 피공제자 정보관리 및 공제부금 수납처리 강화

피공제자 자신의 개인정보를 확인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여 피공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홍보하였다.

첫째,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에 개인정보 수정 기능을 추가하였다. 그에 따라 피공제자는 언제든지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에 접속하여 자신의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다. 2019년에 건설근로자 125,265명이 개인정보를 변경하였다.

둘째, 사업주가 연 1회 피공제자의 정보를 확인하여 근로내역을 신고하도록 하였다.

1)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는 응용 프로그램이 운영체제나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과 같은 시스템 프로그램과 통신할 때 사용되는 언어나 메시지 형식을 말한다.

## | 제3장 |

### 추진 현황

#### 제1부 퇴직공제사업



#### 1. 퇴직공제 가입 현황

2019년도 말 기준으로 신규 가입한 공사는 30,597개소로 전년대비 14.5%(3,869개소) 증가하였으며, 공사금액과 공제부금 반영액 역시 19.8%(294,263억 원), 11.7%(805억 원) 증가하였다.

신규 가입공사의 증가는 건설공사 발주정보 파악 시스템의 운영(국가조달정보 G2B, 건설산업정보 KISCON, 고용보험 정보 등), 미가입 공사에 대한 직권성립 조치, 퇴직공제 통합시스템의 구축 등을 통해 가입 누락을 방지하는 등 가입대상공사 관리 강화에 힘쓴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전체 신규가입공사 대비 원가미반영공사의 비율은 전년대비 1.6%p(712개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 공제부금 납부 및 적립일수

2019년 공제부금 납부액은 6,096억 원으로서, 전년대비 146억 원(2.5%) 증가했다. 적립일수는 총 132,263천일로 전년대비 5,710천일(4.1%) 감소했다. 수납액은 증가했으나 근로일수는 감소하는 상반된 방향의 변화가 나타난 이유는 건설투자의 감소로 인해 전체 적립일수는 감소했지만 공제부금일액 인상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 전체 수납액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018년에 비해 민간공사의 실적은 약간 늘고, 공공공사의 실적은 소폭 감소했다. 임의가입의 경우 전년 대비 수납액은 38.0%, 근로일수는 20.2% 증가했다.

〈표 14〉 공제부금 납부 및 적립일수 현황

(‘19.12.31 기준, 단위 : 천일, 억 원, %)

구분	2018	2019	증감	증감률
공제부금 납부	계	5,950	6,096	146
	공공	3,873	3,796	△77
	민간	1,985	2,173	188
적립일수	임의	92	127	35
	계	137,973	132,263	△5,710
	공공	89,089	82,436	△6,653
	민간	46,635	47,125	490
	임의	2,249	2,702	453
				20.2

주 : 상기 적립일수는 산감신고 등을 반영한 수치로 Part 3 퇴직공제 통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표 13〉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현황

(‘19.12.31 기준, 단위 : 개소, 억 원, %)

구분	2018	2019	증감	증감률
신규 가입	계(A)	26,728	30,597	3,869
	공공공사	24,154	27,882	3,728
	민간공사	1,519	1,564	45
	임의	1,055	1,151	96
	공사금액	1,487,753	1,782,016	294,263
원가 미반영공사(B) (미반영률)(B/A)	공제부금 반영액	6,894	7,699	805
		1,382	2,094	712
		5.2	6.8	1.6
				30.8

#### 3. 퇴직공제 가입 근로자 현황

2019년 말 현재 퇴직공제 가입 피공제자인 건설근로자는 5,536천명으로서, 전년 대비 172천 명이 늘어 3.2% 증가하였다. 신규가입 근로자는 375천 명으로 전년 대비 2.3%(9천 명) 감소했고, 퇴직 근로자는 204천 명으로 전년 대비 63.2%(79천 명) 증가했다.

〈표 15〉 퇴직공제 가입 근로자 현황

(‘19.12.31 기준, 단위 : 천 명, %)

구분	2018	2019	증감	증감률
피공제자수 누계	5,364	5,536	172	3.2
신규 피공제자수	384	375	△9	△2.3
퇴직 피공제자수	125	204	79	63.2

## 4. 퇴직공제금 지급 현황

2019년도의 퇴직공제금 지급건수는 205,448건이고, 지급액은 5,398억 원이었다. 전년 대비 지급건 수는 64.7% 증가했고, 지급액은 53.8% 늘었다.

한편, 특별퇴직공제금은 10,311건에 대해 39억 원을 지급하였다. 전년 대비 지급건수가 46.1% 늘었 고, 지급액은 51.6% 증가했다. 특별퇴직공제금은 장기적립자를 우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서,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48개월 이상인 피공제자를 대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 되, 7년 이상자에게는 30만 원, 10년 이상자에게는 50만 원, 15년 이상자에게는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표 16> 퇴직공제금 지급 현황

('19.12.31 기준, 단위 : 건, 억 원, %)

구분		2018	2019	증감	증감률
퇴직공제금	지급건수	124,773	205,448	80,675	64.7
	지 급 액	3,509	5,398	1,889	53.8
특별퇴직공제금	지급건수	7,056	10,311	3,255	46.1
	지 급 액	26	39	13	51.6

주 : 특별퇴직공제금 지급건수 및 지급액 수치는 퇴직공제금 지급건수 및 지급액에 기 포함됨

## 제2부

# 고용지원사업

| 제1장 | 기능향상훈련

| 제2장 | 무료취업지원

| 제3장 | 관련 사업



## | 제1장 |

# 기능향상훈련

## 제2부 고용지원사업



### 1. 사업 개요

고용지원사업 중 기능향상훈련이란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향상시켜 취업능력을 배양하는 사업이다. 일과 실업이 반복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특수성을 고려하여 일과 훈련을 병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자 했다. 현장에서 공급이 부족한 건축시공 직종을 훈련직종으로 선정했고, 훈련 과정은 주간과정과 야간과정으로 나누어 개설했으며, 훈련비와 훈련수당을 지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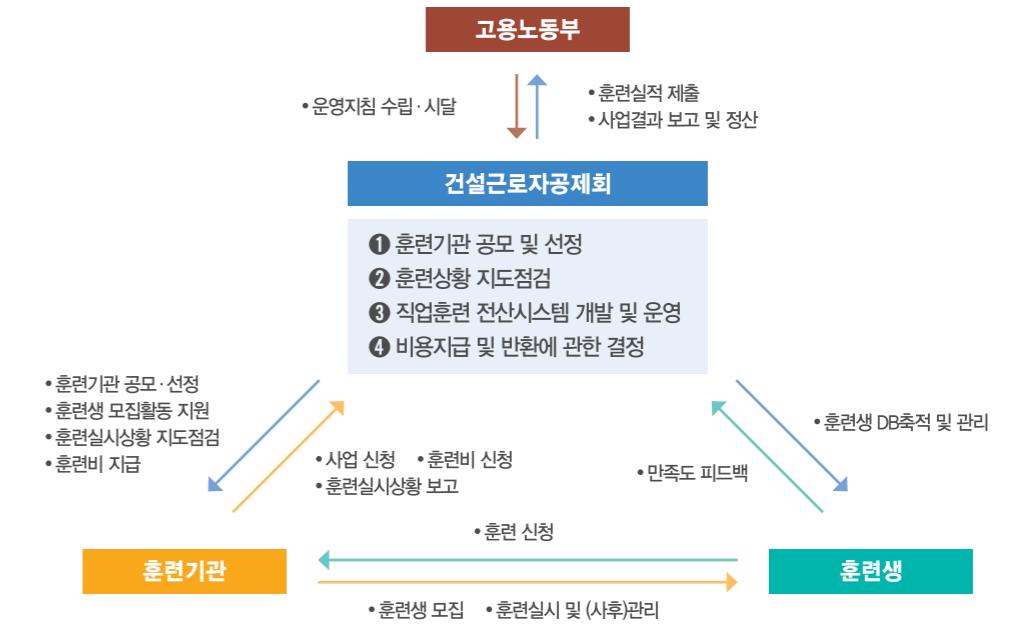
참여대상은 만 15세 이상인 자로서, 고용보험에 건설현장 근로내역이 있는 자, 퇴직공제 근로내역이 있는 자, 건설공사현장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자, 건설업 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직업안정기관에 건설직종으로 구직 신청한 자 등이다.

사업 예산은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하는데, 고용노동부가 공제회에 위탁하면 공제회가 민간 훈련기관을 공모하여 선정하고 재 위탁하는 방식의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시행지침을 수립·시달하고, 위탁계약 체결 및 선정된 훈련기관의 재위탁 승인, 분기별 예산 배정, 매월 추진실적 관리 등을 담당한다. 공제회는 약정 체결, 훈련 목표인원의 달성을 유도, 훈련기관 공모·선정, 훈련생 모집활동 지원, 훈련생 출결관리 등 전산시스템 운영, 훈련 실시상황 지도점검, 훈련비 등 지급 및 반환에 관한 결정, 체계적인 홍보 활동 등을 담당한다.

훈련기관은 공제회와의 훈련약정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생 안전교육 및 철저한 과정관리 등을 통해 훈련의 내실화를 추구하며, 무료취업지원센터와 협업 등을 통해 훈련수료자 취업서비스 제공 등을 담당한다.

<그림 3>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사업 추진 체계



### 2. 주요 추진 사업

2019년에는 기능향상 훈련과정 다양화 및 훈련생 지원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첫째, 숙련인력 및 다기능공 양성을 위해 기본과정을 단일직종 및 혼합직종으로 구분해 운영하였고, 별도의 심화과정 운영을 통해 수준별로 맞춤훈련을 실시했다. 기본과정(단일 및 혼합)은 공급부족 규모가 큰 12개 직종으로 공모하여, 직무연관성이 크고 현장수요가 많은 직종을 대상으로 하나의 과정에서 두 가지 직종의 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방수+타일’, ‘미장+조적’ 등의 혼합과정을 운영했다. 공급이 부족한 건축(일반)목공과 타일 2개 직종에 대해서는 심화과정을 운영했다.

둘째, 연간 공백 없이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훈련 적기인 동절기에 훈련을 개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훈련과정 공모를 2018년 12월에 실시하고 2019년 1월까지 훈련기관과 과정을 선정함으로써, 1월부터 공백 없는 안정적인 훈련공급체계를 마련하였다.

셋째, 숙련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건설일용근로자의 수준별 훈련을 강화하였고 해당 직종의 자격증 소지자를 심화훈련 참여대상으로 추가하여 심화과정의 운영을 활성화 하였다.

넷째, 취업률 향상을 위해 훈련생에 대한 취업지원을 활성화하였다. 훈련생을 대상으로 훈련상담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구직등록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실시하였다.

### 3. 추진 현황

#### 가. 고용노동부 위탁 훈련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실시한 고용노동부 위탁훈련에는 총 66,543명이 참여하고 54,635명이 수료해, 조기취업자 제외하면, 86.0%의 평균 수료율을 기록했다. 참여한 훈련인원과 수료인원은 2009년에 11,297명과 8,894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료율과 취업률은 2018년에 각각 95.4%와 72.1%로 가장 높았다. 2019년의 훈련인원과 수료인원은 각각 7,338명, 수료인원 6,641명으로, 취업률은 71.4%를 기록하였다.

<표 17> 고용노동부 위탁 훈련사업 추진 실적

구분	훈련기간	훈련인원	수료자	수료율	취업자	취업률	(19.12.31 기준, 단위 : 명, %)						
							(19.12.31 기준, 단위 : 명, %)						
2009	'09.07~'09.12	11,297	8,894	78.7	2,100	38.4							
2010	'10.02~'10.12	6,041	3,815	63.2	2,538	50.8							
2013	'13.05~'14.01	4,670	3,608	82.2	1,593	41.1							
2014	'14.03~'15.01	4,703	3,670	86.3	2,312	56.1							
2015	'15.03~'15.12	7,792	6,478	89.7	3,453	49.0							
2016	'16.03~'17.01	8,444	7,184	90.9	4,289	55.5							
2017	'17.01~'17.12	8,406	7,317	93.5	5,645	71.5							
2018	'18.01~'18.12	7,852	7,028	95.4	5,416	72.1							
2019	'19.01~'19.12	7,338	6,641	94.8	4,981	71.4							

주 : '11년, '12년은 위탁훈련 미실시(고용노동부 사업예산 미편성), 조기취업자수는 생략

수료율(%) = 수료자/(훈련인원-조기취업자), 취업률(%) = (취업자+조기취업자)/(훈련인원+조기취업자)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주요 특성별 훈련 인원 분포의 변화 중 직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매년 타일과 건축목공이 각각 1위와 2위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2016년부터 운영된 혼합과정은 2018년에 7개 직종으로 확대되었으나, 2019년에는 8개 직종이 개설되었다.

<표 18>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사업 추진 실적: 직종별

(19.12.31 기준, 단위 : 명, %)

구분	계	건축 목공	도장	미장	방수	배관	용접	조직	철근	타일
2013	4,670 (100.0)	1,229 (26.3)	139 (3.0)	404 (8.7)	76 (1.6)	126 (2.7)	301 (6.4)	151 (3.2)	154 (3.3)	2,090 (44.8)
2014	4,703 (100.0)	1,180 (25.1)	395 (8.4)	215 (4.6)	88 (1.9)	422 (9.0)	640 (13.6)	248 (5.3)	162 (3.4)	1,353 (28.8)
2015	7,792 (100.0)	2,145 (27.6)	539 (6.9)	669 (8.6)	—	425 (5.5)	719 (9.3)	870 (11.2)	103 (1.3)	2,322 (29.8)
2016	8,444 (100.0)	2,240 (26.5)	486 (5.8)	664 (7.9)	174 (2.1)	527 (6.2)	397 (4.7)	439 (5.2)	—	2,277 (27.0)
2017	8,406 (100.0)	1,925 (22.9)	579 (6.9)	383 (4.6)	269 (3.2)	492 (5.9)	703 (8.4)	213 (2.5)	165 (2.0)	2,801 (33.3)
2018	7,852 (100.0)	1,927 (24.5)	560 (7.1)	126 (1.6)	311 (4.0)	388 (4.9)	347 (4.4)	140 (1.8)	127 (1.6)	1,951 (24.8)
2019	7,338 (100.0)	1,671 (22.8)	588 (8.0)	300 (4.1)	332 (4.5)	406 (5.5)	356 (4.9)	208 (2.8)	122 (1.7)	1,652 (22.5)

구분	조직 +타일	형틀 +철근	배관 +방수	배관 +용접	타일 +미장	타일 +조직	타일 +방수	미장 +조직
2016	1,033 (12.2)	147 (1.7)	—	60 (0.7)	—	—	—	—
2017	823 (9.8)	—	—	53 (0.6)	—	—	—	—
2018	384 (4.9)	—	203 (2.6)	114 (1.5)	238 (3.0)	475 (6.0)	274 (3.5)	287 (3.7)
2019	371 (5.1)	—	—	—	201 (2.7)	705 (9.6)	320 (4.4)	106 (1.4)

과정별 분포의 경우 대체로 주간 과정이 약 87% 정도를 차지하는데 주간 과정의 비중이 2018년에는 91.3%이던 것이 2019년에는 90.5%로 증가세를 멈췄다.

<표 19>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사업 추진 실적: 과정별

(19.12.31 기준, 단위 : 명, %)

구분	계	주간	야간
2013	4,670 (100.0)	3,876 (83.0)	794 (17.0)
2014	4,703 (100.0)	3,570 (75.9)	1,133 (24.1)
2015	7,792 (100.0)	6,565 (84.3)	1,227 (15.7)

구분	계	주간	야간
2016	8,444 (100.0)	7,532 (89.2)	912 (10.8)
2017	8,406 (100.0)	7,591 (90.3)	815 (9.7)
2018	7,852 (100.0)	7,166 (91.3)	686 (8.7)
2019	7,338 (100.0)	6,642 (90.5)	696 (9.5)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대체로 50대와 40대가 각각 1위와 2위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2019년에는 60대가 2위를 차지하면서 많이 늘었다. 주목할 것은 20대의 참여가 점차 늘고 있다는 점으로서 2013년에 3.5%에서 2019년에는 10.0%로 증가했다.

〈표 20〉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사업 추진 실적: 연령별

(19.12.31 기준, 단위 : 명, %)

구분	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2013	4,670 (100.0)	28 (0.6)	162 (3.5)	547 (11.7)	1,234 (26.4)	1,915 (41.0)	784 (16.8)
2014	4,703 (100.0)	14 (0.3)	193 (4.1)	529 (11.2)	1,229 (26.1)	1,735 (36.9)	1,003 (21.3)
2015	7,792 (100.0)	45 (0.6)	404 (5.2)	823 (10.6)	1,784 (22.9)	2,907 (37.3)	1,829 (23.5)
2016	8,444 (100.0)	80 (1.0)	656 (7.8)	1,032 (12.2)	1,826 (21.6)	3,322 (39.3)	1,528 (18.1)
2017	8,406 (100.0)	172 (2.0)	889 (10.6)	1,041 (12.4)	1,812 (21.6)	3,139 (37.3)	1,353 (16.1)
2018	7,852 (100.0)	69 (0.9)	773 (9.8)	966 (12.3)	1,687 (21.5)	2,756 (35.1)	1,601 (20.4)
2019	7,338 (100.0)	79 (1.1)	734 (10.0)	773 (10.5)	1,323 (18.0)	2,385 (32.5)	2,044 (27.9)

성별 분포의 경우 해가 거듭되면서 남성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2013년에는 79.8%였던 것이 2018년에는 91.2%까지 높아졌으나, 2019년에는 90.8%로 증가세를 멈췄다.

〈표 21〉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사업 추진 실적: 성별

(19.12.31 기준, 단위 : 명, %)

구분	계	남성	여성
2013	4,670 (100.0)	3,725 (79.8)	945 (20.2)
2014	4,703 (100.0)	4,026 (85.6)	677 (14.4)
2015	7,792 (100.0)	6,699 (86.0)	1,093 (14.0)
2016	8,444 (100.0)	7,358 (87.1)	1,086 (12.9)
2017	8,406 (100.0)	7,401 (88.0)	1,005 (12.0)
2018	7,852 (100.0)	7,163 (91.2)	689 (8.8)
2019	7,338 (100.0)	6,663 (90.8)	675 (9.2)

참여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해가 거듭되면서 경력자의 비중이 크게 높아졌는데, 2013년에는 59.9%이던 것이 2018년에는 90.4%까지 이른 후 2019년에는 85.0%로 낮아졌다.

〈표 22〉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사업 추진 실적: 참여유형별

(19.12.31 기준, 단위 : 명, %)

구분	계	경력자	구직자
2013	4,670 (100.0)	2,799 (59.9)	1,871 (40.1)
2014	4,703 (100.0)	2,951 (62.7)	1,752 (37.3)
2015	7,792 (100.0)	5,619 (72.1)	2,173 (27.9)
2016	8,444 (100.0)	7,071 (83.7)	1,373 (16.3)
2017	8,406 (100.0)	7,322 (87.1)	1,084 (12.9)
2018	7,852 (100.0)	7,099 (90.4)	753 (9.6)
2019	7,338 (100.0)	6,236 (85.0)	1,102 (15.0)

## | 제2장 |

# 무료취업지원

## 제2부 고용지원사업



### 1. 사업 개요

무료취업지원사업이란 건설현장 일자리가 필요한 근로자(구직자)와 건설근로자가 필요한 사업주(구인자)에게 무료로 취업알선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전국에 취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취업지원서비스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2016년 8월에는 건설근로자 취업지원 전산망인 ‘건설일드림넷’을 구축하고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것의 특징은 다른 취업정보 관련 사이트와 달리 건설일용근로자 중심의 건설현장 관련 일자리 정보만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2017년 2월에는 건설일드림넷의 ‘모바일 앱’을 오픈하였고, 2018년 5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건설일드림넷 기능 고도화를 진행하여 이용자 편의성 및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였다. 이 밖에도, 양질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취업지원 전담직원 역량 강화, 유관기관 협업, 무료노무상담 제공 등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 2. 주요 추진 사업

2019년도에는 건설일드림넷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취업지원 전산망 및 모바일 앱 기능 고도화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취업지원센터 전담직원에 대한 교육과 워크숍 등을 통해 직원의 역량을 향상시켰다. 또한, 유관기관(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훈련기관 등)과의 협업으로 구인·구직 개척을 강화하고,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협업하여 무료 노무상담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였으며 대중교통·라디오·SNS 등 홍보 방법의 다각화를 통해 취업지원사업의 내실을 다졌다.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강화 노력

#### 1) 건설일드림넷(홈페이지·모바일앱) 활성화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에게 특화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설일드림넷’ 홈페이지(‘16.8월)와 모바일앱(‘17.2월)을 운영하고 있다. 건설일드림넷은 언제 어디서나 건설현장 일자리 및 인재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구인·구직 정보와 취업알선 기능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2019년도에는 사용자의 이용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건설일드림넷 기능고도화 사업을 완료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회원가입 간소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오프라인에서 구직신청서를 작성할 경우 건설일드림넷 회원가입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퇴직공제 EDI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 개인별 경력확인을 통한 맞춤형 취업알선이 가능해졌다.

또한, 방송매체·동영상·인쇄물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와 온라인 이벤트 등을 실시함으로써 건설일드림넷 이용을 활성화하였다. 그 결과 신규 회원가입자 및 모바일앱 이용자가 대폭 증가하는 한편 건설일드림넷 이용자의 고객만족도도 제고되어 양적·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

#### 2) 취업지원센터 역량 강화

보다 나은 양질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직무역량교육과 직업상담 전문교육 등을 통해 취업지원센터 전담직원의 업무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였다. 첫째, 맞춤형 교육과정을 마련해 취업지원센터의 통일성 있는 업무처리를 도모하였다. 둘째, 공제회 지사·훈련기관·취업지원센터의 직원을 대상으로 고용서비스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각 기관 간 원활한 취업지원 업무협조 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셋째, 취업지원센터 직원 워크숍, 센터장 간담회 등을 개최해 취업지원사업 성공·실패 사례, 직업상담 기법, 취업알선 노하우 등을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직무능력향상 기회를 제공하였다.

#### 3)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취업지원 강화

건설근로자에 대한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했다.

첫째,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력 체계를 마련·강화해 취업지원사업을 활성화하고, 유관기관 간 지역별 네트워크를 통해 맞춤형 취업알선과 양질의 일자리 지원 등 공공 취업지원서비스를 활성화하였다.

둘째, 한국공인노무사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건설근로자 대상 무료 노무상담서비스를 시행(‘19년 취업지원센터 16개소)하여 취업지원센터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만족도를 높였다.

셋째, ‘기능향상지원사업’ 운영기관과 연계하여 미숙련 근로자에게 기능향상 기회를 제공하고, 훈련수료생에 대한 구직등록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병행함으로써 훈련·취업 연계서비스를 실시하였다.

#### 4) 취업지원사업 홍보 다양화 추진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합동 홍보와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등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취업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였다.

첫째, 공제회 종합지원이동반과 동반출장을 나가거나 취업지원센터가 따로 현장을 방문하여 취업지원사업을 홍보(홍보 영상 상영, 홍보물 배포 등)하고, 건설일드림넷과 모바일앱 이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둘째, 인터넷·공중파 라디오·언론 광고·인터넷 배너 광고 등을 통한 일반적인 대국민 홍보와 건설현장·훈련기관·고용센터 등의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타겟 홍보와 같은 다양한 방식을 병행 실시하였다.

### 3. 추진 현황

취업지원 전산망 홈페이지 및 모바일 기능 고도화, 유관기관(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 훈련기관, 공인노무사회 등)과의 협업, 취업지원센터 역량 강화, 홍보 다각화 추진 등을 통해 취업지원사업 인프라를 확충한 결과, 취업알선 실적이 2018년도의 약 31만일에서 2019년도에는 약 38만일로 22.9% 증가하였다.

**<표 23>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사업 추진 실적**

(19.12.31 기준, 단위 : 일, %)

구분	목표 근로일수(A)	추진실적(B)	달성을(B/A)
2015	16,980	39,464	232.4
2016	82,954	164,970	198.9
2017	154,700	268,767	173.7
2018	223,560	313,152	140.1
2019	303,280	385,013	126.9

## 제2부 고용지원사업



### | 제3장 |

## 관련 사업

### 1. 건설기능인등급제 도입 추진

정부는 건설기능인력의 직업전망 제시를 통해 신규인력의 진입을 촉진하고, 기능수준에 따른 처우개선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기능인등급제의 도입을 추진하였다. 건설기능인등급제의 핵심은 산업차원에서 건설기능인별 현장 근로경력, 교육·훈련 이수, 자격증 취득 및 포상 수상 이력 등을 종합 관리하고, 이를 기초로 기능수준에 따른 기능등급을 설정하여, 그에 상응하도록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다.

2017년도 11월에 정부는 건설기능인등급제의 시행근거가 담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하였고, 12월에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발표를 통해 제도 도입방안 및 제도시행 시 인센티브 방안 등을 담아 적극적인 추진의사를 밝혔다. 약 2년 후 「건설근로자법」개정(안)은 2019년도 10월 31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11월 26일에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건설기능인등급제」는 18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5월 27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제도 도입 및 추진을 위하여 국토부의 주관 하에 고용부, 건설 노·사 단체, 관련 유관기관 등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건설기능인등급제」추진 TF를 구성·운영하였다. 2018년 2월 Kick-Off 회의를 시작으로 2019년도 말 현재까지 총 11차례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제도에 적용할 60개 직종(안), 현장경력 인정(안) 및 기능수준 평가 도입(안) 등을 도출하였다. 또한 국토부의 「건설기능인등급제」추진 로드맵을 중심으로 마련한 직종별 등급기준 등에 대한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분과별 자문위원회 운영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특히 「건설기능인등급제」추진 TF에서 제도 도입 사전 업무 위탁기관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를 지정하는 것에 대해 합의하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공공기관인 공제회가 중립적인 위치에서 제도 도입을 준비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였다.

기능인등급제의 출발점은 근로경력, 교육·훈련 이수, 자격증 취득 및 포상 수상 이력 등을 종합해 기능인에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등급을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능등급을 자동으로 산정해 내는

‘건설기능인등급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제도 운영의 핵심 인프라이므로, 각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건설기능인 정보보유 DB를 통합하기 위한 관리기준을 일원화하고자 2019년도까지 총 7차례에 걸쳐 관계기관과 사전 분석 실무협의를 진행하였다.

한편 2019년도에 총 7차례 자체 내부 TF를 운영해 제도 도입 취지에 맞춰 퇴직공제DB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퇴직공제 근로내역 신고직종을 개편하였다. 또한 2019년도 7월에는 기능등급 산정을 위한 관리기준 일원화 작업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건설근로자 경력산정 관련 「통합 DB 모델 구축」 연구를 의뢰하여 약 5개월 간의 작업을 통해 향후 시스템 구축의 설계서 역할을 하게 될 건설기능인 정보보유 기관별 DB 연계방안(안)을 마련하였다.

## 2. 건설인력 고용지수 산정

공제회는 매년 종합심사낙찰제의 평가요소 중 하나인 건설인력 고용지수(이하 건설고용지수)를 산정·발표한다. 2019년에는 종합건설업체 8,648개사에 대해 ‘2019년도 건설인력 고용지수’를 산정 발표했다.

종합심사낙찰제란 건설공사 입찰 시 가격과 함께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로서, 최저가낙찰제 하에서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발생하는 저임금, 산재, 공정거래 저해 등의 폐해를 개선하고자 2016년도에 도입됐다.

건설고용지수는 고용탄력성 점수에서 근로기준법 준수(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횟수 기준)점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고용창출을 많이 하고 임금체불 횟수가 적거나 없는 기업일수록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공제회는 매년 말까지 종합건설업체의 기성실적 및 고용보험 신고 피보험자수, 임금체불 횟수 등 지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기관으로부터 수집하고, 취합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업체별 점수를 산정하고 있다. 우선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별 ‘고용탄력성’(=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기성총액 증감률)을 구한 다음 6등급으로 나누고, 최근 3년간의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명단공개 횟수’에 따라 감점하여 최종 지수를 산정하게 된다. 지수의 등급이 높을수록 고용이 많이 증가하고 임금체불이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지수의 등급이 낮을수록 고용은 감소하고 임금체불은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9년도 건설고용지수 산정결과, 8,648개사 중 상위 856개사(9.9%)는 1등급을 받은 반면, 하위 877개사(10.1%)는 6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 최근 3개년 건설고용지수 점수별 업체분포 현황

(단위 : 개사)

구분	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2019년도	8,648	856	1,291	2,156	2,162	1,306	877
2018년도	8,347	825	1,257	2,073	2,083	1,256	853
2017년도	8,297	824	1,238	2,062	2,077	1,243	853

2019년도 건설고용지수 산정대상 업체 수는 2018년도의 8,347개사에서 8,648개사로 301개사가 증가했다. ’19.3월부터는 300억 이상 공사(일반공사)의 경우 건설고용지수가 기존의 가점항목이 아닌 기본 배점 항목으로 조정되었으며, ’19.12월부터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공사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건설고용지수 적용 범위도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의 공공공사(간이형 공사)로 확대되었다. 간이형 공사의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가점방식으로 산정된다.

한편, 임금체불 명단공개로 인하여 감점을 받은 업체 수는 전년도 대비 큰 폭으로 감소(49.2%, 128개사 → 65개사)하였다.

〈표 25〉 최근 3개년 건설고용지수 임금체불 명단공개 감점 업체 현황

(단위 : 개사, %)

구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감점업체	103	128	65
증감률	△34.0	24.3	△49.2

건설고용지수를 확인하고자 하는 종합건설업체는 ’19년도에는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20년도부터는 공제회 퇴직공제 EDI 시스템(<http://wedi.cwma.or.kr> → 로그인 → 건설인력 고용지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사 발주기관은 공제회로부터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건설고용지수를 일괄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 제3부

# 고객복지사업

| 제1장 | 사업 개요

| 제2장 | 주요 추진 사업 및  
추진 현황

## | 제1장 |

# 사업 개요

### 제3부 고객복지사업



고객복지사업이란 건설근로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첫째,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은 수입이 불안정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가 본인 앞으로 적립된 퇴직공제금의 일부를 대부받아 전·월세 보증금, 자녀 결혼자금, 입원·수술비 마련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다. 생활자금 대부사업은 1차 사업(09.3.2~'12.6.30), 2차 사업('12.11.1~'13.4.30) 그리고 3차 사업('16.10~'19년 현재)으로 구분되며, 건설근로자 본인 앞으로 적립된 퇴직공제금 원금의 최대 50%까지 신청할 수 있고, 무이자로 지원된다. 대부기간은 대부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이며, 상환방법은 일시·분할·조기상환 등이 가능하다.

둘째, 단체보험 가입 지원은 직업특성 상 개인적으로 보험가입이 어려운 건설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보험 상품을 구성하여 근로자의 부담 없이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복지서비스로서, 2011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연중 가입신청 등을 통해 선정된 근로자 6,471명('19년 피보험자 기준)이고, 보장내용은 상해·질병사망, 상해후유장해, 암진단비, 암수술급여, 암입원급여,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골절진단, 깁스치료비 등 15개 항목이다.

셋째, 종합건강검진은 건설근로자의 노동 강도가 높고 근로환경이 열악해 건강관리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점에 착안해 2017년부터 지원하기 시작한 복지서비스다. 검진항목은 일반X선 촬영 및 종양 표지자 검사 등 국가검진항목 뿐 아니라, 위 내시경과 복부초음파를 포함하는 기본검진 및 저선량 CT, MRI 검사, 특수 초음파 등의 선택검진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넷째,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장학금은 건설근로자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에게 자녀장학금을 지급하는 복지서비스로서 2014년부터 시작했다. 지원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며 직전년도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인 적립 근로자 중에서 2년제 이상 대학생자녀를 둔 경우로 하였고, 대학생 자녀의 성적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로 제한하였다. 지원금액은 100만 원이며,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자녀가 있는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청·접수 후 근로자의 적립일수, 자녀의 성적 등을 토대로 선정하여 지급한다.

다섯째,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대출이자 지원은 종합건강검진과 더불어 2017년부터 추진 중인 복지서비스로서,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자녀의 이자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공공기관 중에서는 최초로 실시하였다. 지원대상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등록금 대출의 직전학기에 발생한 이자 금액이다.

여섯째, 결혼·출산 지원금은 건설근로자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정책에 맞춰 실시하는 복지서비스로서, 2010년에 시작됐다. 건설근로자의 결혼과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나아가 청년층의 건설업 취업을 유도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결혼(혼인신고일 기준) 및 출산(출생신고일 기준)한 피공제자 중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1년 이내에 100일 이상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다. 결혼지원금은 50만 원이고, 출산지원금은 첫째의 경우 30만 원, 둘째의 경우 40만 원, 셋째 이상의 경우 50만 원으로 각각 1회에 한해 지원한다.

일곱째, ‘건설기능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유공근로자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건설기능인의 사기 진작 및 직업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건설기능인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공제회에서 2009년에 발간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2차 기본계획 세부 과제의 효과적 추진 방안」보고서에서 처음 제안한 것을 당시 국토해양부가 받아들여 2010년에 기념일로 지정했다. 기념일은 ‘11월 22일’로 정해졌는데, 그 이유는 ‘11’은 ‘서서 일하는 건설근로자의 모습’을, 그리고 ‘22’는 ‘허리를 굽혀 앉아서 일하는 건설근로자의 모습’을 형상화 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건설기능인, 퇴직공제업무 담당자, 직업훈련교사 등의 개인분야 그리고 퇴직공제 이행우수 사업주 등 단체분야로 나눠 엄격한 심사를 거쳐 유공자를 선발하여 포상하고, 여기에서 선정된 개인 및 단체에게 훈장, 포장, 표창 등을 수여했다. 2010년 제1회 기념식에서는 25명에게 표창이 수여됐으나, 2011년부터는 훈장 및 포장이 추가됐고, 2019년에는 35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여덟째, 건설근로자 가족힐링캠프는 건설현장의 작업 특성 상 상대적으로 가족여행 기회가 적은 건설근로자에게 가족 1인을 동반한 2박 3일의 여행기회를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로서, 2010년부터 시작되었다. 지원대상은 사연공모를 통해 선정된 건설근로자다. 동 사업이 시작됐던 초기에는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퇴직공제 적립 근로자 중 8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 대하여 안내 공문을 발송하여 신청 접수하고 노동단체 추천 근로자의 경우 건설노동조합에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는데, 근래에는 사업취지를 살려 공모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사연이 담긴 참가신청을 받아 심사하여 참가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다. 여행 중 공제회가 추진하는 다양한 복지사업을 소개하는 한편, 근로자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수렴하고 있다.

아홉째, 2010년부터 사진공모전 및 사진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건설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직업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일반인 및 건설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건설근로자를 주제로 한 ‘사진공모전’을 개최한 후, ‘건설기능인 사진전시회’를 통해 수상작을 전시한다. 2019년부터 영상 분야를 추가한 ‘사진·영상 공모전 및 수상작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 | 제2장 |

# 주요 추진 사업 및 추진 현황

### 제3부 고객복지사업



2019년도에 추진한 고객복지사업의 주안점은 복지서비스의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수준을 향상하는 것이었다. 또한 복지로드맵 구축 연구를 통해 복지사업 확대 공급을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 1. 생활안정 및 금융지원

### 가.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대부사업은 1차('09.3.2~'12.6.30)와 2차('12.11.1~'13.4.30) 그리고 3차 사업('16.10~'19년)으로 구분된다. 3차 대부사업은 동절기 일자리 감소와 임시·일용 고용형태 등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의 생활안정지원 대책의 일환으로서 다시 시작되었다. 기존 대부사업의 개선사항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를 통해 '신청사유'를 선정하여 목적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대부신청 사유에는 ① 자녀 결혼자금 지원, ②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③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입원·수술비 지원, ④ 본인 명의 주택구입 및 주거 목적의 전·월세 보증금, ⑤ 최근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⑥ 최근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이 포함된다.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집계한 생활안정 대부의 사유별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총 32,870건에 대해 52,839백만 원이 지급되었는데, 대부신청 사유는 주택구입·전월세, 입원·수술, 대학생 자녀학자금 순이었다.

<표 26> 생활안정대부 지급 현황

(19.12.31 기준, 단위 : 건, 백만원, 천원)

구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건 수	32,870	2,408	8,809	11,554	10,099
지급액	52,839	3,499	13,362	19,153	16,825
평균지급액	1,607	1,453	1,517	1,658	1,666

### 나. 건설근로자 맞춤형 금융상품

건설근로자는 대출을 받고 싶어도 고정적으로 소속된 회사가 없어 소득증빙이나 재직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고금리의 제2금융권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금융기관과 협업하여 기존 제2금융권의 고금리대출을 중금리로 전환해주는 대환대출상품(전북은행 체인지업론, 2016년)과 별도 소득증빙이나 재직증명서가 없어도 퇴직공제 적립내역 확인만으로 제1금융권을 이용할 수 있는 신용대출상품(하나은행 새희망홀씨, 2017년)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2019년 말 현재 대환대출상품은 560건(6,161백만 원), 신용대출상품은 709건(4,041백만 원)을 제공하였다.

## 2. 건설근로자 건강관리 지원

### 가.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가입

직업특성 상 위험도가 높아 개인적으로 보험가입이 어려운 건설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그 특성에 맞는 보험 상품을 구성하여 근로자의 부담 없이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단체보험 가입을 지원해 왔다. 가입 희망신청 등을 통해 피보험자를 선발하여 단체보험에 가입시키고 골절, 상해,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보장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동 사업은 2011년에 3,000명의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시작해 9년간 피보험자 43,484명을 가입시켰고 2,912건에 대해 약 36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2019년에는 피보험자 6,471명을 가입시켰다.

<표 27>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추진 현황

(19.12.31 기준, 단위 : 명, 백만 원)

구분	총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피보험자	43,484	3,000	5,000	6,000	1,000	5,000	6,000	6,000	5,013	6,471
보험료	5,315	360	549	600	110	697	839	730	660	770

구분	총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보험기간	-	'11.3.1 ~ '12.2.29	'12.3.1 ~ '13.2.28	'13.3.1 ~ '14.2.28	'14.3.1 ~ '15.2.28	'15.3.1 ~ '16.2.29	'16.3.1 ~ '17.2.28	'17.3.31 ~ '18.3.30	분기별 가입일로부터 1년	분기별 가입일로부터 1년
보험금 지급실적	2,912건 (3,632백만 원)	132건 (191백만 원)	266건 (538백만 원)	361건 (743백만 원)	102건 (251백만 원)	296건 (292백만 원)	242건 (317백만 원)	446건 (346백만 원)	768건 (722백만 원)	299건 (232백만 원)

## 나. 건설근로자 대학생자녀 '협성장학금' 추천

신청자격에 부합하는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소득수준과 성적 등 종합적인 심사를 통해 선발된 장학생에게 (재)협성문화재단에서 등록금 전액 및 학기당 학습보조금 50만 원을 지급한다. 이 사업은 2011년에 시작되어 2019년까지 9년째 이어오고 있는데, 총 383명에게 약 20억 3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2019년에는 46명에게 약 2억 7천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되었다.

〈표 29〉 건설근로자 협성장학금 추진 현황

(19.12.31 기준, 단위 : 명, 백만 원)

구분	총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지급인원	383	48	63	57	32	29	39	36	33	46
1인당 금액	-				등록금 전액					등록금 전액 + 학습보조금(학기당 50만 원)
총 지급금액	2,036	307	216	231	177	170	232	230	206	267

## 나. 건설근로자 '종합 건강검진' 지원

산업 특성상 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며, 분진·소음 등 열악한 외부 환경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조기 질병관리의 필요가 절실한 건설근로자에게 건강관리의 기회를 주기 위해 2017년에 신규로 발굴하여 시행된 복지서비스다. 한국건강관리협회 등 총 6곳의 검진기관을 통해 누적인원 총 3,042명(2019년 검진인원 1,140명 포함)에게 저선량 CT, MRI, 초음파검사, 위내시경 등이 포함된 종합 건강검진을 지원했다.

## 3. 건설근로자 자녀교육 지원

### 가. 건설근로자 대학생자녀 '자녀장학금'

건설근로자의 자녀에게 학습보조비 성격의 장학금을 지급해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복지서비스다.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자녀가 있는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청·접수 후 근로자의 적립일수, 자녀의 성적 등을 토대로 선발하여 자녀장학금을 지급하였다. 1인당 금액은 2014년과 2015년에는 2백만 원이었는데, 2016년부터 1인당 금액을 1백만 원으로 낮추는 대신 지급인원을 늘렸다. 6년간 지급인원은 총 1,370명이었고 지급금액은 총 14억 6천만 원이었다.

〈표 28〉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자녀장학금 추진 현황

(19.12.31 기준, 단위 : 명, 백만 원)

구분	총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지급인원	1,370	30	60	160	220	300	600
1인당 금액	-	2	2	1	1	1	1
총 지급금액	1,460	60	120	160	220	300	600

주 :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고등학생 자녀 1,304명을 대상으로 872백만 원을 지급하였음.

### 다. 건설근로자 '고교생자녀 인터넷 수강' 지원

건설근로자의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교육업체인 '스카이에듀'와 업무협약을 통해 고등학생 자녀에게 온라인 무료 수강권 2과목(100명) 및 30% 할인쿠폰(100명)을 제공했다. 2014년부터 총 5,036명이 참여했고 2019년에는 1,085명에게 수강권을 제공하였다.

〈표 30〉 고등학생 자녀 무료 인터넷 수강 지원 추진 현황

(19.12.31 기준, 단위 : 명)

구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4	412	29	30	31	32	34	35	36	37	37	37	37	37
2015	578	20	21	21	22	49	58	63	64	65	65	65	65
2016	860	65	41	43	44	67	70	83	86	87	87	87	100
2017	1,025	100	14	64	64	83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018	1,076	100	44	55	77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019	1,085	100	37	73	86	92	98	99	100	100	100	100	100

주 : 수강인원은 매월 수강 중복인원을 포함하여 산정

## 4. 건설근로자 가족친화 지원

### 가. 건설근로자 ‘결혼·출산 지원금’

건설근로자의 결혼과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나아가 청년층의 건설업 취업을 유도하려는 취지의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결혼(혼인신고일 기준) 및 출산(출생신고일 기준)한 피공제자 중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1년 이내에 100일 이상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다. 결혼지원금은 50만 원이고, 출산지원금은 첫째의 경우 30만 원, 둘째의 경우 40만 원, 셋째 이상의 경우 50만 원으로 각각 1회에 한해 지원한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결혼지원금은 2,683명에게 약 10억 1천만 원을 지급했고, 출산지원금은 4,051명에게 약 11억 8천만 원을 지급했다. 2019년에는 1,883명에게 약 7억 9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 나. 건설근로자 ‘가족 힐링캠프’ 운영

건설현장의 특성 상 상대적으로 가족여행 기회가 적은 건설근로자에게 가족 1인을 동반한 2박 3일의 여행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여행 중 공제회가 추진하는 다양한 복지사업을 소개하기도 하고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수렴하는 간담회 시간을 갖는다.

동 사업이 시작됐던 초기에는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퇴직공제 적립 근로자 중 8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게 안내 공문을 발송하여 신청을 받거나 노동단체 추천 근로자의 경우 건설노조에게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는데, 근래에는 공모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사연이 담긴 참가신청을 받아 참가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다.

2019년에는 187명이 가족 힐링캠프에 참가했고,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10년 동안 참가한 누적 인원은 총 898명이었다.

〈표 31〉 결혼·출산 지원금 지원 추진 현황

(19.12.31 기준, 단위 : 명, 백만 원)

구분	예산	종류					
		계		결혼지원금		출산지원금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계	2,528	6,734	2,190.2	2,683	1,014.4	4,051	1,175.8
2010	300	28	8.4	8	2.4	20	6.0
2011	30	42	12.6	13	3.9	29	8.7
2012	18	34	10.2	9	2.7	25	7.5
2013	255	850	255.0	232	69.6	618	185.4
2014	127	414	124.2	174	52.2	240	72.0
2015	180	616	180.0	278	83.4	338	96.6
2016	180	624	179.9	278	83.4	346	96.5
2017	210	887	196.5	359	107.7	528	88.8
2018	456	1,356	436.6	569	227.6	787	209.0
2019	772	1,883	786.8	763	381.5	1,120	405.3

주 : 2019년 예산 부족분은 타 고객복지사업 집행잔액 활용

〈표 32〉 가족 힐링캠프 추진 현황

(19.12.31 기준, 단위 : 명, 천 원)

구분	총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참가인원	898	104	54	109	74	38	76	86	80	90	187
인당 소요액	631	482	422	544	528	480	536	647	835	898	939
행사장소	—	제주도			제주(1차) 상해(2차)	일본 규슈	일본 오사카	대만 타이 페이			

## 5. 건설근로자 상담서비스

### 가. 종합지원 이동상담버스 운영

종합지원 이동상담 버스 2대를 활용하여 주중 매일 새벽인력시장과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퇴직공제 적립내역과 각종 복지서비스에 대해 안내했다. 2019년에는 새벽인력시장 196개소와 건설현장 368개소에서 총 14,348명의 근로자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했다. 2018년 하반기부터 단순 적립내역 안내에서 퇴직공제 근로내역 축소신고를 받는 심층상담으로 개선하였으며 2019년부터 근로자들의 권리와 편의 증진을 위해 새벽시장이나 건설현장에 방문하여 총 20회의 모바일 앱 교육을 실시하였다.

〈표 33〉 종합지원 이동상담버스 운영 현황

(19.12.31 기준, 단위 : 명, 개소)

구분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이용인원	131,164	5,350	6,962	9,646	19,782	19,885	19,327	20,412	15,452	14,348	
퇴직공제 축소신고 접수	188	–	–	–	–	–	–	–	122	66	
모바일 앱 교육 진행 횟수	20	–	–	–	–	–	–	–	–	20	
방문현장	새벽시장 건설현장	2,715 2,780	160 146	219 175	249 199	471 380	462 379	466 380	250 404	242 349	196 368

## 나. 상담환경 개선 및 다양한 홍보 활동

전국 지사·센터에서는 상담전용 노트북 및 전화기를 설치한 상담전용 공간을 마련하여 노무·건강 등 건설근로자 종합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건설현장과 새벽인력시장 등을 방문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대체로 노무와 건강(심리) 분야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표 34〉 노무·건강 등 건설근로자 상담서비스 실시 현황

(19.12.31 기준, 단위 : 명, %)

구분	계	노무	건강(심리)	재무	외국인	취업
2014	158	21 (13.3)	81 (51.3)	–	46 (29.1)	10 (6.3)
2015	867	439 (50.6)	229 (26.4)	22 (2.6)	148 (17.1)	29 (3.3)
2016	854	583 (68.3)	132 (15.4)	48 (5.6)	91 (10.7)	–
2017	1,272	668 (54.2)	344 (27.1)	39 (3.1)	202 (15.9)	19 (1.5)
2018	1,822	989 (54.3)	517 (28.4)	41 (2.3)	250 (13.7)	25 (1.3)
2019	705	339 (48.1)	295 (41.8)	6 (0.9)	64 (9.1)	1 (0.1)

## 6. 건설근로자 직업 이미지 개선

### 가. ‘건설기능인의 날’ 기념식 개최

건설기능인은 주택, 공장, 사무실, 병원, 도로, 댐 등 사회를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건축 및 기반시설을 시공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고용 불안과 임금 체불

그리고 잦은 산재 등으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이 높았고 사기도 낮았다. 그 결과 생산물의 품질과 안전은 악화됐고, 젊은 층은 건설기능인으로의 진입을 꺼려 고령화가 심해지기도 했다.

따라서 건설기능인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전환시킬 계기가 필요했고 건설기능인이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전문기능인으로서 대우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2010년에 ‘건설기능인의 날’을 제정했다. 11월 22일을 건설기능인의 날로 지정하고,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 유공자를 표창함으로써 건설기능인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 제고를 도모하는 한편, 건설현장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고자 했다.

## 나. 정부포상 수여

기념식의 하이라이트인 정부포상 수여에서는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건설기능인, 퇴직공제업무 담당자, 직업훈련교사 등의 개인분야와 퇴직공제 이행우수 사업주 등 단체분야로 나눠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개인 및 단체에게 훈장, 포장, 표창 등을 수여했다. 2010년 제1회 기념식에서는 25명에게 표창이 수여됐으나, 2011년부터는 훈장 및 포장이 추가됐고, 2019년에는 35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표 35〉 건설기능인의 날 “정부포상” 수여 현황

(19.12.31 기준, 단위 : 명)

총계	정부포상					장관표창	
	소계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고용노동부장관표창	국토교통부장관표창
–	340	76	9	9	29	29	114
2010	25	6	–	–	3	3	9
2011	34	8	1	1	3	3	9
2012	36	8	1	1	3	3	12
2013	35	8	1	1	3	3	12
2014	35	8	1	1	3	3	12
2015	35	8	1	1	3	3	12
2016	36	8	1	1	3	3	12
2017	35	8	1	1	3	3	12
2018	34	6	1	1	2	2	12
2019	35	8	1	1	3	3	12



## 다. 사진·영상공모전 및 사진·영상전시회 개최

건설근로자에 대한 직업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일반인과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건설근로자를 주제로 한 ‘사진·영상공모전’을 개최한 후, 수상작을 모아 찾아가는 ‘사진·영상전시회’를 개최(2019년부터 공모대상에 영상작품을 추가)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접수된 작품은 총 2,778건인데 그중에서 179건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2019년에는 14점의 당선작을 선정(영상작품 1점 포함)하였으며, 수상작에 대한 사진·영상전시회를 4차례 열었다.

<표 36> 사진·영상공모전 추진 현황

(‘19.12.31 기준, 단위 : 건)

구분	총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접수	2,778	264	183	341	207	240	143	468	335	290	307
수상작	179	19	20	17	17	20	19	18	19	16	14

<표 37> 2019년 사진·영상전시회 실시 현황

구분	1회	2회	3회	4회
일정	9.24 ~ 9.30	9.26 ~ 9.27	9.28 ~ 9.29	11.22
장소	서울메트로 미술관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	서울 럭비경기장	건설회관
행사 전경				

## 제4부

# 자산운용사업

### | 제1장 | 사업 개요

### | 제2장 | 주요 추진 사업

### | 제3장 | 추진 현황

## | 제1장 |

# 사업 개요

### 제4부 자산운용사업



자산운용사업이란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운용자산에 대한 효율적인 자산운용과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공제부금을 증식하는 사업이다.

채권 위주로 자산을 구성해 안정성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산운용위원회, 투자심의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로 자산운용체계를 구축해 공제부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와 합리적인 투자 의사결정을 도모하고 있다.

자산운용은 크게 4가지 원칙에 의거해 이루어진다. 첫째는 ‘안정성’으로 자산의 변동성에 대응하면서 손실위험을 최소화해야 하고, 둘째는 ‘유동성’으로 퇴직공제금의 지급이 원활하도록 적정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는 ‘공공성’으로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해 공제부금의 설치목적과 정부의 정책추진 방향에 부합하도록 운용하고, 넷째는 ‘수익성’으로 공공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성을 도모하며 공제부금의 확대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용하고 있다.

## | 제2장 |

# 주요 추진 사업

### 제4부 자산운용사업



2019년도에 추진한 자산운용사업의 주안점은 공제부금 자산 증식을 통해 퇴직공제금의 실질가치를 제고하는 것이었다. 세부 분야별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산운용의 수익성을 제고하고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를 위해 중장기 자산운용체계의 강화 및 전술적 자산배분의 활성화, 주식·채권 운용유형 다변화 및 해외투자 확대, 대체투자 포트폴리오 다변화 및 체계적인 사후관리 등을 강화하였다. 둘째, 자산운용의 리스크관리 체계를 개선했다. 이를 위해, 운영리스크를 도입하고 신용리스크를 검토하는 등 종합적인 리스크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 1. 자산운용 관련 위원회 운영

공제회는 자산운용의 전문성·효율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산운용규정 및 자산운용지침(IPS)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수의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자산운용위원회, 투자심의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을 통한 의사결정체계를 확립하고 그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 가. 자산운용위원회

자산운용 전반에 관한 심의·의결기구인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사항은 기본적인 투자정책 방향 설정, 연간 부금운용계획(전략적 자산배분안 포함)의 수립 및 변경, 자산운용지침(IPS)의 제·개정, 기타 자산운용과 관련된 중요사항 등이다.

자산운용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사장은 정해진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선임 또는 위촉하되, 외부 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재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는 있으나, 위원회 간의 독립적 운영을 위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는 없다.

## 나. 투자심의위원회

투자심의위원회는 개별 투자 건을 심의하고 투자 상품을 선정하는 등 투자 의사결정 전반을 담당한다. 심의·의결 사항은 국내외 주식 및 채권자산 관련 상품에 대한 결정 및 변경, 국내외 SOC 및 부동산 등 실물 대체투자의 결정 및 변경, 국내외 M&A 관련 사모펀드 및 기타 대체투자에 대한 결정 및 변경 등이며, 공제회 투자의 대부분은 투자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다.

투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이사장이 운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임하며, 정해진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선임 또는 위촉하되, 외부 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외부 위원의 경우 전문가 집단(Pool)을 구성하여 운영하되, 투자심의위원회 개최 시마다 위원장이 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참석대상 위원을 지명하고 있다. 재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투자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 활용할 수 있다.

## 다. 리스크관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자산운용의 리스크관리 및 성과평가 전반에 관한 심의·의결기구로서, 주요 심의사항은 위험관리정책 및 전략, 위험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리스크관리지침 및 성과평가지침의 제·개정, 자산운용 성과평가정책 및 기준, 자산운용 성과측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리스크관리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이사장은 정해진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선임 또는 위촉하되, 외부 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재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 2. 효율적인 자산운용

### 가. 중장기 자산배분전략체계('20~'24) 강화 및 전술적 자산배분 활성화

중장기적 관점의 운용전략에 기반을 둔 효율적 자산배분과 금융시장 변화에 대응한 적정투자를 통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창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장기자산배분 전략체계 강화 및 전술적 자산배분 활성화로 부금운용의 장기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또한, 분기·월별로 금융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였고, 특히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여 '19년도 자산운용 컨틴전시 계획을 수립하였다. 중시의 변동성 확대에 따라 금융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였으며, 기존의 자산운용본부 자체의 주간회의 이외에, 주간 시장점검 회의를 추가로 시행·운영하였다.

### ◆ 중장기 자산배분계획('20~'24년) 수립 및 개선

구분		2019년(A)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B)	증감(B-A)
주식	국내	5.5	4.3	4.3	4.3	3.9	3.6	△1.9
	해외	5.7	5.2	5.2	5.1	5.1	5.1	△0.6
채권	국내	57.3	55.9	54.4	52.9	51.7	50.7	△6.6
	해외	3.1	4.0	4.3	4.6	4.8	4.8	+1.7
대체투자		23.9	26.7	28.0	29.2	30.5	31.7	+7.8
단기자금		4.5	3.9	3.8	3.9	4.0	4.1	△0.4

### ◆ 전술적 자산배분의 활성화

주기적 운용계획 수립	연간	▶ 2019년도 자산운용 컨틴전시 계획
	분기	▶ 2019년도 부금운용계획 ⇒ 중장기 자산배분 계획의 이행 ▶ 2019년도 자산별 세부운용전략 ⇒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구축
	매월	▶ 매분기 부금운용계획 ⇒ 연간 부금운용계획 구체화 및 시장대응
금융시장 모니터링 및 운용현황 점검	분기	▶ 월별 부금운용계획 ⇒ 분기 운용계획 구체화 및 시장대응
	매월	▶ 분기별 부금운용현황 ⇒ 연간 운용계획 이행
	매주	▶ 월별 부금운용현황 ⇒ 분기 운용계획 대비 점검
		▶ 주간 금융시장 동향 및 수익률 점검 ⇒ 월별 운용계획 점검 및 시장대응

## 나. 주식·채권·대체투자 자산별 포트폴리오 다변화

2019년도에는 주식·채권 내 운용유형 다변화와 해외투자 확대 등을 통해 포트폴리오를 다변화 하였고, 대체투자는 신규 대체상품 발굴 및 투자 집행을 통해 사모투자, 기업투자 등 다변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였다.

첫째, 국내주식은 대형주 중심의 인덱스형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면서 적정 지수대에서의 자금 회수로 수익을 제고하였으며, 해외주식은 선진국 신규유형을 도입하고, 글로벌 ETF형 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등 분산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였다.

둘째, 채권의 경우 대내외 중앙은행 기준금리 인하 등에 따른 시장금리 하락에 대응하여 국내채권은 시가 자산 및 중장기 비중을 확대하고, 크레딧형을 신규로 도입하였으며, 시장금리 하락 여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해외채권 비중을 확대하였다.

셋째, 대체투자의 경우 기업 투자(원스토어 전환우선주), 부동산(일본 오피스, 스페イン 제조시설) 등 신규 대체상품 발굴 및 투자 집행을 통해 대체자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했다. 2019년의 신규 투자 상품은 7건이고, 기 약정상품을 포함해 총 1,890억 원의 투자를 집행했다. 대체투자 규모는 2018년 7,290억 원에서 2019년 9,340억 원으로 2,050억 원(+28%) 증가했다.

넷째, 대체투자 상품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정기 점검·보고 등 사후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투자상품의 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했다. 트러스Y7호 위탁관리 REITs 자산매각을 의결하였으며, 우리은행(특금) 종합부동산세 소송 승소에 따른 상환금 3억원을 수취하였다.

### 3. 자산운용 리스크관리

#### 가. 자산다변화를 고려한 리스크관리 체계 개선

부동산, 사모 및 인프라 등 다양한 유형의 대체투자상품 포트폴리오 다변화 및 해외주식 채널 확대 등 자산유형이 다변화됨에 따라 새롭게 추가된 유형에 대한 한도설정 및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하였다.

투자규모 증가, 자산유형 다변화 및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리스크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운영리스크를 도입하고 신용리스크를 검토하는 등 종합적인 리스크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 나. 투자상품 사전/사후검토 강화

투자의사결정 프로세스의 객관성·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리스크관리팀에서 투자심의위원회 전문가집단(Pool) 관리 및 위원 선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선임 업무를 수행하면서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업계에 종사하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분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의 개선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대체투자의 경우 잠재적 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실사 실시, 모니터링, 특이사항 검토 등 개별 투자상품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였다.

#### 다. 자산운용 성과평가

2019년에는 투자상품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 및 환류체계 확립을 통해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성과평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운용부서와 공유하여 투자전략 수립 및 자금운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라. 대체투자상품 공정가치 평가

대체투자자산의 경우 장기투자자산이면서 상품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적절한 가치의 측정 및 부실화 가능성의 조기 인식 등이 어렵다. 이에 공제회는 외부전문기관을 선정하여 대체투자상품에 대한 가치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회계 결산 시 반영하고 있다. 또한 보유 중인 상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실화 가능성을 조기에 인식하는 등 자산건전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제4부 자산운용사업



### | 제3장 |

## 추진 현황

### 1. 자산운용 현황

2019년 건설근로자공제회 공제부금 전체 수익률은 4.46%로 목표수익률 2.50% 대비 1.96%p 상회하며, 목표 수익률 대비 178%를 달성하였다.

2019년 시장전망 및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주식 중심에서 해외주식으로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지속하여 국내주식 비중을 낮추고 해외주식 비중을 높였다. 국내증시 대비 해외증시의 높은 성과로 인하여 양호한 수익률 기여도를 시현하였다.

투자 유형별 성과를 상세히 살펴보면, 단기자산은 목표수익률 1.75% 대비 0.11%p 상회하여 작년 대비 상회 폭은 소폭 축소하였고, 중장기자산은 목표수익률 2.53% 대비 2.12%p 상회하여 작년 대비 상회 폭이 크게 개선되었다.

2019년 건설근로자공제회 공제부금 전체 수익률은 4.46%로 BM대비 0.05%p 상회하였다. 단기자산 수익률은 1.86%로 BM대비 0.24%p 상회하여 전년과 동일한 수준 이였으며, 중장기자산 수익률은 4.65%로 BM대비 0.10%p 상회하여 2018년도 대비 상회 폭이 축소되었다.

&lt;표 38&gt; 공제부금 자산운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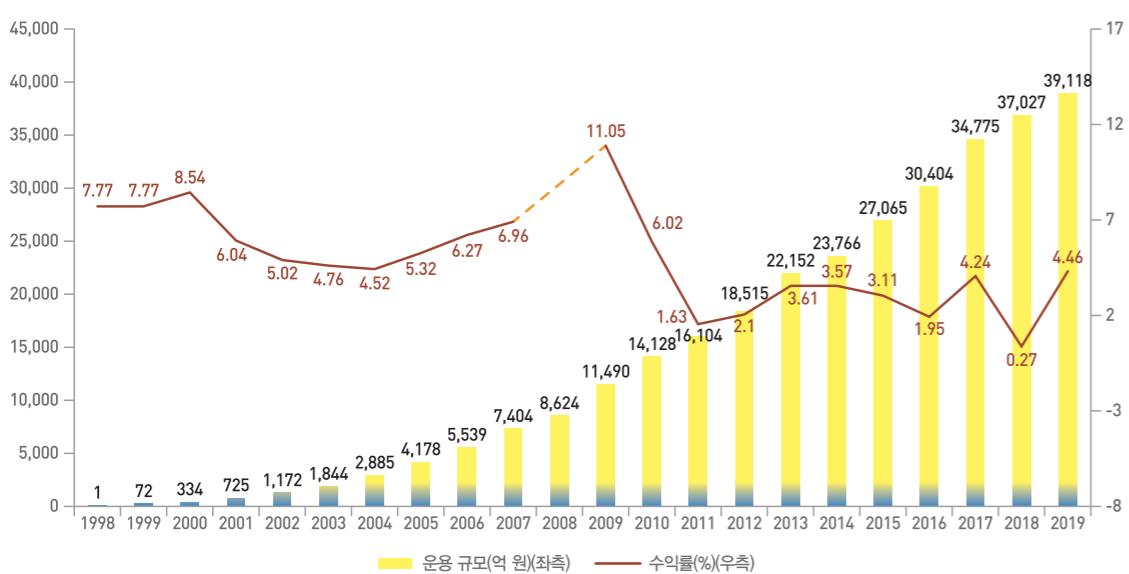
구분	투자자산	운용규모			투자비중 (평가액기준)	운용수익	수익률
		투자원금	평가액	평잔			
중장기	주식	3,990	4,227	3,854	10.8	617	15.45
	채권	22,724	23,409	22,315	59.8	611	2.74
	대체투자	9,206	9,340	8,315	23.9	367	4.44
계		35,919	36,976	34,484	94.5	1,595	4.65
단기	현금성	2,139	2,141	2,548	5.5	47	1.86
	계	2,139	2,141	2,548	5.5	47	1.86
자산총계		38,058	39,118	37,032	100.0	1,642	4.46

주 : 수익률은 공정가치를 반영한 시간가중수익률임.

## 2. 운용 규모 및 수익률

공제회의 자산운용 규모는 설립 이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02년 1천억 원 달성을 시작으로 2007년 및 2008년 공제부금 일액 증가, 2010년 민간공사 등 의무가입 대상공사 확대에 따른 부금납입 증가 등에 힘입어, 2009년 최초로 운용규모 1조 원을 돌파한 후, 2013년 2조 원 도달에 이어 2016년 3조 원에 이르기까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2019년에는 약 3조 9천억 원의 운용 규모와 4.46%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lt;그림 4&gt; 공제부금 운용 규모 및 수익률 추이



&lt;표 39&gt; 공제부금 운용 규모 및 수익률 추이

연도	운용 규모	수익률	연도	운용 규모	수익률
1998	1	7.77	2009	11,490	11.05
1999	72	7.77	2010	14,128	6.02
2000	334	8.54	2011	16,104	1.63
2001	725	6.04	2012	18,515	2.10
2002	1,172	5.02	2013	22,152	3.61
2003	1,844	4.76	2014	23,766	3.57
2004	2,885	4.52	2015	27,065	3.11
2005	4,178	5.32	2016	30,404	1.95
2006	5,539	6.27	2017	34,775	4.24
2007	7,404	6.96	2018	37,027	0.27
2008	8,624	8.624	2019	39,118	4.46

또한, 부금회계로 운용해 온 공제부금은 「미확인 퇴직공제증지 판매대금운영수익」 특별회계가 2014년 1월 1일부로 설치됨에 따라 미회수공제증지 판매원금과 이자적립금 등을 분리하여 특별회계로 운용하게 되었다. 2019년의 특별회계의 운용 규모는 2,242억원이다.

&lt;표 40&gt; 특별회계 운용 규모 추이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운용 규모	2,034	2,070	2,114	2,188	2,180	2,242



PART  
**03**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통계**

- | 제1장 | 건설경기 및 건설노동시장 동향
- | 제2장 | 퇴직공제사업 운영실적

# 이용자안내

## 1. 본 자료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에서 수행하는 퇴직공제사업으로 생성된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집계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공제회에 신고된 내용만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전체 건설현장에 대한 통계 수치로는 한계를 지니므로, 활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 자료 상 적립일수는 건설근로자가 당해연도 건설현장에서 일한 모든 날이 아니라, 퇴직공제에 가입된 건설현장에서 일한 날만을 의미합니다.  
(예시) 근로자 A씨가 2019년도에 퇴직공제에 가입된 건설현장에서 50일을 일한 후 퇴직공제에 가입되지 않은 건설현장으로 이동하여 100일을 일한 경우 2019년도 A씨의 적립일수는 50일이 됩니다.)
- 또한, 적립일수는 근로자의 실제 작업시간을 근로기준법상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해 산출했습니다.  
(예시)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인 B씨가 2019년 5월 퇴직공제에 가입된 건설현장에서 10일 동안 하루에 12시간씩 일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B씨의 퇴직공제 적립일수는 하루에 1.5일로 환산하여 15일이 되며, 달력으로 하는 날짜 계산법과는 다릅니다.

## 2. 자료 추출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가 매월 EDI와 서면신고를 통해 공제회에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근로 연월’ 기준으로 추출했습니다.
- 직종은 당해연도 말 기준으로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가 공제회에 신고한 적립일수 자료를 근로자별로 집계한 후 가장 많은 적립일수 비중을 차지하는 직종 하나만을 기준으로 분류했습니다.
- 자료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표기했습니다.
- 사업장의 특성은 공사 유형별, 지역별, 규모별, 공종별, 발주자별 가입 현황을 중심으로 시계열로 분류했습니다.

- 근로자의 특성은 성별, 연령별, 지역별, 직종별 현황을 중심으로 시계열로 분류했습니다.
- 분류가 불가능한 자료는 ‘기타’에 포함해 표시했습니다.

## 3. 동 자료집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업 :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
- 건설사업주 :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자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면허·허가·등록 등을 받거나 한 자
- 건설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
- 퇴직공제 : 건설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내고, 그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 사망, 60세 도달 등의 경우에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
- 피공제자 : 퇴직공제에 가입된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건설근로자
- 공제부금 : 퇴직공제에 가입된 건설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근로할 경우 건설사업주가 1인 1일당 5,000원\*씩 계산하여 공제회에 납부하는 금액  
\*1일 공제부금액 : 5,000원(근로자 적립분 4,800원+사업·운영비 200원)
- 퇴직공제금 : 퇴직공제에 가입된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 사망, 60세에 이른 경우, 공제회가 퇴직공제에 가입된 기간 동안 납부된 퇴직공제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는 금액
- 적립일수 : 퇴직공제에 가입된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 건설사업주가 적립일수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납부하여 그 명의로 적립된 공제부금 납부일수
- 근무기간 : 퇴직공제에 가입된 건설현장에서 적립일수가 처음 신고된 때부터 마지막 신고된 때까지 역법에 따라 계산한 기간
- 투입인원 : 건설현장에서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의 그 날의 인원 수
- 직종 :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며, 그 복잡함과 책임의 정도가 다른 직무의 계열
- 공종 : 건설공사의 내역을 구성하는 주요한 공사의 종목



#### 4. 퇴직공제금 청구 관련, 최소한의 요건이 되는 공제부금 적립일수 252일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 퇴직공제금 지급 기준이 되는 공제부금 납부월수는 납부 일수 21일분을 1개월로 보아 공제부금의 총 납부일수를 21로 나누어 산정하므로, 공제부금 적립일수 252일은 공제부금 납부월수 12개 월에 해당됨
- 퇴직공제금은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미만인 자에게는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음
- 공제부금의 납부월수는 건설업에 종사한 기간과 관계없이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 고용되어 근로한 일수만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함

#### 5. 자료 추출 결과 지표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유량(flow) 지표에는 적립일수, 신규가입자수, 퇴직자수, 근무기간, 퇴직공제금 지급 현황이 있습니다.
  - 적립일수는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가 당해연도에 근로자에게 공제부금을 납부한 일수 기준임
  - 신규가입자수는 당해연도에 처음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일한 사람의 수를, 퇴직자수는 근로자가 그 동안 몸담고 일했던 건설업 생활을 청산하고 더 이상 건설 일을 하지 않게 된 사람의 수를 의미함
  - 근무기간은 근로자가 처음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적립일수가 신고된 때부터 마지막으로 신고된 때 까지의 기간 기준임
  - 퇴직공제금 지급 현황은 당해연도 1년 동안 퇴직공제금을 접수한 후 지급까지 완료한 사안을 기준으로 함
- 저량(stock) 지표에는 피공제자 현황,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현황 및 준공사업장 현황이 있습니다.
  - 피공제자는 당해연도에 퇴직공제 가입되어 있는 건설근로자를 기준으로 함
  - 퇴직공제가입사업장 현황은 당해연도에 시공 중인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함
  - 준공사업장 현황은 당해연도말 현재 준공처리가 완료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함

#### 6. 통계 수치는 향후 자료 보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7. 본 사업연보는 발간과 동시에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http://www.cwma.or.kr))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제1장 |

# 건설경기 및 건설노동시장 동향

## 1. 건설경기 동향

### ■ 고찰의 필요성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로 한다)가 운영하고 있는 주요사업은 크게 퇴직공제, 고용지원, 복지지원, 자산운용 네 가지로 구성되는데, 본 사업연보는 2019년도에 공제회가 수행한 주요사업의 추진 현황과 성과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각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돋기 위해 건설경기 및 노동시장 동향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모든 사업의 정책대상이자 출발점 그리고 추진 실적을 좌우하는 것이 '건설근로자의 고용'이고, 건설근로자의 고용 상황을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건설경기'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노동력의 수요를 생산물에 대한 파생수요(derived demand)라고 부른다. 즉, 건설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건설생산물에 대한 수요로부터 파생되어 나온다는 의미다. 요컨대, 공제회 사업의 활성화 여부 또는 추진 실적의 증감은 기본적으로 건설근로자의 고용 상황에 따라 규정되며, 건설근로자의 고용은 다시 건설경기 상황에 따라 규정된다. 따라서 해당 연도에 공제회가 수행한 주요사업의 추진 현황을 이해하기 위해 건설근로자를 둘러싼 건설경기 및 노동시장 동향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sup>1)</sup>

### 가. 개요

건설생산물의 수요 및 공급의 활성화 정도를 건설경기라고 할 수 있는데, 건설경기의 상승 또는 하강을 알려주는 건설경기지수를 동행지수와 선행지수로 구분할 수 있다.<sup>2)</sup> 동행지수(Coincident Index)란 현재의 경기 상태 및 동향을 파악하고 예측하는 지수를 의미하고, 선행지수(Leading Index)란 앞으로의 경기 동향을 예측하는 지수를 의미한다. 건설관련 지표 중 건축허가나 건설수주 활동이 건설공 활동에 앞서기 때문에 실제로 건축허가면적 통계나 건설수주통계가 건설투자의 선행성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건설공사 실적을 측정한 건설기성액은 건설투자의 동행성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건설

1) 주요 통계는 이홍일 · 박철한(2019.11), 2020년 건설경기 전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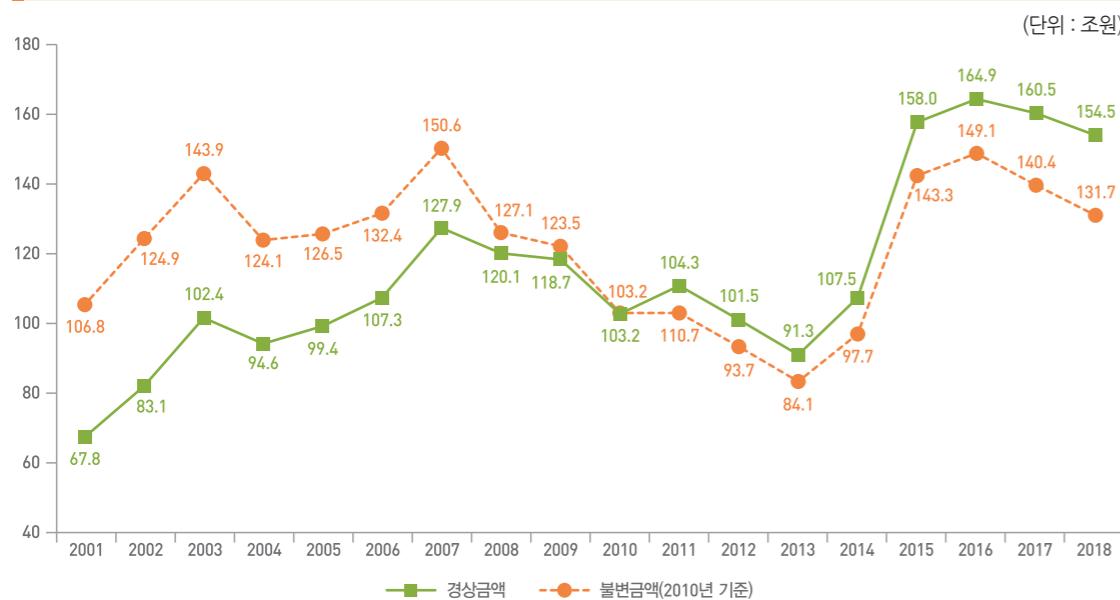
2) 시사경제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2017.7.11. 검색)

수주란 발주자가 제시하는 건설공사물을 건설업체가 완공해주기로 한 것에 대한 쌍방 간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며 금액과 납기 등으로 표현된다.<sup>3)</sup> 건설투자란 넓은 의미로는 자본으로서의 건축물을 취득하는 것, 또는 건축에 대한 생산, 유통, 소비의 각 측면에서의 자본 투자를 의미하고, 좁은 의미에서는 건축 생산에 있어서의 투자를 의미한다. 그리고 건설기성이란 건설업체의 국내공사 현장별 시공실적을 금액으로 조사하여 집계한 통계로서 조사대상 기간인 한 달 동안 시공한 공사실적을 조사한 것 이므로 해당 월에 실행된 건설투자를 의미한다. 퇴직공제사업과 관련해 예를 들어본다면, 파공제자 수의 동행지수는 건설투자·건설기성·건설업취업자수 등이고, 선행지수는 건설수주라고 할 수 있다.

## 나. 건설수주 동향 : 선행지수

최근 20년간 건설수주의 중장기 추이를 살펴보면, 대체로 세 번의 정점과 두 번의 저점을 볼 수 있다. 2000년 초의 상승세로 2003년에 정점에 이른 후 하락했다가 회복되어 2007년에 다시 정점에 도달했다. 하락세로 돌아선 이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충격의 영향으로 2013년에는 저점에 이르게 되고 다시 상승해 2016년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정점에 이른 후 2017년부터는 감소하고 있다. 다만, 경상가격 기준으로 2017년에도 160조원을 상회했고, 2018년도에도 154.5조원으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었다.

<그림 5> 국내 건설수주 중장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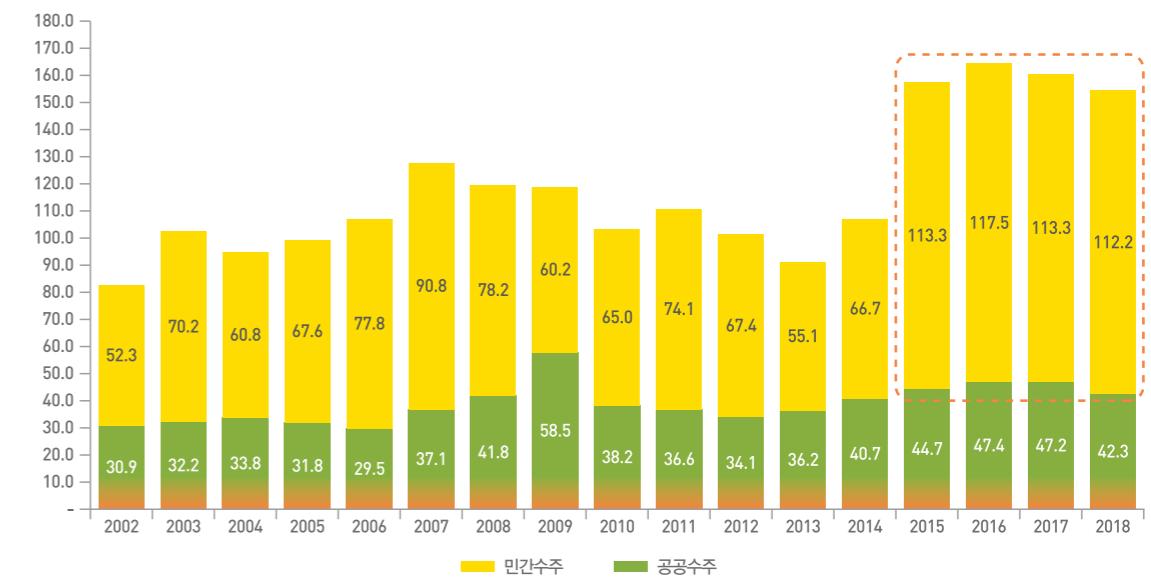
주 : 불변금액은 2010년 기준

자료 : 대한건설협회(이홍일·박철한(2019.11), 2020년 건설경기 전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참조)

3) 건설수주, 건설투자, 건설기성 등의 정의에 대해 참조함. 통계용어,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2017.7.11. 검색)

<그림 6> 발주 부문별 국내 건설수주 추이

(단위 : 조원)



주 : 불변금액은 2010년 기준

자료 : 대한건설협회(이홍일·박철한(2019.11), 2020년 건설경기 전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참조)

## 다. 건설투자 동향 : 동행지수

2019년의 건설투자는 260.05조원(2015년 연쇄가격 기준)으로 2018년의 270.86조원에 비해 약 10조원이 줄면서 4.0% 감소했다. 전년 동기에 비해 상반기에는 5.1% 감소 그리고 하반기에는 2.9% 감소했다.

<표 41> 건설투자동향

(단위 : 조원, 전년 동기비 %)

구분	2017			2018			2019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건설투자	132.81	150.12	282.93	131.54	139.32	270.86	124.81	135.24	260.05
증감률	10.1	4.9	7.3	-1.0	-7.2	-4.3	-5.1	-2.9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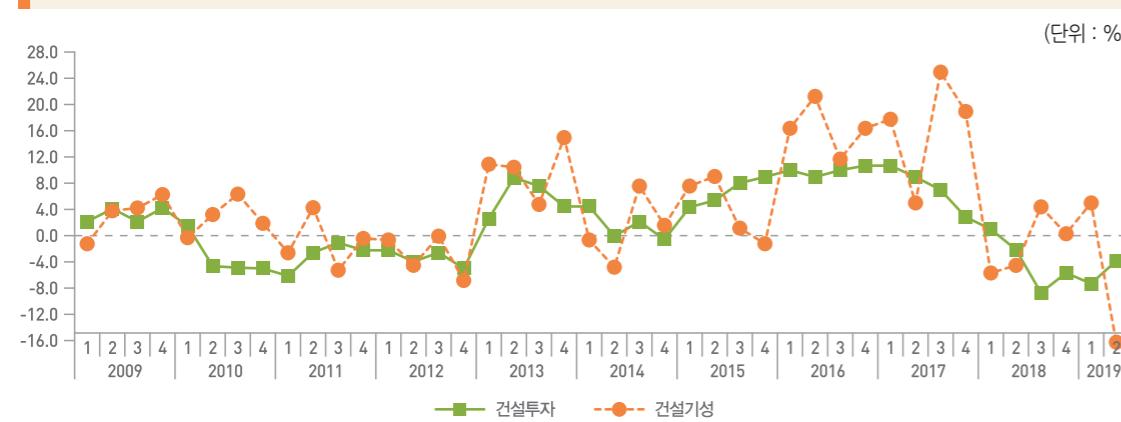
주 : 건설투자액은 2015년 연쇄가격 기준. 2019년 하반기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망치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호; 이홍일·박철한(2019.11), 2020년 건설경기 전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라. 건설수주와 건설투자 간 시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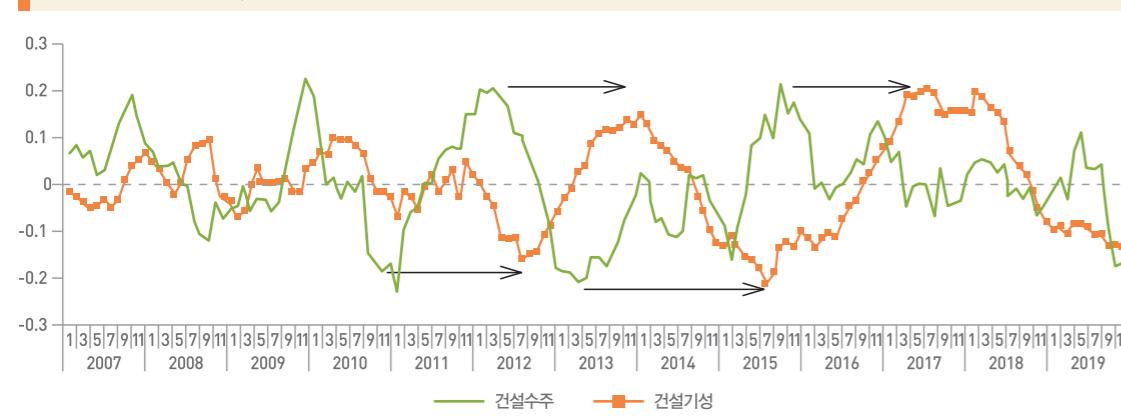
선행지수인 건설수주와 동행지수인 건설투자 간에는 시차가 발생하는데, 양자 간의 시차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면 공제회의 각 사업에 미칠 영향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으므로, 그 시차는 매우 중요한 정보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그림 7>에서 보듯이 건설투자와 건설기성은 둘 다 건설 경기의 동행지수로서 거의 유사한 방향의 움직임을 보인다. 그에 비해 <그림 8>에서 보면 건설수주와 건설투자 간에는 시차가 보이는데, 건설수주와 건설기성 간의 시차는 약 1년 내지 1년 반 수준이다. 즉, 건설수주가 상승세를 보이다가 2016년에 최고조에 이르렀다면, 건설투자 역시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2017년 초 또는 중반에 이를 것임을 미리 전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2017년 하반기 이후 수주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2019년부터는 건설투자 감소세가 이어질 것임을 짐작케 한다.

<그림 7> 건설투자와 건설기성 증감률 추이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이홍일·박철한(2019.11), 2020년 건설경기 전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참조)

<그림 8> 건설수주 및 건설기성 순환 변동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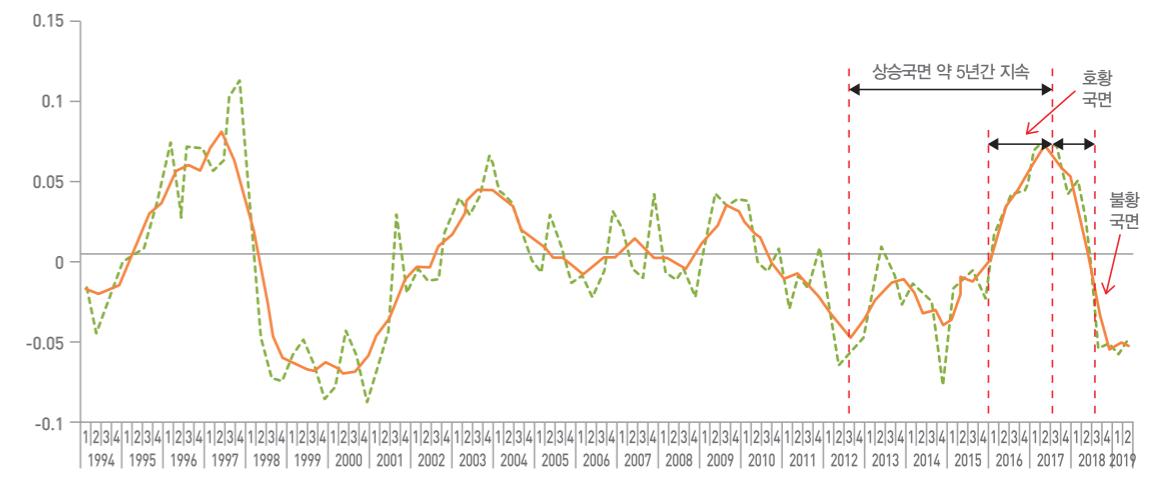


주 : 계절 조정된 시계열을 로그화하여 HP 필터로 필터링 수행, 7개월 이동 평균하였으며, 기성과 수주를 함께 보기 위해 기성 변동 폭을 2.5배 확대함.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이홍일·박철한(2019.11), 2020년 건설경기 전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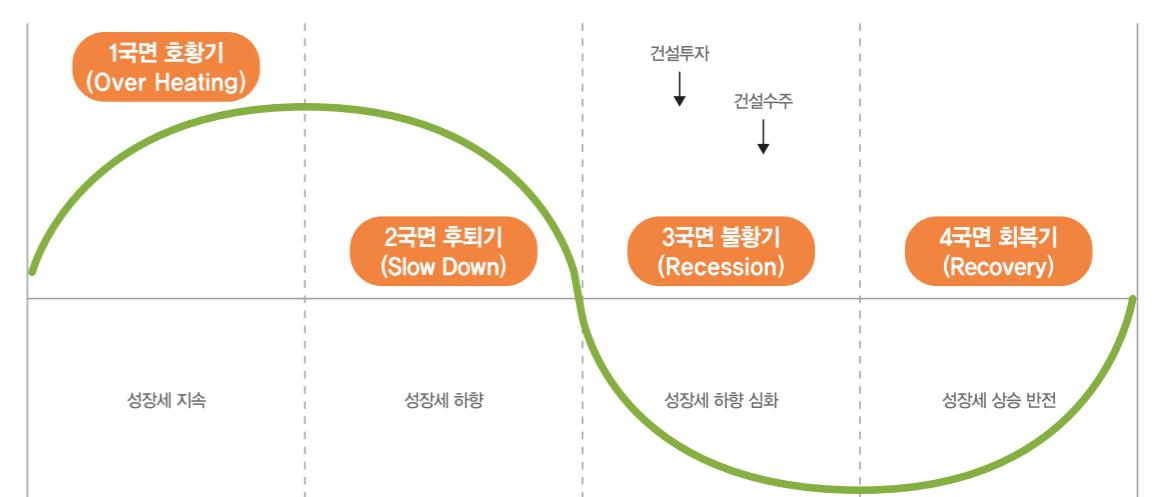
<그림 9>와 <그림 10>은 순환 변동치 국면 중 현재의 위치를 알려주고 있다. 건설투자는 2012년 하반기부터 상승국면에 들어서 2016년 이후 호황국면에 위치했고, 2017년 중반에 후퇴국면에 진입해 2018년 하반기에는 불황국면에 진입했다. 건설수주가 2016년에 후퇴국면에 들어와 2017년 하반기 이후 하락세가 본격화되었으므로, 1년 내지 1년 반의 시차를 두고 따라오게 될 건설투자는 2017년 하반기 이후 후퇴국면에 진입한 후 2019년에도 불황 국면이 지속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9> 건설투자 순환 변동치 추이



자료 : 한국은행(이홍일·박철한(2019.11), 2020년 건설경기 전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참조)

<그림 10> 건설경기 선행 및 동행 지표의 경기순환주기 중 현재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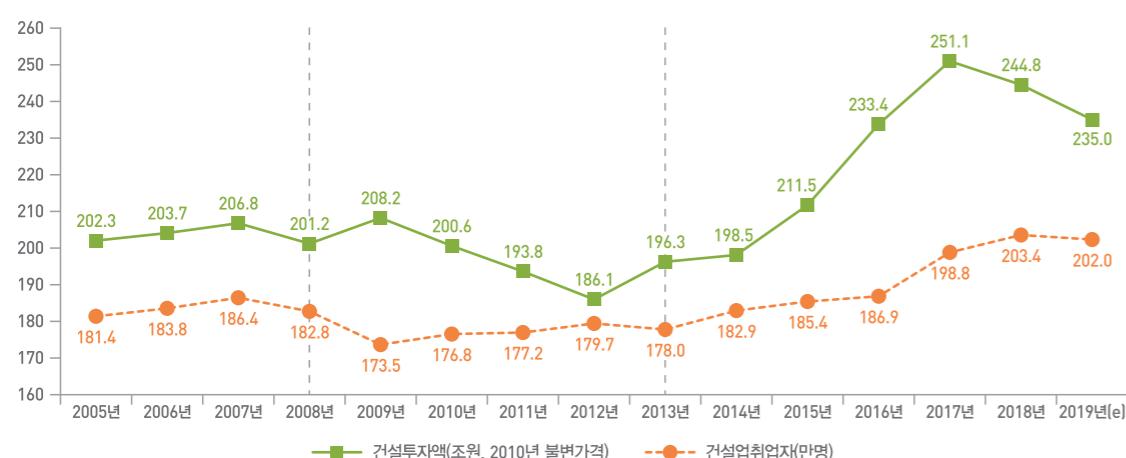
## 2. 건설노동시장 동향

### 가. 건설업취업자 동향

건설노동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건설업의 임금근로자와 비 임금근로자(자영자 등)까지 모두 포함해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통계청에서 매월 발표하는 건설업취업자다. 건설업취업자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업임업 및 어업숙련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등 9개의 직종으로 분류된다.

대체로 건설업취업자는 건설경기의 동행지수인 건설투자와 동일한 증감 추이를 보인다. 양자는 건설업의 생산물 수요와 그 생산물의 파생수요 간의 관계이므로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함께 움직이는 것이 자연스럽다. 하지만 <그림 11>에서 볼 수 있듯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그리고 2018년의 경우에는 양자의 흐름이 괴리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리된 정설은 없다.

<그림 11> 건설투자 및 건설업취업자 추이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각 연간 자료)

건설업취업자의 직종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의 경우 인원수 구성비가 높은 직종은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1,007,234명, 49.2%), 단순노무종사자(351,812명, 17.2%), 사무종사자(270,893명, 13.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166,326명, 8.1%),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162,871명, 8.0%) 등이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의 변화를 살펴보면, 총 320,623명이 증가했는데 절대 인원수 측면에서는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212,180명), 단순노무종사자(66,382명),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8,923명)의 순으로 증가 규모가 큰 반면, 관리자(-34,241명)와 농업임업 및 어업숙련종사자(-3,665명)의 경우 감소했다. 그에 비해 2019년과 2018년 1년간의 변화만을 살펴보면, 총

27,425명이 감소했는데 절대 인원수 측면에서는 단순노무종사자(16,582명)와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10,836명)의 감소 규모가 커다. 반면, 사무종사자(11,499명)는 크게 증가했다.

<표 42> 건설업취업자의 직종별 구성 변화 : 최근 10년간

구 분	인 원 수 (명)								
	2010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19-'10
관리자	96,410	67,880	73,706	71,763	57,077	60,091	70,990	62,169	-34,241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63,852	178,862	172,597	160,955	182,894	181,561	165,284	166,326	2,474
사무종사자	203,522	234,432	239,624	228,587	241,272	242,124	259,394	270,893	67,371
서비스종사자	1,468	423	2,256	3,041	1,828	547	0	1,388	-80
판매종사자	18,517	15,703	12,564	14,894	20,116	17,011	23,180	19,794	1,277
농업임업 및 어업숙련종사자	7,912	7,037	6,462	2,000	1,067	3,164	2,668	4,247	-3,665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795,054	803,063	893,114	926,925	917,983	976,238	1,010,544	1,007,234	212,18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53,948	175,315	186,163	183,470	183,296	185,692	173,707	162,871	8,923
단순노무종사자	285,430	272,032	251,376	253,497	325,919	372,991	368,394	351,812	66,382
계	1,726,113	1,754,747	1,837,863	1,845,132	1,931,452	2,039,420	2,074,161	2,046,736	320,623
구 성 비 (%)									
구 분	2010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19-'10
관리자	5.6	3.9	4.0	3.9	3.0	2.9	3.4	3.0	-2.5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5	10.2	9.4	8.7	9.5	8.9	8.0	8.1	-1.4
사무종사자	11.8	13.4	13.0	12.4	12.5	11.9	12.5	13.2	1.4
서비스종사자	0.1	0.0	0.1	0.2	0.1	0.0	0.0	0.1	-0.0
판매종사자	1.1	0.9	0.7	0.8	1.0	0.8	1.1	1.0	-0.1
농업임업 및 어업숙련종사자	0.5	0.4	0.4	0.1	0.1	0.2	0.1	0.2	-0.3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46.1	45.8	48.6	50.2	47.5	47.8	48.7	49.2	3.2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8.9	10.0	10.1	9.9	9.5	9.1	8.4	8.0	-1.0
단순노무종사자	16.5	15.5	13.7	13.7	16.9	18.3	17.8	17.2	0.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0

주 : 2017년부터는 새로운 산업분류에 의한 산정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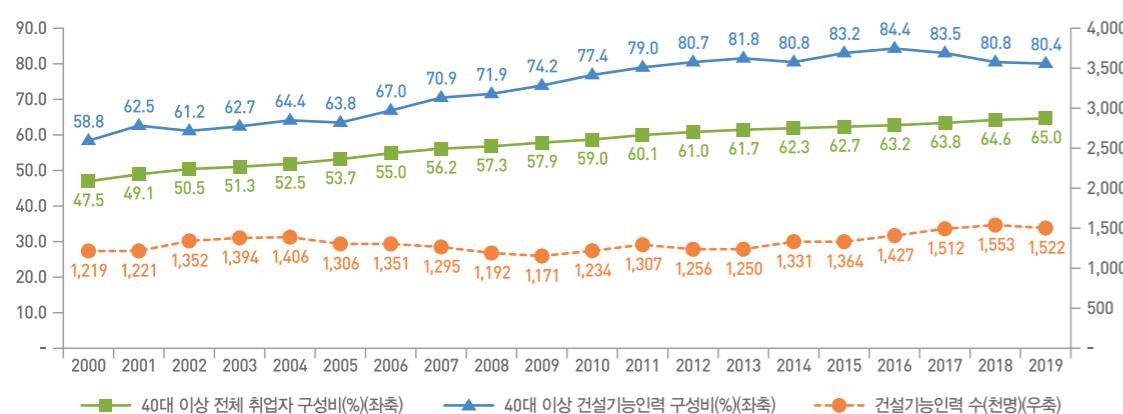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12월 기준

## 나. 건설기능인력의 규모 및 고령화 추이

건설업취업자의 9개 직종 중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등의 3개 직종이 대체로 건설현장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인데, 건설기술인력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건설기능인력’으로 불리거나 또는 비정규직이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개념으로서 ‘건설일용근로자’로 불린다. 이들은 대체로 동일 현장에서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많아 퇴직공제사업을 비롯한 공제회 제반 사업의 정책대상과 거의 일치한다. 따라서 본 사업연보에서도 건설업취업자 중 특히 건설기능인력에 주목하고자 한다.

2000년 이래 기능인력의 인원수는 꾸준히 증가해 2004년에 1,406천명으로 정점에 이른 후 감소해 2009년에 1,171천명으로 최저 수준으로 낮아진 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2018년에는 1,553천명으로 다시 정점에 이르렀다가 2019년에는 1,522천명으로 약간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2000년 이후 건설기능인력의 고령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돼 왔는데, 40대 이상 구성비 추이를 살펴보면 명확하게 드러난다. 58.8%이던 것이 2016년에는 84.4%로 급증했다가 증가세가 꺾여 2019년에는 80.4%로 약간 누그러졌으나 매우 높은 수준이다. 전체 취업자의 경우에도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2000년에는 47.5%로 나타나 양자 간의 격차가 11.3%p였는데, 2016년에는 63.2%로 나타나 그 격차가 21.2%p로 최대로 벌어졌다가 2019년에는 65.0%로 나타나 그 격차가 15.4%p로 약간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전체 취업자에 비해 고령화 정도가 심해 향후 건설현장 숙련인력 확보의 지속 가능성 또는 공제회 제반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불투명하게 만들 위험한 요소임에는 틀림없다. 건설투자를 통한 일자리가 만들어지더라도 이를 수행할 내국인 건설근로자가 부족해질 경우 퇴직공제사업을 비롯한 훈련, 취업, 복지 등 공제회 사업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연속 3년째 40대 이상 구성비가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하락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도록 젊은 층의 진입과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

<그림 12> 건설기능인력의 규모 및 고령화 추이



주 : 건설기능인력은 건설업취업자 중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등 3개 직종을 합한 개념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12월 기준

## | 제2장 |

# 퇴직공제사업 운영실적



퇴직공제사업은 공제회의 주된 사업인 만큼 퇴직공제제도가 도입된 1998년부터 2019년까지의 운영 실적을 개관하고 각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특성별로 구분하여 상세히 살펴보았다. 공제부금 적립일수, 수납액, 퇴직공제금 지급 등에 관한 특성별 분석은 2018년과 2019년 2개 연도를 중심으로 전년 대비 증감 정도를 비교했다.

## 1. 개요

### 가. 총괄

퇴직공제제도가 도입된 1998년 이래 2018년까지의 운영 실적을 개관해보면, 2019년 현재 퇴직자를 제외한 피공제자 누계는 5,535,985명이고, 퇴직자 누계는 911,767명이며, 퇴직공제금 지급액을 제외한 공제부금 납부액 누계치는 3조 6,126억 원이다. 2019년도 한 해 동안의 공제부금 적립근로자는 1,607,841명이고 연간 적립일수는 132,278천일이다. 2019년도의 공제부금 납부사업장은 39,355개소이고 연간 공제부금 납부액은 6,096억 원으로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은 15,491천 원이다. 1998년부터 2019년까지의 공제부금 납부액 총계는 5조 7,611억 원이다. 그리고 2019년도의 퇴직공제금 지급인원은 205,448명이고 퇴직공제금 지급액은 5,398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지급액은 2,627천 원이다. 1998년부터 2019년까지의 지급인원은 965,277명이고 퇴직공제금 지급액 총계는 2조 1,485억 원으로서 1인당 평균 지급액은 2,226천 원이다.

〈표 43〉 퇴직공제사업 운영 현황(1998~2019)

구분		합계(누계) (또는 평균)	1998~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주요 항목 누계	피공제자누계(명) (퇴직자제외)	5,535,985	3,950,417	4,221,656	4,462,345	4,754,836	5,105,365	5,364,446	5,535,985
	퇴직자 누계(명)	911,767	196,518	322,746	395,968	482,245	582,605	707,936	911,767
	공제부금 순증(억원) (지급액제외)(D-F)	36,126	21,176	2,894	2,649	2,892	3,375	2,440	699
연도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적립근로자(명)(A)	-	-	1,388,167	1,380,700	1,545,236	1,701,665	1,667,096	1,607,841
	적립일수(천일)(B)	-	-	107,232	109,710	127,133	144,006	138,015	132,278
연도별 공제부금 납부	납부사업장(개소)(C)	405,830	202,326	29,762	30,505	32,599	34,767	36,516	39,355
	납부액(억 원)(D)	57,611	25,429	4,442	4,537	5,114	6,043	5,950	6,096
	사업장당평균납부액 (천원)(D/C)	14,196	12,568	14,926	14,872	15,687	17,381	16,293	15,491
연도별 퇴직 공제금 지급	지급인원(명)(E)	965,277	285,334	76,122	80,099	92,727	100,774	124,773	205,448
	지급액(억 원)(F)	21,485	4,253	1,548	1,887	2,222	2,668	3,509	5,398
	1인당평균지급액 (천원)(F/E)	2,226	1,491	2,034	2,356	2,396	2,647	2,813	2,6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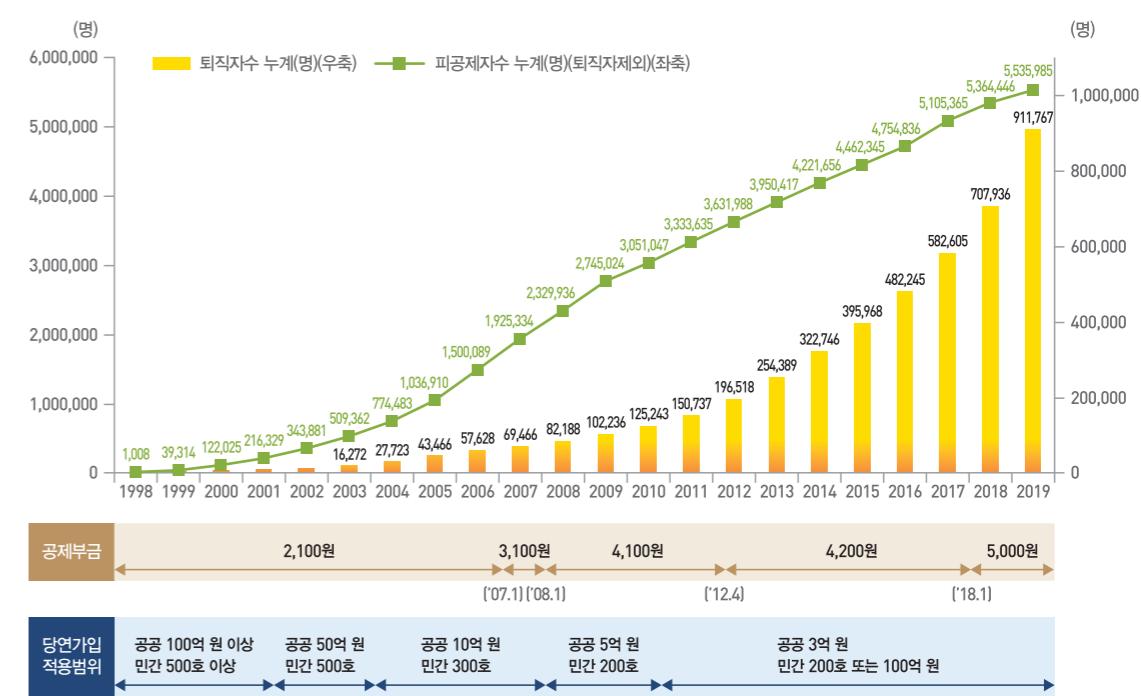
주1 : 연도별 적립근로자의 경우 동일 근로자가 다른 해에도 중복되므로 일정 기간에 걸친 누계는 실적으로서의 의미가 없어 생략함.

주2 : 지급인원은 추가지급 인원 등이 포함된 수치로 퇴직자 수와 의미가 다름(이하동일)

자료 :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DB

달했다.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퇴직공제금의 청구 요건과 관련이 있다. 청구권이 발생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신고일수가 252일 이상 적립돼야 하고 노후대책이라는 제도의 성격상 퇴직 시 또는 60세 이후여야 하므로, 제도 초기에는 대상자가 적을 수밖에 없고 시간이 지나면서 청구권자가 증가하게 되는 모습을 띠게 된다.

〈그림 13〉 퇴직공제 피공제자 및 퇴직자 누계 추이(1998~2019)



자료 :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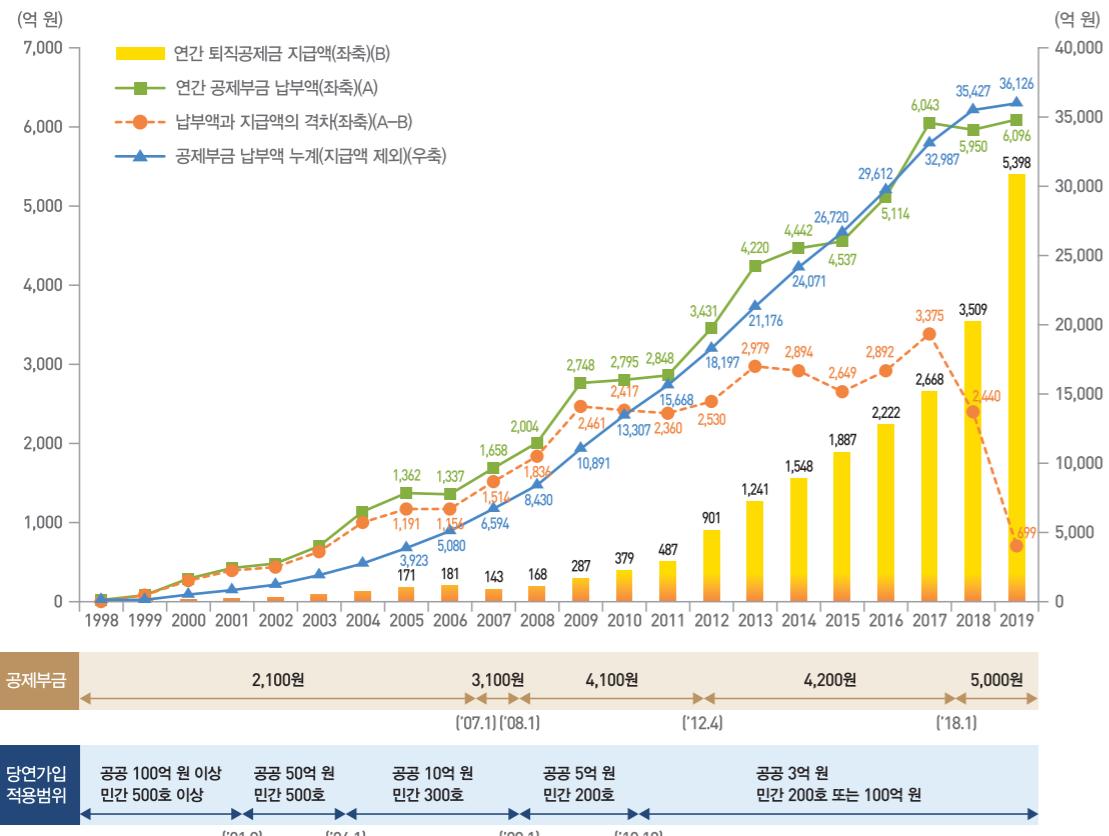
## 나. 퇴직공제 피공제자 및 퇴직자 누계

퇴직공제제도가 시작된 1998년에는 퇴직공제에 가입한 피공제자가 1,008명에 그쳤다. 당시 당연가입 적용대상 공사의 범위는 공공공사 100억 원 이상 그리고 민간공사 500호 이상이었는데 2001년 9월에는 공공공사의 범위가 5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공제부금 일액의 인상 및 당연가입 적용범위 확대와 더불어 퇴직공제제도가 정착하는 데 큰 계기가 된 것은 2002년에 시행된 퇴직공제 가입 의무화 및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한 것 그리고 2006년에 퇴직공제 근로내역 신고 방식을 종전의 공제증지 첨부방식에서 전산망을 통한 신고방식으로 전환한 것이었다. 피공제자 누계가 처음으로 백만 명을 넘어선 시점은 2005년이었고, 2008년에는 약 233만 명, 2010년에는 약 305만 명, 2014년에는 약 400만 명을 넘어섰고, 2019년 말에는 약 554만 명에 이르렀다. 그에 비해 퇴직자수는 초기에는 미미하게 증가하다가 2005년 이후 속도가 불기 시작해, 2009년에는 누적 퇴직자수가 10만 명을 넘어섰고, 2014년부터는 증가 속도가 매우 빨라지는 양상을 보였으며, 2017년에는 한 해 퇴직공제금 지급인원이 10만 명을 넘어섰다. 2019년 말의 누적 퇴직자수는 911,767명에

## 다. 공제부금 납부액 누계 및 연도별 수지 추이

연간 공제부금 납부액은 제도가 도입된 지 9년차인 2004년에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넘어선 1,115억 원을 기록했고, 그로부터 4년 후인 2008년에는 2,004억 원, 다시 4년 후인 2012년에는 3,431억 원, 이듬해인 2013년에는 4,220억 원, 2019년에는 6,096억 원에 이르렀다. 퇴직공제금 지급액도 2004년에는 128억 원이던 것이 2013년에는 1,241억 원 그리고 2019년에는 5,398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그림 14〉 공제부금 납부액 누계 및 연도별 수지 추이(1998~2019)



자료 : 건설구로자공제회 퇴직공제DB

향후 공제부금 납부액 누계치의 증가 속도는 공제부금 납부액과 퇴직공제금 지급액 간의 격차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전자가 후자에 비해 클 경우 공제부금 누계치는 계속 증가할 텐데 격차가 클수록 증가 속도는 빨라질 것이고 격차가 준다면 증가 속도는 느려질 것이다. 반대로 후자가 더 커진다면 그때부터 공제부금 납부액 누계치는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다. 양자 간의 격차는 대체로 증가 추세를 이어오고 있으며 2017년에는 3,375억 원에 달해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2018년에는 지급액이 증가하면서 2,440억 원으로 낮아졌는데, 2019년에는 지급액이 더욱 급증해 양자 간의 격차가 699억 원에 불과했다. 그 결과 공제부금 납부액 누계치의 증가 속도는 크게 둔화됐다.

2019년 현재 지급액을 제외한 공제부금 납부액 누계는 3조 6,126억 원으로 집계됐는데, 상승하는 속도가 갑자기 둔화돼 앞으로 공제부금 적립액의 증가 추세 역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말 건설근로자법의 개정으로 2020년 5월 27일 이후부터는 252일 미만 적립한 피공제자에게도 퇴직 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으므로 퇴직공제금의 지급액이 더욱 급격히 늘면서 공제부금 납부액 누계치의 증가 속도가 크게 둔화되거나 감소될 수도 있다.

## 2. 공제부금 적립일수

근로자의 근로내역과 관련된 적립근로자 및 적립일수 시계열 통계는 2005년까지는 연도별로 집계하지 못하고 2006년부터 2019년까지의 실적만을 살펴볼 수 있다. 2005년까지의 시계열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유는 신고 방식의 차이 때문이다. 2006년에 퇴직공제 근로내역 신고 방식을 EDI 전산망으로 전환한 후로는 피공제자의 근로내역이 발생한 시점을 알 수 있지만, 1998년부터 2005년까지는 복지수첩에 근로일수만큼의 공제증지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근로내역 신고가 이루어져 근로자별 증지 매수에 대한 정보만 존재할 뿐 근로내역이 발생했던 시점에 대한 정보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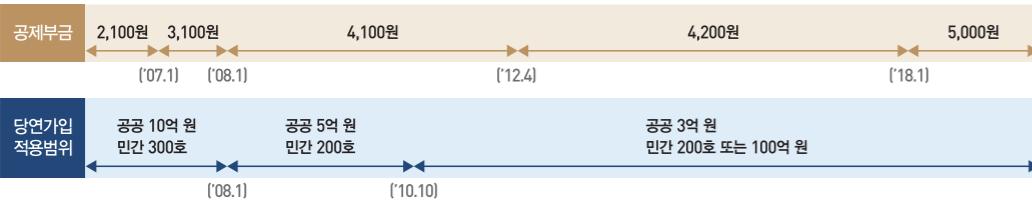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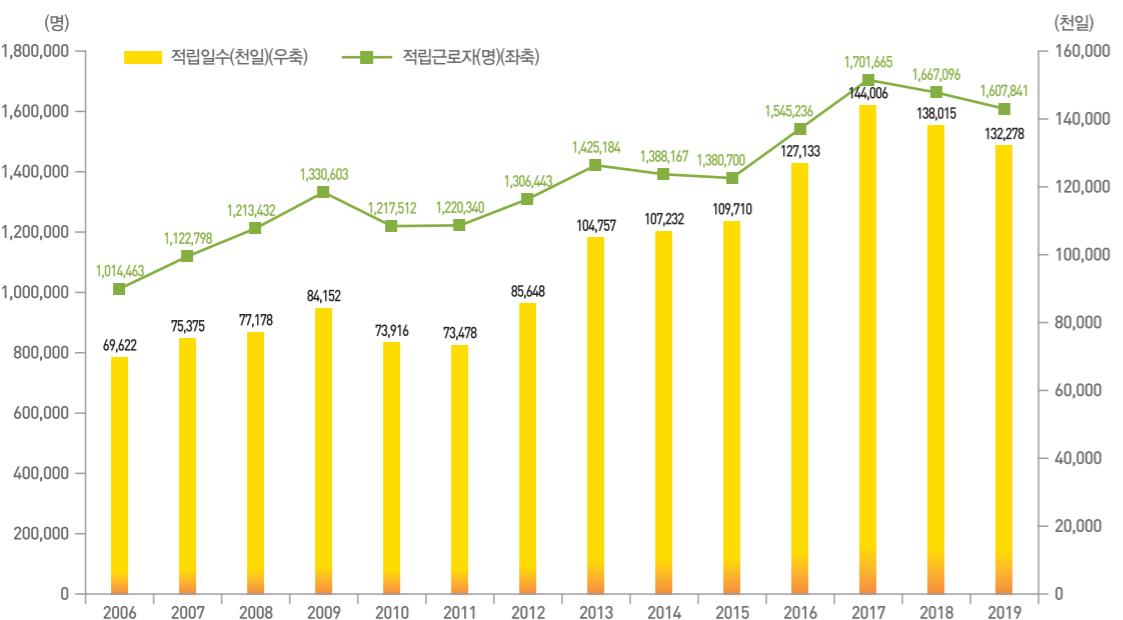
따라서 근로자가 복지수첩을 공제회로 반납해 전산망에 입력할 때 근로자별로 수첩에 첨부된 총 매수만 입력됐고, 2005년까지의 적립근로자 수 또는 적립일수를 연도별로 구분하여 확인할 수 없었다. 근로자의 근로내역이 발생한 시기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신고방식을 전산화한 것이 큰 의미를 지닌다.

적립근로자는 2006년에 1,014,463명에서 2019년에는 1,607,841명으로 1.6배 증가했으며, 동 기간 중 적립일수는 69,622천일에서 132,278천일로 1.9배 증가했다. 전자에 비해 후자의 증가 배율이 더 큰 이유는 당연가입 대상 공시의 적용범위 확대로 동일한 근로자가 여러 현장에서 퇴직공제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대체로 적립근로자와 적립일수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2014년과 2015년에는 적립근로자는 약간 줄어드는데 반해 적립일수는 증가세를 이어가는 양상을 보였다. 동 기간 중 앞에서 본 건설기성은 2014년 일시적으로 약간 감소하나 건설업취업자는 2013년 아래 계속 증가세를 보였다. 따라서 적립일수의 증가 추세가 건설노동시장의 실제 흐름과 더 잘 부합하는 모습일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2010년과 2011년에는 적립일수가 감소세를 보였는데 동 시기에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여파로 국내 건설기성의 흐름 역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이것은 자연스런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lt;그림 15&gt; 연도별 퇴직공제 적립근로자 및 적립일수 추이(2006~2019)



주 : 1998년부터 2005년까지는 복지수첩에 증지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근로내역 신고가 이루어져 근로자별 총 매수는 알 수 있지만 각 근로내역이 발생했던 시점에 대한 정보가 없어 연도별로 구분할 수 없음.

자료 :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DB

&lt;표 44&gt; 연도별 공제부금 적립근로자 및 적립일수 추이(2006~2019)

연도	적립근로자(명)	적립일수(천일)
평균	1,367,249	100,179
2006	1,014,463	69,622
2007	1,122,798	75,375
2008	1,213,432	77,178
2009	1,330,603	84,152
2010	1,217,512	73,916
2011	1,220,340	73,478

연도	적립근로자(명)	적립일수(천일)
2012	1,306,443	85,648
2013	1,425,184	104,757
2014	1,388,167	107,232
2015	1,380,700	109,710
2016	1,545,236	127,133
2017	1,701,665	144,006
2018	1,667,096	138,015
2019	1,607,841	132,278

주 : 1998년부터 2005년까지는 복지수첩에 증지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근로내역 신고가 이루어져 근로자별 총 매수는 알 수 있지만 각 근로내역이 발생했던 시점에 대한 정보가 없어 연도별로 구분할 수 없음.  
또한, 연간 1일 이상 적립일수가 있는 연단위의 근로자 및 적립일수의 집계에 대한 통계와 아래에서 기술하는 월별 1일 이상 적립일 수가 있는 월단위의 집계에 의한 통계는 다를 수 있음.

자료 :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DB

## 가. 기본 특성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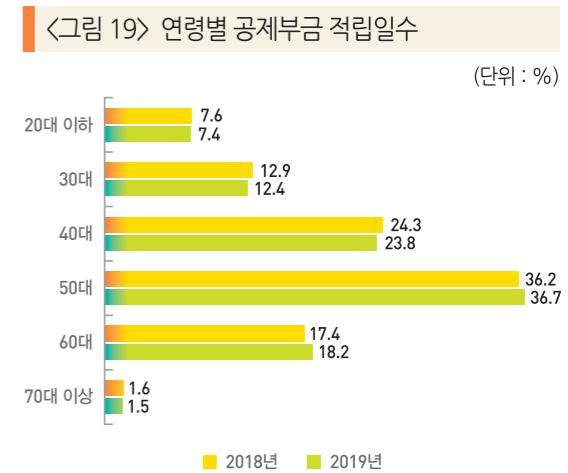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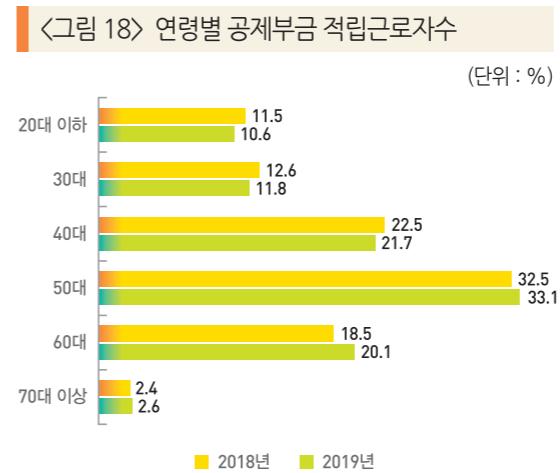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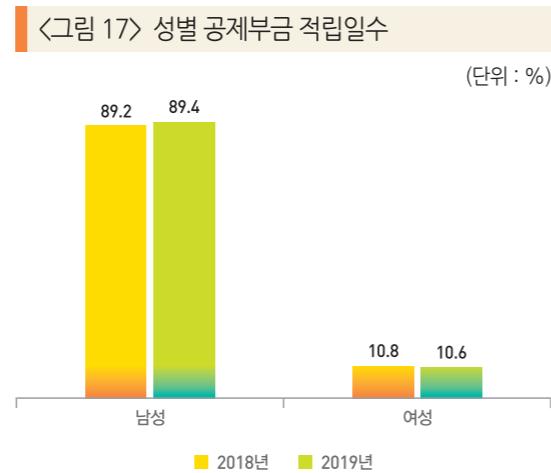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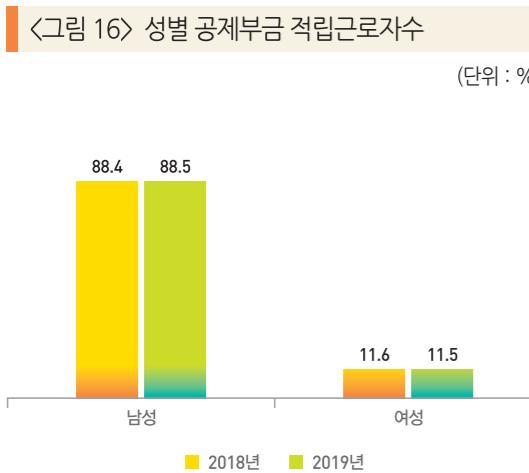
2019년의 공제부금 적립근로자수는 1,607,841명으로서 2018년의 1,667,096명에 비해 3.6%가 감소했고, 적립일수는 132,278,816일로 전년도의 138,015,761일 대비 4.2% 감소했다.<sup>4)</sup>

### 1) 성별

2019년도 공제부금 적립의 성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수의 경우 남성 88.5%(1,422,683명), 여성 11.5%(185,158명)로 나타났고, 적립일수의 경우 남성 89.4%(118,320,144일), 여성 10.6%(13,958,672일)로 나타났다. 매년 남성이 차지하는 적립근로자수의 비중에 비해 적립일수의 비중이 미미하나마 더 크다.

2018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전체 적립근로자수와 적립일수의 순으로 남성의 경우 3.4%와 3.9% 감소했고, 여성의 경우 4.4%와 6.0% 감소했다.

4) 특성별 수치는 약간씩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은 해당 특성이 파악되지 않는 근로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표 45> 성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구분		2018		2019		전년대비 증감률(%)
계	적립근로자수(명, %)	1,667,096	100.0	1,607,841	100.0	-3.6
	적립일수(일, %)	138,015,761	100.0	132,278,816	100.0	-4.2
남성	적립근로자수(명, %)	1,473,391	88.4	1,422,683	88.5	-3.4
	적립일수(일, %)	123,163,009	89.2	118,320,144	89.4	-3.9
여성	적립근로자수(명, %)	193,705	11.6	185,158	11.5	-4.4
	적립일수(일, %)	14,852,752	10.8	13,958,672	10.6	-6.0

## 2) 연령별

2019년도 공제부금 적립의 연령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의 경우 50대 33.1%(532,777명), 40대 21.7%(348,530명), 60대 20.1%(323,847명) 등의 순이고, 적립일수의 경우에도 역시 50대 36.7%(48,547,370일), 40대 23.8%(31,456,014일), 60대 18.2%(24,050,928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수의 경우 60대와 70대에서 증가했고 적립일수의 경우 60대에서 약간 증가했으며, 그 이외 연령에서는 모두 감소했는데 특히, 20대와 30대의 감소가 컸다.

**<표 46> 연령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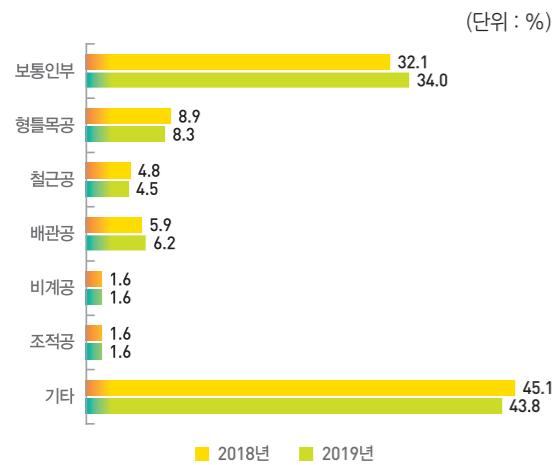
구분		2018		2019		전년대비 증감률(%)
계	적립근로자수(명, %)	1,667,096	100.0	1,607,841	100.0	-3.6
	적립일수(일, %)	138,015,761	100.0	132,278,816	100.0	-4.2
20대 이하	적립근로자수(명, %)	191,540	11.5	170,721	10.6	-10.9
	적립일수(일, %)	10,452,255	7.6	9,802,219	7.4	-6.2
30대	적립근로자수(명, %)	209,872	12.6	190,477	11.8	-9.2
	적립일수(일, %)	17,810,635	12.9	16,417,614	12.4	-7.8
40대	적립근로자수(명, %)	374,816	22.5	348,530	21.7	-7.0
	적립일수(일, %)	33,563,084	24.3	31,456,014	23.8	-6.3
50대	적립근로자수(명, %)	542,521	32.5	532,777	33.1	-1.8
	적립일수(일, %)	50,019,821	36.2	48,547,370	36.7	-2.9
60대	적립근로자수(명, %)	308,467	18.5	323,847	20.1	5.0
	적립일수(일, %)	24,025,132	17.4	24,050,928	18.2	0.1
70대 이상	적립근로자수(명, %)	39,880	2.4	41,489	2.6	4.0
	적립일수(일, %)	2,144,834	1.6	2,004,671	1.5	-6.5

## 3) 직종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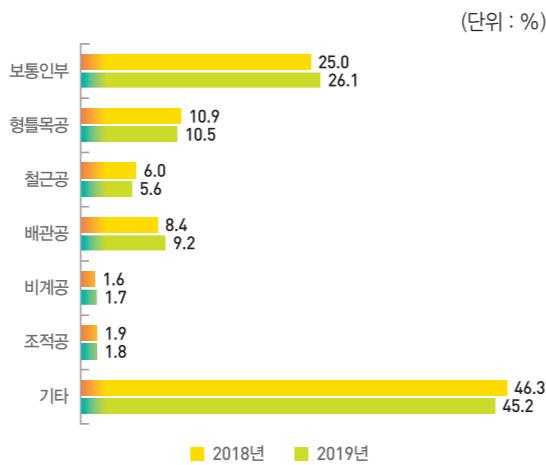
2019년도 공제부금 적립과 관련해 주요 6개 직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의 경우 보통인부 34.0%(546,366명), 형틀목공 8.3%(133,451명), 배관공 6.2%(100,043명) 등의 순이고, 적립일수의 경우 역시 보통인부 26.1%(34,536,148일), 형틀목공 10.5%(13,888,463일), 배관공 9.2%(12,200,714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와 적립일수 모두 보통인부(2.0%, 0.1%)와 배관공(2.2%, 5.5%)만 약간 증가했고 형틀목공(-10.1%, -7.3%)과 철근공(-7.9%, -11.4%)의 감소가 컸다.

<그림 20> 직종별 공제부금 적립근로자수



<그림 21> 직종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표 47> 직종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구분		2018		2019		전년대비 증감률(%)
계	적립근로자수(명, %)	1,667,096	100.0	1,607,841	100.0	-3.6
	적립일수(일, %)	138,015,761	100.0	132,278,816	100.0	-4.2
보통인부	적립근로자수(명, %)	535,428	32.1	546,366	34.0	2.0
	적립일수(일, %)	34,486,663	25.0	34,536,148	26.1	0.1
형틀목공	적립근로자수(명, %)	148,471	8.9	133,451	8.3	-10.1
	적립일수(일, %)	14,978,858	10.9	13,888,463	10.5	-7.3
철근공	적립근로자수(명, %)	79,282	4.8	72,994	4.5	-7.9
	적립일수(일, %)	8,301,078	6.0	7,354,826	5.6	-11.4
배관공	적립근로자수(명, %)	97,908	5.9	100,043	6.2	2.2
	적립일수(일, %)	11,563,995	8.4	12,200,714	9.2	5.5
비계공	적립근로자수(명, %)	27,476	1.6	25,996	1.6	-5.4
	적립일수(일, %)	2,188,749	1.6	2,186,255	1.7	-0.1
조적공	적립근로자수(명, %)	26,472	1.6	25,265	1.6	-4.6
	적립일수(일, %)	2,555,133	1.9	2,327,774	1.8	-8.9
기타	적립근로자수(명, %)	752,059	45.1	703,726	43.8	-6.4
	적립일수(일, %)	63,941,285	46.3	59,784,636	45.2	-6.5

#### 4) 적립일수 규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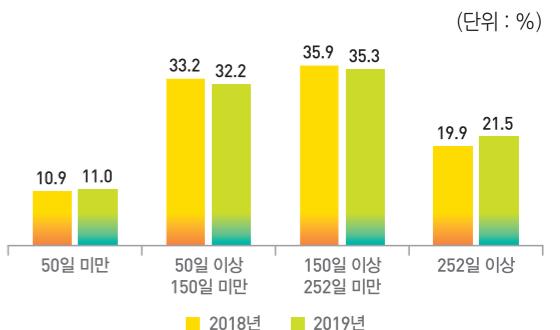
2019년도 공제부금 적립의 적립일수 규모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의 경우 50일 미만 50.3%(808,669명), 50일 이상 150일 미만 28.9%(463,863명), 150일 이상 252일 미만 14.8%(238,250명) 등의 순이고, 2019년 한 해에 퇴직공제금 청구요건 중 하나인 252일 이상을 적립한 근로자는 6.0%(97,059명)다. 각 구간 적립일수 합계의 경우에는 150일 이상 252일 미만 35.3%(46,699,496일), 50일 이상 150일 미만 32.2%(42,573,237일), 252일 이상 21.5%(28,431,242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와 적립일수의 경우 252일 이상(2.7%, 3.3%)에서는 증가했으나, 그 이외에서는 감소했는데 각각 50일 이상 150일 미만(-7.0%, -7.1%), 150일 이상 252일 미만(-6.1%, -5.8%), 50일 미만(-1.4%, -3.3%) 순으로 감소가 컸다.

<그림 22> 적립일수규모별 공제부금 적립근로자수



<그림 23> 적립일수규모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표 48> 적립일수규모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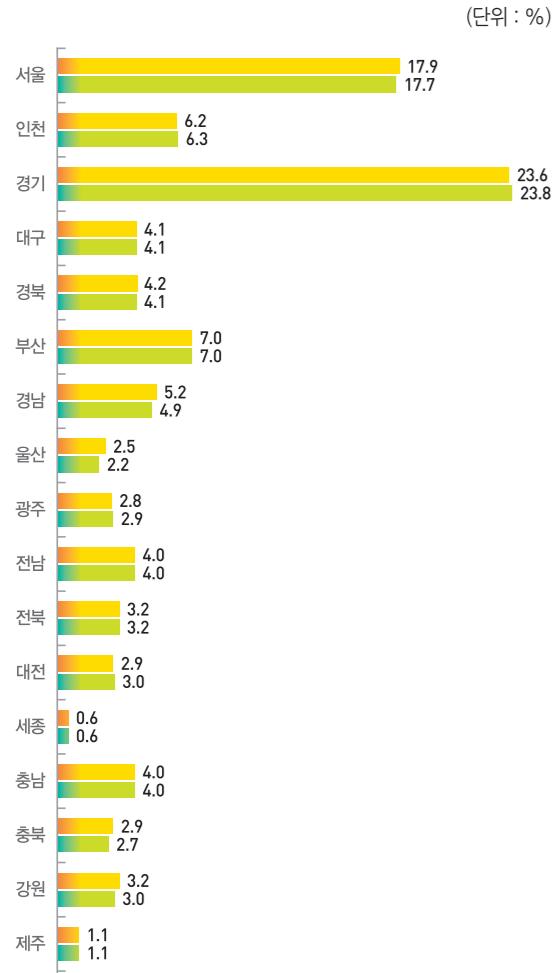
구분		2018		2019		전년대비 증감률(%)
계	적립근로자수(명, %)	1,667,096	100.0	1,607,841	100.0	-3.6
	적립일수(일, %)	138,015,761	100.0	132,278,816	100.0	-4.2
50일 미만	적립근로자수(명, %)	820,267	49.2	808,669	50.3	-1.4
	적립일수(일, %)	15,071,339	10.9	14,574,841	11.0	-3.3
50일 이상 150일 미만	적립근로자수(명, %)	498,539	29.9	463,863	28.9	-7.0
	적립일수(일, %)	45,829,906	33.2	42,573,237	32.2	-7.1
150일 이상 252일 미만	적립근로자수(명, %)	253,811	15.2	238,250	14.8	-6.1
	적립일수(일, %)	49,595,020	35.9	46,699,496	35.3	-5.8
252일 이상	적립근로자수(명, %)	94,479	5.7	97,059	6.0	2.7
	적립일수(일, %)	27,519,496	19.9	28,431,242	21.5	3.3

## 5) 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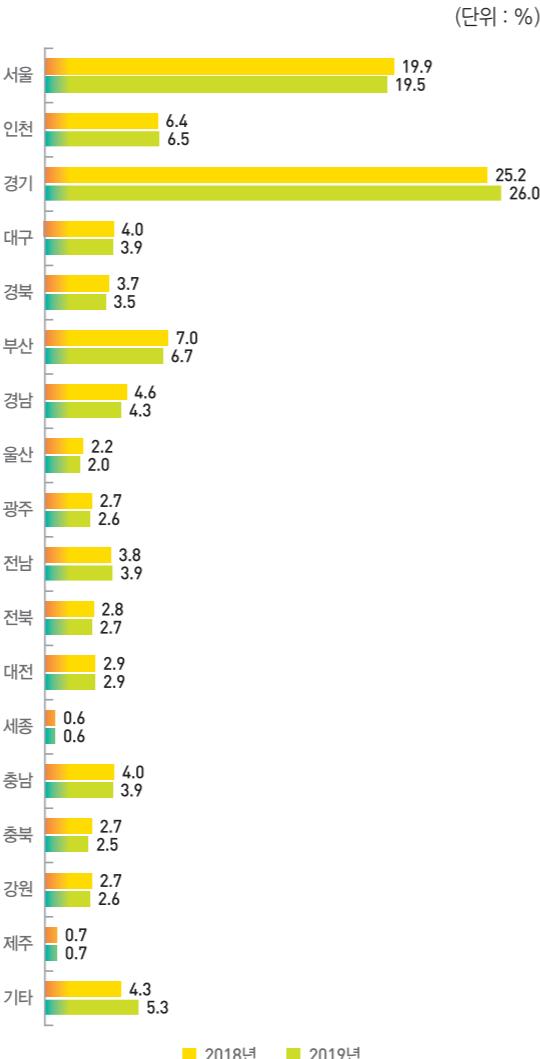
2019년도 공제부금 적립의 지역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의 경우 경기 23.8%(383천 명), 서울 17.7%(285천 명), 부산 7.0%(112천 명), 인천 6.3%(101천 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적립일수의 경우 역시 경기 26.0%(344십만 일), 서울 19.5%(258십만 일), 부산 6.7%(89십만 일), 인천 6.5%(86십만 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양자 모두 전 지역에서 감소했는데, 적립근로자의 경우 울산(-14.3%), 세종(-10.0%), 충북(-8.3%) 등의 순으로 감소가 커졌고, 적립일수의 경우 울산(-13.3%), 충북(-10.8%), 제주(-10.0%) 등의 순으로 감소가 커졌다.

<그림 24> 지역별 공제부금 적립근로자수



<그림 25> 지역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 2018년 ■ 2019년

<표 49> 지역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구분	2018				2019				전년 대비 증감률	
	적립근로자수 (천명, %)	적립일수 (십만일, %)	적립근로자수 (천명, %)	적립일수 (십만일, %)	적립 근로자수 (%)	적립일수 (%)				
계	1,667	100.0	1,380	100.0	1,608	100.0	1,323	100.0	-3.5	-4.1
서울	299	17.9	274	19.9	285	17.7	258	19.5	-4.7	-5.8
인천	104	6.2	89	6.4	101	6.3	86	6.5	-2.9	-3.4
경기	393	23.6	348	25.2	383	23.8	344	26.0	-2.5	-1.1
대구	68	4.1	55	4.0	66	4.1	52	3.9	-2.9	-5.5
경북	70	4.2	51	3.7	66	4.1	46	3.5	-5.7	-9.8
부산	117	7.0	96	7.0	112	7.0	89	6.7	-4.3	-7.3
경남	86	5.2	63	4.6	79	4.9	57	4.3	-8.1	-9.5
울산	42	2.5	30	2.2	36	2.2	26	2.0	-14.3	-13.3
광주	47	2.8	37	2.7	46	2.9	34	2.6	-2.1	-8.1
전남	66	4.0	52	3.8	65	4.0	51	3.9	-1.5	-1.9
전북	54	3.2	39	2.8	51	3.2	36	2.7	-5.6	-7.7
대전	49	2.9	40	2.9	48	3.0	38	2.9	-2.0	-5.0
세종	10	0.6	8	0.6	9	0.6	8	0.6	-10.0	0.0
충남	67	4.0	55	4.0	64	4.0	52	3.9	-4.5	-5.5
충북	48	2.9	37	2.7	44	2.7	33	2.5	-8.3	-10.8
강원	53	3.2	37	2.7	49	3.0	34	2.6	-7.5	-8.1
제주	18	1.1	10	0.7	17	1.1	9	0.7	-5.6	-10.0
기타	78	4.7	60	4.3	86	5.3	70	5.3	10.3	1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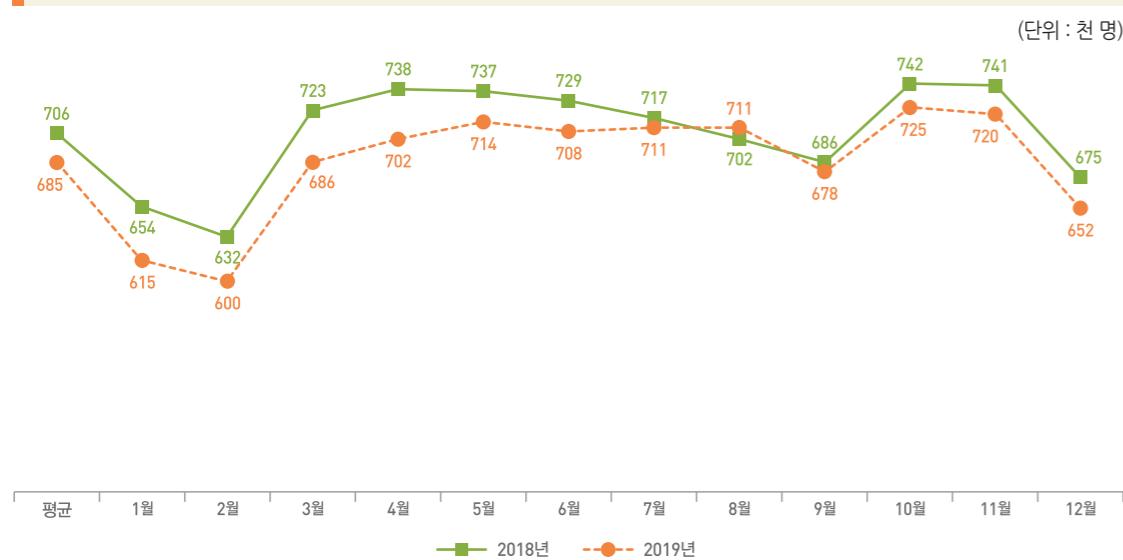
## 6) 월별(실제 근로 발생월 기준)

2019년도 공제부금 적립의 월별 추이(실제 근로 발생월 기준)를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와 적립일수는 월평균 685,380명과 11,022천일이다. 적립근로자의 경우 10월(725,259명), 11월(719,967명), 5월(714,417명) 등의 순으로 많은 반면, 2월(600,469명)과 1월(615,413명)에는 최저 수준에 이른다. 적립일수의 경우 10월(12,147천일), 5월(11,979천일), 11월(11,834천일) 등의 순으로 많은 반면, 2월(8,476천일)과 9월(9,379천일)에는 최저 수준에 이른다.

이것은 옥외에서 생산이 이루어져 기후의 영향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9월의 적립근로자수와 적립일수가 줄어드는 현상은 추석 연휴의 영향일 것으로 짐작된다. 매월 일하는 근로자는 동일인인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2018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와 적립일수 모두 8월에만 증가했고, 그 이외의 달에는 감소했다.

<그림 26> 월별 공제부금 적립근로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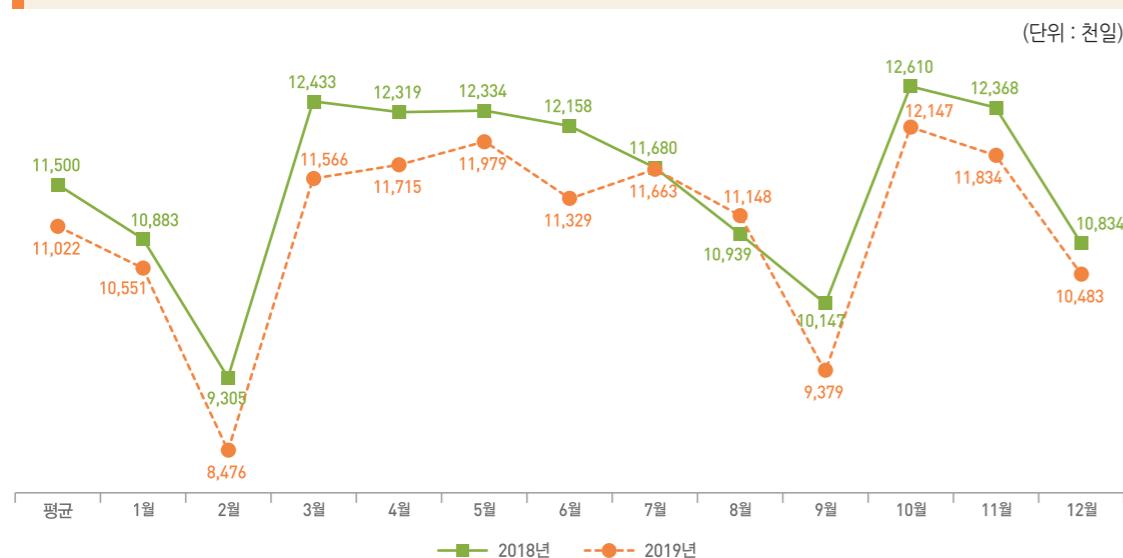
주 : 추출 시점이 달라 연간 적립근로자 합계와 적립일수 합계가 다른 자료와 다를 수 있음.

<표 50> 월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구분	2018		2019		전년 대비 증감률	
	적립근로자 (명)	적립일수 (천일)	적립근로자 (명)	적립일수 (천일)	적립근로자 (%)	적립일수 (%)
평균	706,240	11,500	685,380	11,022	-3.0	-4.2
1월	654,130	10,883	615,413	10,551	-5.9	-3.1
2월	632,274	9,305	600,469	8,476	-5.0	-8.9
3월	723,144	12,433	686,130	11,566	-5.1	-7.0
4월	737,589	12,319	701,993	11,715	-4.8	-4.9
5월	736,882	12,334	714,417	11,979	-3.0	-2.9
6월	728,824	12,158	708,413	11,329	-2.8	-6.8
7월	717,093	11,680	710,872	11,663	-0.9	-0.1
8월	701,628	10,939	711,049	11,148	1.3	1.9
9월	686,217	10,147	678,150	9,379	-1.2	-7.6
10월	741,658	12,610	725,259	12,147	-2.2	-3.7
11월	740,695	12,368	719,967	11,834	-2.8	-4.3
12월	674,746	10,834	652,437	10,483	-3.3	-3.2

주 : 월별 1일 이상 적립일수가 있는 월단위의 집계에 의한 통계와 위에서 기술한 연간 1일 이상 적립일수가 있는 연단위의 근로자 및 적립일수의 집계에 대한 통계는 다를 수 있음.

<그림 27> 월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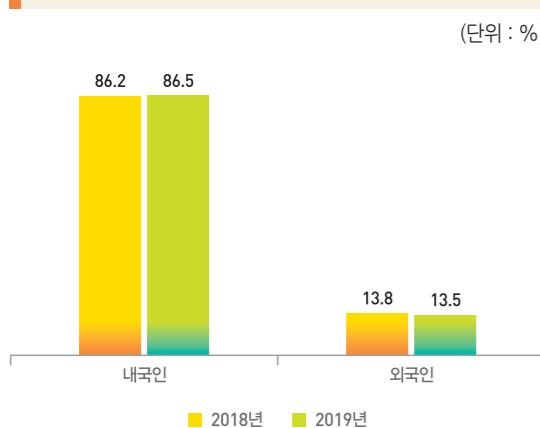
주 : 추출 시점이 달라 연간 적립근로자 합계와 적립일수 합계가 다른 자료와 다를 수 있음.

## 7) 내·외국인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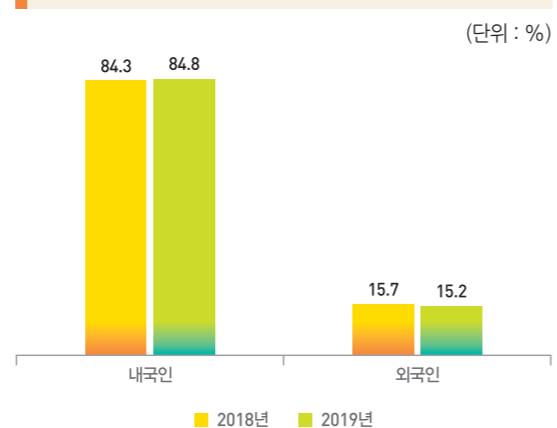
2019년도 공제부금 적립의 내·외국인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의 경우 내국인 86.5% (1,391,585명)과 외국인 13.5%(216,256명) 그리고 적립일수의 경우 내국인 84.8%(112,154,629일)과 외국인 15.2%(20,124,187일)로 나타나, 외국인의 적립일수 비중이 적립근로자수 비중에 비해 더 크다.

2018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수와 적립일수 모두 전년에 비해 감소했는데, 내국인은 각각 3.1%와 3.6%, 외국인은 6.3%와 7.4% 감소해 외국인의 감소 정도가 더 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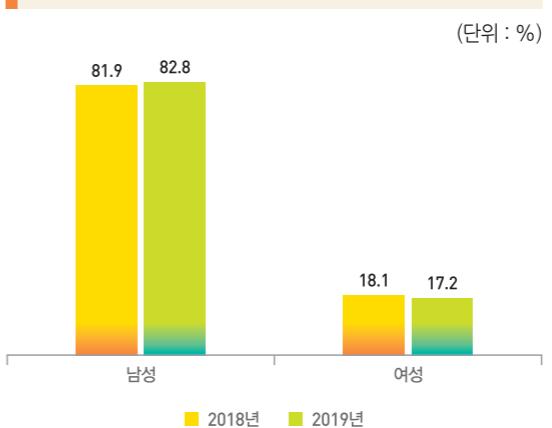
〈그림 28〉 내·외국인별 공제부금 적립근로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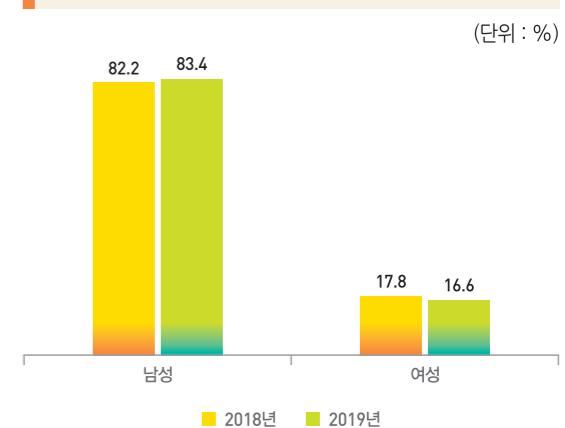
〈그림 29〉 내·외국인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그림 30〉 성별 신규 적립근로자수



〈그림 31〉 성별 신규 적립일수



〈표 51〉 내·외국인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구분		2018		2019		전년대비 증감률(%)
계	적립근로자수(명, %)	1,667,096	100.0	1,607,841	100.0	-3.6
	적립일수(일, %)	138,015,761	100.0	132,278,816	100.0	-4.2
내국인	적립근로자수(명, %)	1,436,227	86.2	1,391,585	86.5	-3.1
	적립일수(일, %)	116,292,427	84.3	112,154,629	84.8	-3.6
외국인	적립근로자수(명, %)	230,869	13.8	216,256	13.5	-6.3
	적립일수(일, %)	21,723,334	15.7	20,124,187	15.2	-7.4

〈표 52〉 신규 가입자의 성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구분		2018		2019		전년대비 증감률(%)
계	적립근로자수(명, %)	364,440	100.0	358,041	100.0	-1.8
	적립일수(일, %)	19,885,247	100.0	19,826,606	100.0	-0.3
남성	적립근로자수(명, %)	298,397	81.9	296,528	82.8	-0.6
	적립일수(일, %)	16,346,692	82.2	16,534,546	83.4	1.1
여성	적립근로자수(명, %)	66,043	18.1	61,513	17.2	-6.9
	적립일수(일, %)	3,538,555	17.8	3,292,060	16.6	-7.0

주 : 신규가입자의 적립근로자수는 건설사업주의 파산으로 인한 적립불가 등의 사유로 Part 4의 연도별 신규 피공제자수와 차이가 있음  
(이하동일)

## 나. 신규 가입 피공제자

2019년의 신규 가입 적립근로자수는 358,041명으로서 2018년의 364,440명에 비해 1.8%가 감소했고, 적립일수는 19,826,606일로 전년도의 19,885,247일 대비 0.3% 감소했다.

### 1)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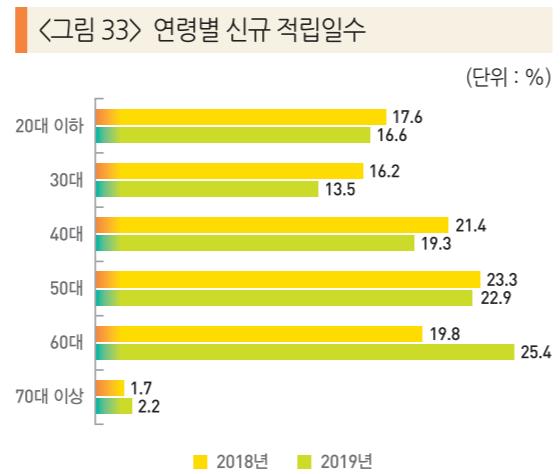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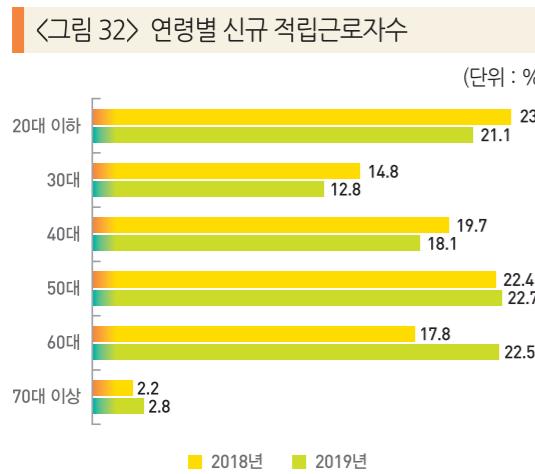
2019년도 신규 가입의 성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수의 경우 남성 82.8%(296,528명), 여성 17.2%(61,513명)로 나타났고, 적립일수의 경우 남성 83.4%(16,534,546일), 여성 16.6%(3,292,060일)로 나타났다.

2018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전체 적립근로자수와 적립일수의 순으로 남성의 경우 0.6% 감소와 1.1% 증가로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 6.9%와 7.0% 감소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여성의 감소가 더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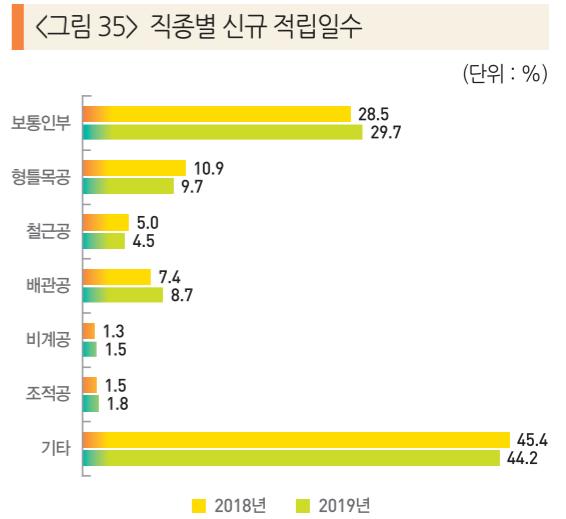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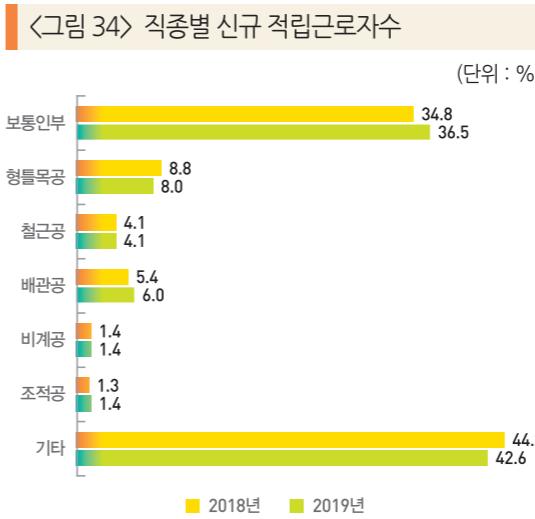
### 2) 연령별

2019년도 신규 가입의 연령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수의 경우 50대 22.7%(81,177명), 60대 22.5%(80,626명), 20대 이하 21.1%(75,457명) 등의 순이고, 적립일수의 경우 60대 25.4%(5,042,703일), 50대 22.9%(4,538,710일), 40대 19.3%(3,834,148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수와 적립일수 모두 70대 이상(29.5%, 30.1%)과 60대(24.5%, 27.9%)의 경우 증가했고, 그 이외의 연령대에서는 모두 감소했다.



2018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와 적립일수 모두 형틀목공(-11.1%, -11.5%)과 철근공(-1.6%, -10.4%)의 경우 감소한 반면 그 이외의 직종에서는 증가했다.



<표 53> 신규 가입자의 연령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구분	2018		2019		전년대비 증감률(%)
	적립근로자수(명, %)	적립일수(일, %)	적립근로자수(명, %)	적립일수(일, %)	
계	364,440	100.0	358,041	100.0	-1.8
	19,885,247	100.0	19,826,606	100.0	-0.3
20대 이하	84,517	23.2	75,457	21.1	-10.7
	3,494,175	17.6	3,290,592	16.6	-5.8
30대	54,018	14.8	45,893	12.8	-15.0
	3,212,505	16.2	2,682,559	13.5	-16.5
40대	71,765	19.7	64,734	18.1	-9.8
	4,257,636	21.4	3,834,148	19.3	-9.9
50대	81,554	22.4	81,177	22.7	-0.5
	4,642,808	23.3	4,538,710	22.9	-2.2
60대	64,748	17.8	80,626	22.5	24.5
	3,941,544	19.8	5,042,703	25.4	27.9
70대 이상	7,838	2.2	10,154	2.8	29.5
	336,579	1.7	437,894	2.2	30.1

<표 54> 신규 가입자의 직종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구분	2018		2019		전년대비 증감률(%)
	적립근로자수(명, %)	적립일수(일, %)	적립근로자수(명, %)	적립일수(일, %)	
계	364,440	100.0	358,041	100.0	-1.8
	19,885,247	100.0	19,826,606	100.0	-0.3
보통인부	126,919	34.8	130,760	36.5	3.0
	5,667,084	28.5	5,898,163	29.7	4.1
형틀목공	32,209	8.8	28,645	8.0	-11.1
	2,169,298	10.9	1,920,838	9.7	-11.5
철근공	14,994	4.1	14,752	4.1	-1.6
	987,615	5.0	884,459	4.5	-10.4
배관공	19,526	5.4	21,320	6.0	9.2
	1,466,229	7.4	1,716,549	8.7	17.1
비계공	4,921	1.4	4,931	1.4	0.2
	264,203	1.3	292,933	1.5	10.9
조적공	4,701	1.3	5,141	1.4	9.4
	306,149	1.5	348,568	1.8	13.9
기타	161,170	44.2	152,492	42.6	-5.4
	9,024,669	45.4	8,765,096	44.2	-2.9

### 3) 직종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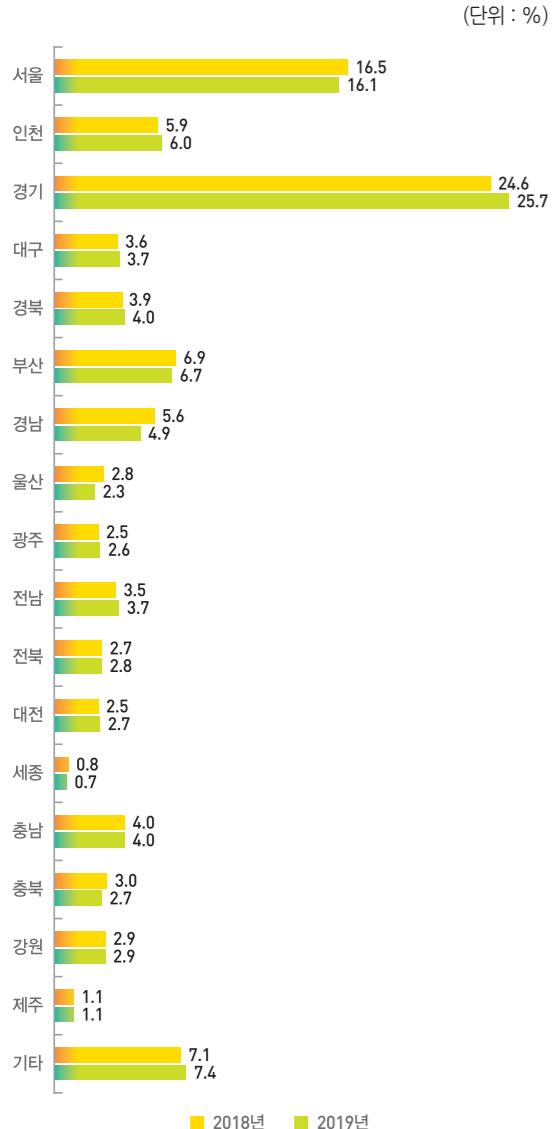
2019년도 신규 가입의 주요 6개 직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의 경우 보통인부 36.5%(130,760명), 형틀목공 8.0%(28,645명), 배관공 6.0%(21,320명) 등의 순이고, 적립일수의 경우 역시 보통인부 29.7%(5,898,163일), 형틀목공 9.7%(1,920,838일), 배관공 8.7%(1,716,549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4) 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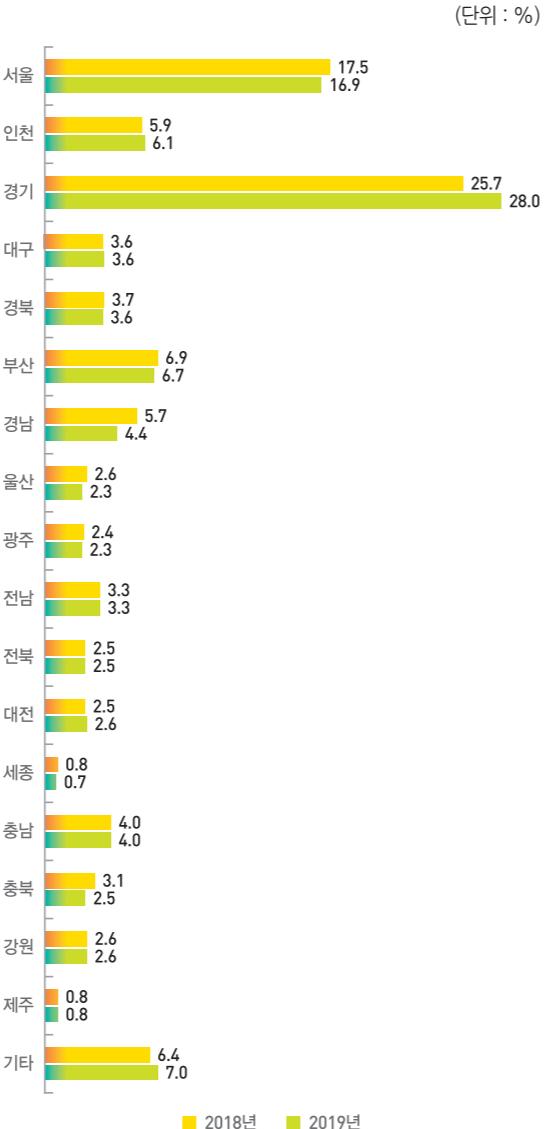
2019년도 신규 가입의 지역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의 경우 경기 25.7%(91,910명), 서울 16.1%(57,515명), 부산 6.7%(23,954명) 등의 순이고, 적립일수의 경우 역시 경기 28.0%(555만 일), 서울 16.9%(336만 일), 부산 6.7%(133만 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와 적립일수 모두 대전(5.3%, 4.1%), 대구(3.4%, 1.4%), 전남(3.1%, 0.0%) 등의 순으로 증가가 컼던 반면, 울산(-19.7%, -13.5%), 경남(-14.7%, -22.1%), 충북(-13.4%, -19.4%) 등의 순으로 감소가 컼다.

<그림 36> 지역별 신규 적립근로자수



<그림 37> 지역별 신규 적립일수



<표 55> 신규 가입자의 지역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구분	2018		2019		전년 대비 증감률	
	적립근로자수 (명, %)	적립일수 (만일, %)	적립근로자수 (명, %)	적립일수 (만일, %)	적립 근로자수 (%)	적립일수 (%)
계	364,440	100.0	358,041	100.0	-1.8	-0.3
서울	60,252	16.5	57,515	16.1	-4.5	-3.4
인천	21,552	5.9	21,638	6.0	0.4	3.4
경기	89,576	24.6	91,910	25.7	2.6	8.6
대구	12,955	3.6	13,396	3.7	3.4	1.4
경북	14,058	3.9	14,400	4.0	2.4	-2.7
부산	24,989	6.9	23,954	6.7	-4.1	-2.9
경남	20,515	5.6	17,495	4.9	-14.7	-22.1
울산	10,307	2.8	8,275	2.3	-19.7	-13.5
광주	9,291	2.5	9,291	2.6	0.0	-4.3
전남	12,866	3.5	13,269	3.7	3.1	0.0
전북	9,803	2.7	9,862	2.8	0.6	-2.0
대전	9,034	2.5	9,509	2.7	5.3	4.1
세종	2,871	0.8	2,638	0.7	-8.1	-12.5
충남	14,575	4.0	14,335	4.0	-1.6	0.0
충북	11,082	3.0	9,597	2.7	-13.4	-19.4
강원	10,742	2.9	10,295	2.9	-4.2	-1.9
제주	3,964	1.1	4,014	1.1	1.3	0.0
기타	26,008	7.1	26,648	7.4	2.5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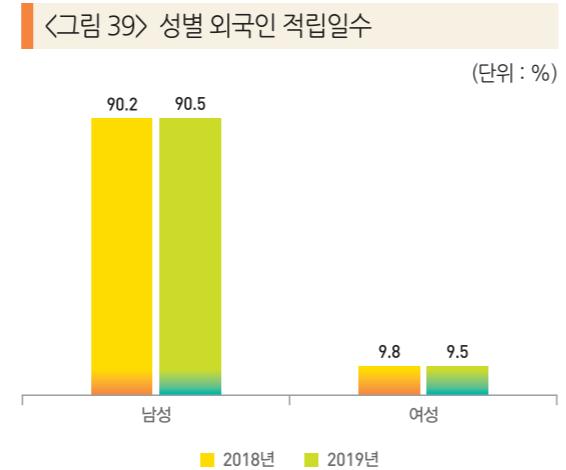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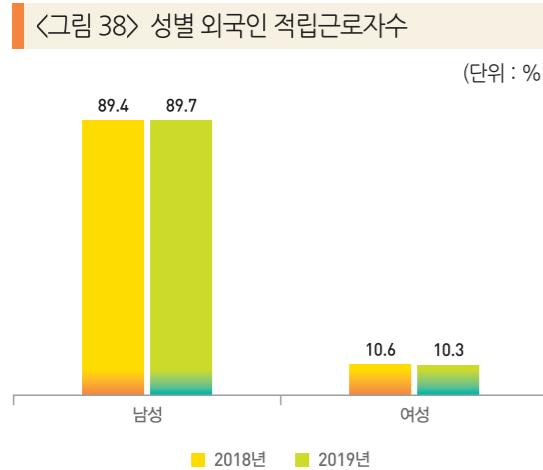
#### 다. 외국인 피공제자

2019년의 외국인 적립근로자수는 216,256명으로서 2018년의 230,869명에 비해 6.3%가 감소했고, 적립일수는 20,124,187일로 전년도의 21,723,334일 대비 7.4% 감소했다.

##### 1) 성별

2019년도 외국인의 성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수의 경우 남성 89.7%(193,894명), 여성 10.3%(22,362명)로 나타났고, 적립일수의 경우 남성 90.5%(18,204,536일), 여성 9.5%(1,919,651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적립근로자수의 비중에 비해 적립일수의 비중이 미미하나마 더 크다.

2018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수와 적립일수 모두 남성(-6.1%, -7.1%)보다 여성(-8.7%, -9.4%)의 감소가 더 컸다.



**<표 56> 외국인 근로자의 성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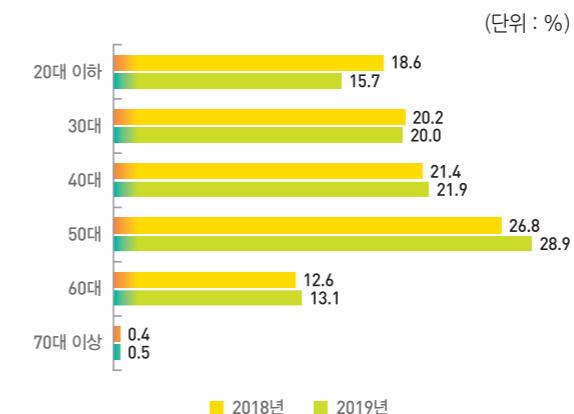
구분		2018		2019		전년대비 증감률(%)
계	적립근로자수(명, %)	230,869	100	216,256	100	-6.3
	적립일수(일, %)	21,723,334	100	20,124,187	100	-7.4
남성	적립근로자수(명, %)	206,386	89.4	193,894	89.7	-6.1
	적립일수(일, %)	19,603,617	90.2	18,204,536	90.5	-7.1
여성	적립근로자수(명, %)	24,483	10.6	22,362	10.3	-8.7
	적립일수(일, %)	2,119,717	9.8	1,919,651	9.5	-9.4

## 2)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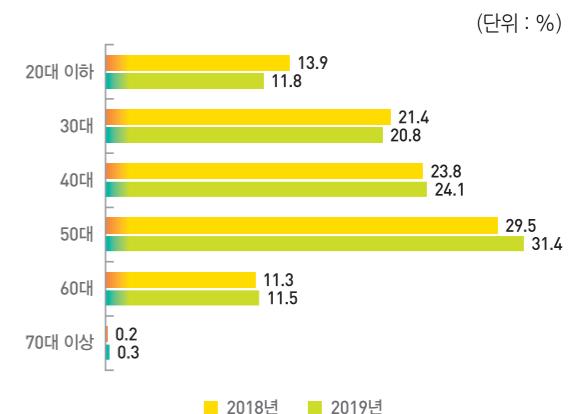
2019년도 외국인의 연령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수의 경우 50대 28.9%(62,410명), 40대 21.9%(47,357명), 30대 20.0%(43,166명) 등의 순이고, 적립일수의 경우에도 역시 50대 31.4%(6,321,177일), 40대 24.1%(4,858,086일), 30대 20.8%(4,190,895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3순위에 60대가 아닌 30대가 위치한다는 점이 내국인과 다른 점이다.

2018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수의 경우 70대 이상과 50대에서 증가하고 그 이외에서는 모두 감소했는데 상대적으로 20대 이하에서 크게 감소했으며, 적립일수의 경우 70대 이상에서 증가하고 그 이외에서는 모두 감소했는데 상대적으로 20대 이하에서 크게 감소했다.

**<그림 40> 연령별 외국인 적립근로자수**



**<그림 41> 연령별 외국인 적립일수**



**<표 57> 외국인 근로자의 연령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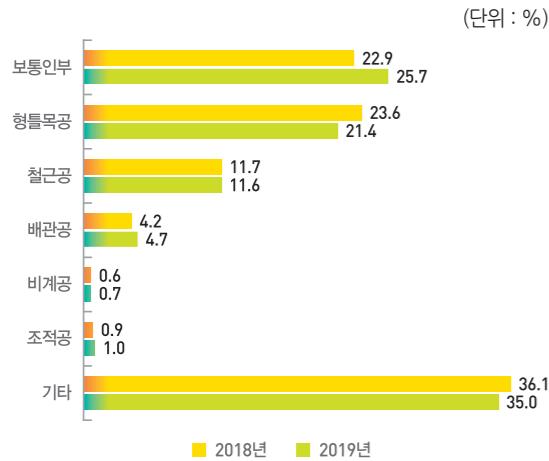
구분	2018		2019		전년대비 증감률(%)
	적립근로자수(명, %)	적립일수(일, %)	적립근로자수(명, %)	적립일수(일, %)	
계	230,869	100.0	216,256	100.0	-6.3
	21,723,334	100.0	20,124,187	100.0	-7.4
20대 이하	42,995	18.6	34,040	15.7	-20.8
	3,014,553	13.9	2,368,510	11.8	-21.4
30대	46,657	20.2	43,166	20.0	-7.5
	4,639,694	21.4	4,190,895	20.8	-9.7
40대	49,461	21.4	47,357	21.9	-4.3
	5,164,539	23.8	4,858,086	24.1	-5.9
50대	61,899	26.8	62,410	28.9	0.8
	6,402,184	29.5	6,321,177	31.4	-1.3
60대	28,980	12.6	28,254	13.1	-2.5
	2,449,454	11.3	2,324,094	11.5	-5.1
70대 이상	877	0.4	1,029	0.5	17.3
	52,910	0.2	61,425	0.3	16.1

## 3) 직종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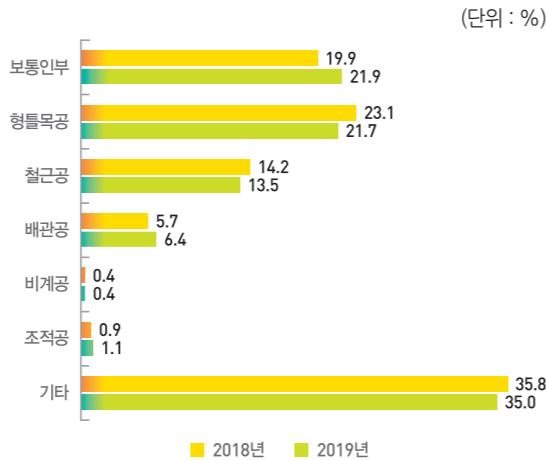
2019년도 외국인의 주요 6개 직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의 경우 보통인부 25.7%(55,632명), 형틀목공 21.4%(46,209명), 철근공 11.6%(24,987명) 등의 순이고, 적립일수의 경우 보통인부 21.9%(4,414,033일), 형틀목공 21.7%(4,365,198일), 철근공 13.5%(2,707,982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와 적립일수 모두 형틀목공(-15.0%, -13.0%)과 철근공(-7.7%, -12.5%)의 경우 감소한 반면 여타 직종에서는 증가했다.

<그림 42> 직종별 외국인 적립근로자수



<그림 43> 직종별 외국인 적립일수



<표 58> 외국인 근로자의 직종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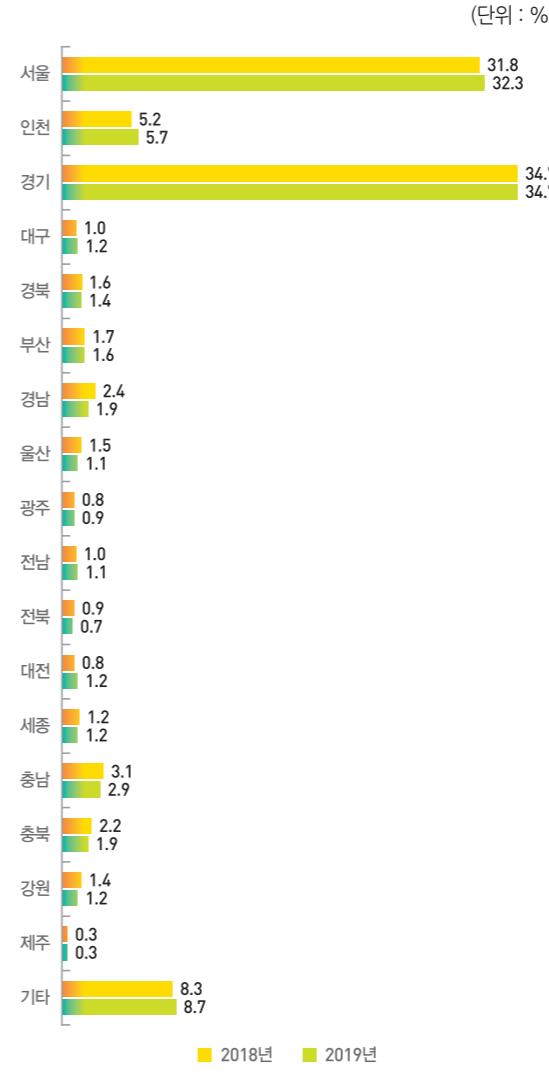
구분	2018		2019		전년대비 증감률(%)
	적립근로자수(명, %)	적립일수(일, %)	적립근로자수(명, %)	적립일수(일, %)	
계	230,869	100.0	216,256	100.0	-6.3
	21,723,334	100.0	20,124,187	100.0	-7.4
보통인부	52,809	22.9	55,632	25.7	5.3
	4,321,809	19.9	4,414,033	21.9	2.1
형틀목공	54,394	23.6	46,209	21.4	-15.0
	5,018,627	23.1	4,365,198	21.7	-13.0
철근공	27,082	11.7	24,987	11.6	-7.7
	3,093,231	14.2	2,707,982	13.5	-12.5
배관공	9,747	4.2	10,124	4.7	3.9
	1,230,967	5.7	1,281,480	6.4	4.1
비계공	1,421	0.6	1,461	0.7	2.8
	87,614	0.4	83,070	0.4	-5.2
조적공	2,066	0.9	2,121	1.0	2.7
	203,509	0.9	230,074	1.1	13.1
기타	83,350	36.1	75,722	35.0	-9.2
	7,767,577	35.8	7,042,350	35.0	-9.3

#### 4) 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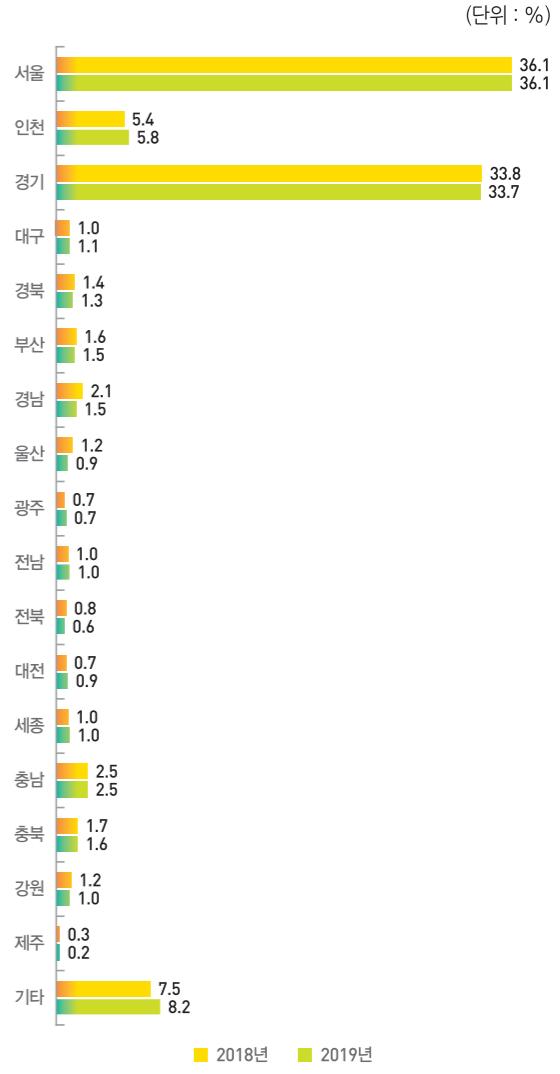
2019년도 외국인의 지역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의 경우 경기 34.7%(75,050명), 서울 32.3%(69,768명), 인천 5.7%(12,339명), 충남 2.9%(6,29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적립일수의 경우 서울 36.1%(727만일), 경기 33.7%(679만일), 인천 5.8%(117만일), 충남 2.5%(50만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적립근로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대전(37.7%), 대구(4.1%), 광주(4.1%), 전남(3.6%) 등의 증가가 컼던 것에 비해 울산(-29.5%), 경남(-27.4%), 전북(-22.1%) 등의 감소가 컼고, 적립일수의 경우 대전(18.8%)의 경우 증가했으나 그 외 지역에서는 대부분 감소했는데 상대적으로 울산(-33.3%), 경남(-31.1%), 전북(-27.8%) 등의 감소가 컸다.

<그림 44> 지역별 외국인 적립근로자수



<그림 45> 지역별 외국인 적립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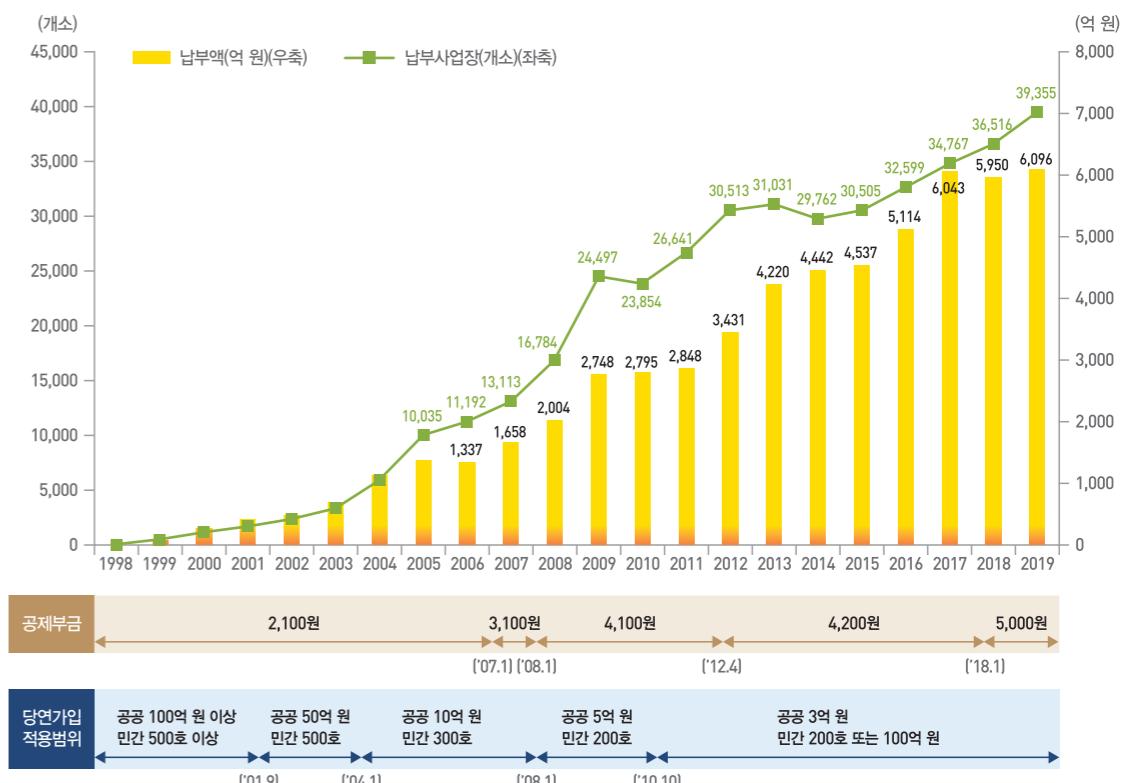


&lt;표 59&gt; 외국인 근로자의 지역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구분	2018		2019		전년 대비 증감률	
	적립근로자수 (명, %)	적립일수 (만일, %)	적립근로자수 (명, %)	적립일수 (만일, %)	적립 근로자수 (%)	적립일수 (%)
계	230,869	100.0	2,172	100.1	216,256	100.0
서울	73,460	31.8	785	36.1	69,768	32.3
인천	12,018	5.2	118	5.4	12,339	5.7
경기	80,149	34.7	735	33.8	75,050	34.7
대구	2,395	1.0	22	1.0	2,492	1.2
경북	3,611	1.6	30	1.4	3,109	1.4
부산	3,939	1.7	34	1.6	3,536	1.6
경남	5,586	2.4	45	2.1	4,057	1.9
울산	3,370	1.5	27	1.2	2,375	1.1
광주	1,962	0.8	15	0.7	2,042	0.9
전남	2,282	1.0	21	1.0	2,364	1.1
전북	2,003	0.9	18	0.8	1,561	0.7
대전	1,890	0.8	16	0.7	2,603	1.2
세종	2,873	1.2	21	1.0	2,555	1.2
충남	7,099	3.1	55	2.5	6,295	2.9
충북	4,981	2.2	37	1.7	4,116	1.9
강원	3,301	1.4	26	1.2	2,574	1.2
제주	704	0.3	6	0.3	637	0.3
기타	19,246	8.3	163	7.5	18,783	8.7

1998년부터 2019년까지의 공제부금 납부사업장 및 납부액 누계는 각각 405,830개소와 5조 7,611억 원이고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은 1,420만원이다.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은 1998년의 309만원에서 시작해 2000년에는 2,475만원까지 상승했으나, 그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소규모 현장으로까지 당연가입 적용범위의 확대와 경기부진의 여파 등이 겹치면서 2011년에는 1,069만원까지 감소했고, 다시 제도의 정착과 공제부금 일액의 인상으로 증가해 2019년에는 1,549만원에 이르렀다.

&lt;그림 46&gt; 연도별 공제부금 납부사업장 및 납부액 추이(1998~2019)



자료 :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DB

### 3. 공제부금 납부

1998년부터 2019년까지의 연도별 공제부금 납부사업장 및 납부액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흐름 중 납부사업장 수와 납부액 규모가 이전 흐름에 비해 크게 비약하는 시점이 2009년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당연가입 대상 공사의 적용범위 확대와 공제부금의 인상 효과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2008년에 16,784개소이던 사업장 수가 2009년에는 24,497개소로 전년 대비 46.0%가 증가했고, 동 시기에 납부액은 2,004억 원에서 2,748억 원으로 37.1%가 급증했다. 2013년 이후에는 대체로 건설기성의 증가에 따라 납부사업장과 납부액이 동반 증가했는데 다만, 2014년의 경우 사업장 수는 줄었는데 납부액은 늘었고, 2018년에는 사업장 수는 늘었으나 납부액은 감소했다.

&lt;표 60&gt; 연도별 퇴직공제부금 납부사업장 및 납부액 추이(1998~2019)

연도	납부사업장 (개소)(A)	납부액 (억 원)(B)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 (백만원) (B/A)
총합계	405,830	57,611	14.20
1998	32	1	3.09
1999	443	72	16.28
2000	1,074	266	24.75

연도	납부사업장 (개소)(A)	납부액 (억원)(B)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백만원) (B/A)
2001	1,661	409	24.61
2002	2,352	470	19.98
2003	3,296	694	21.05
2004	5,808	1,115	19.20
2005	10,035	1,362	13.57
2006	11,192	1,337	11.95
2007	13,113	1,658	12.64
2008	16,784	2,004	11.94
2009	24,497	2,748	11.22
2010	23,854	2,795	11.72
2011	26,641	2,848	10.69
2012	30,513	3,431	11.24
2013	31,031	4,220	13.60
2014	29,762	4,442	14.93
2015	30,505	4,537	14.87
2016	32,599	5,114	15.69
2017	34,767	6,043	17.38
2018	36,516	5,950	16.29
2019	39,355	6,096	15.49

## 가. 기본 특성별 분포

2019년의 퇴직공제부금 납부사업장은 39,355개소로서 2018년의 36,516개소에 비해 7.8%가 증가했고, 납부액은 6,096억 원으로 전년도의 5,950억 원 대비 2.5% 증가했으며,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은 15.5억 원으로 전년도의 16.3억 원 대비 4.9% 감소했다.

### 1) 공사유형별(공공여부)

2019년도 퇴직공제부금 납부의 공사유형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납부사업장의 경우 공공공사 89.4%(35,187개소), 민간공사 10.6%(4,168개소)로 나타났고, 납부액의 경우 공공공사 62.3%(3,796억 원), 민간공사 37.7%(2,300억 원)로 나타났다.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은 공공공사의 경우 1,080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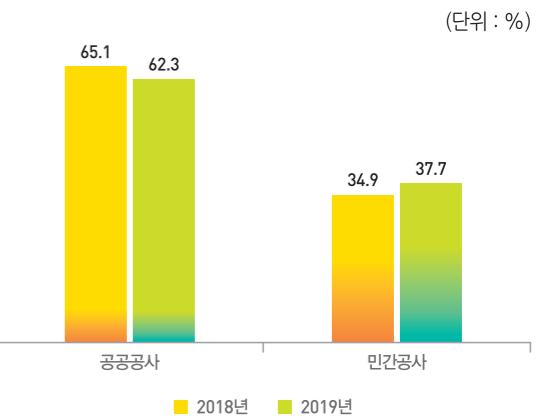
원인데 비해, 민간공사의 경우 5,520만 원으로 후자가 5배 이상 많았다. 이것은 양자의 당연가입 적용 범위 공사의 규모 차이 때문인데, 공공공사의 경우 그 규모가 3억 원 이상으로 민간공사 100억 원 이상에 비해 소규모 현장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2018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납부사업장과 납부액 순으로 살펴보면, 공공공사의 경우 각각 8.8% 증가와 2.0% 감소 그리고 민간공사의 경우 0.2% 감소와 10.7% 증가로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은 공공공사의 경우 9.9% 감소한 반면, 민간공사의 경우 11.0% 증가했다.

〈그림 47〉 공사유형별 공제부금 납부사업장



〈그림 48〉 공사유형별 공제부금 납부액



주 : 추출기준의 변경으로 2018년 전·후를 시계열로서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움.

〈표 61〉 공사유형별 퇴직공제부금 납부 현황

구분	2018		2019		전년대비 증감률(%)
	납부사업장(개소, %)	납부액(억 원, %)	납부사업장(개소, %)	납부액(억 원, %)	
공공공사	36,516	100.0	39,355	100.0	7.8
	5,950	100.0	6,096	100.0	2.5
	16.3		15.5		-4.9
민간공사	32,339	88.6	35,187	89.4	8.8
	3,873	65.1	3,796	62.3	-2.0
	12.0		10.8		-9.9
전체	4,177	11.4	4,168	10.6	-0.2
	2,077	34.9	2,300	37.7	10.7
	49.7		55.2		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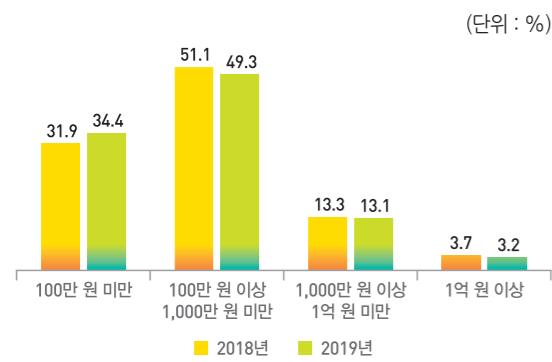
주 : 추출기준의 변경으로 2018년 전·후를 시계열로서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움.

## 2) 납부액 규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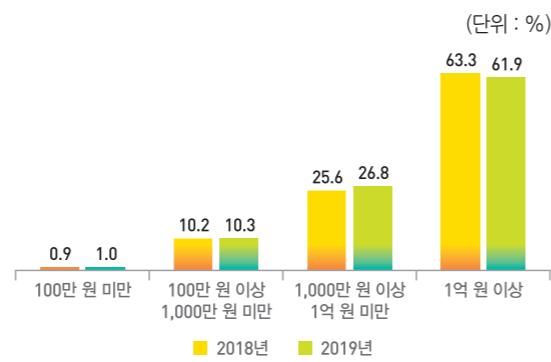
2019년도 퇴직공제부금의 납부액 규모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납부사업장의 경우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49.3%(19,411개소), 100만 원 미만 34.4%(13,549개소),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3.1%(5,150개소)로 나타났고, 납부액의 경우 1억 원 이상 61.9%(3,771억 원),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26.8%(1,636억 원),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10.3%(628억 원)로 나타났다.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은 1억 원 이상 3억 290만 원, 1,000만 원 이상 3,180만 원,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320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납부사업장의 경우 1억 원 이상(-9.1%)에서는 감소했으나 그 이외 모든 사업장에서는 증가했고, 납부액의 경우에는 모두 증가했다.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의 경우 1,000만 원 이상(1.0%, 10.1%)에서는 증가했고, 1,000만 원 미만(-1.4%, -0.5%)에서는 감소했다.

<그림 49> 납부액규모별 공제부금 납부사업장



<그림 50> 납부액규모별 공제부금 납부액



<표 62> 납부액 규모별 공제부금 납부현황

구분	2018		2019		전년대비 증감률(%)
	납부사업장(개소, %)	납부액(억 원, %)	납부사업장(개소, %)	납부액(억 원, %)	
계	납부사업장(개소, %)	36,516 100.0	39,355 100.0	7.8	
	납부액(억 원, %)	5,950 100.0	6,096 100.0	2.5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백만 원)	16.3	15.5	-4.9	
100만 원 미만	납부사업장(개소, %)	11,636 31.9	13,549 34.4	16.4	
	납부액(억 원, %)	54 0.9	62 1.0	14.8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백만 원)	0.5	0.5	-1.4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납부사업장(개소, %)	18,671 51.1	19,411 49.3	4.0	
	납부액(억 원, %)	607 10.2	628 10.3	3.5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백만 원)	3.3	3.2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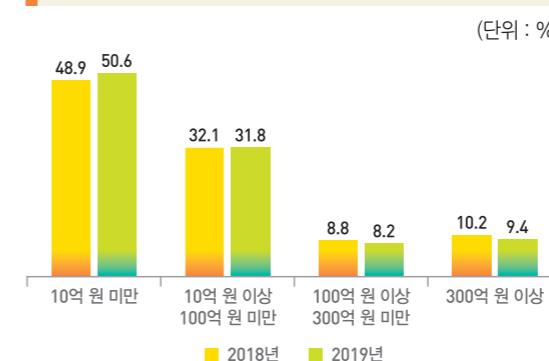
구분	2018		2019		전년대비 증감률(%)
	납부사업장(개소, %)	납부액(억 원, %)	납부사업장(개소, %)	납부액(억 원, %)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납부사업장(개소, %)	4,840 13.3	5,150 13.1	6.4	
	납부액(억 원, %)	1,522 25.6	1,636 26.8	7.5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백만 원)	31.4	31.8	1.0	
1억 원 이상	납부사업장(개소, %)	1,369 3.7	1,245 3.2	-9.1	
	납부액(억 원, %)	3,767 63.3	3,771 61.9	0.1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백만 원)	275.2	302.9	10.1	

## 3) 공사규모별

2019년도 퇴직공제부금 납부의 공사규모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납부사업장의 경우 10억 원 미만 50.6%(19,927개소), 1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31.8%(12,521개소), 300억 원 이상 9.4%(3,683개소)로 나타났고, 납부액의 경우 300억 원 이상 68.8%(4,197억 원), 1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15.0%(912억 원),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11.5%(704억 원)로 나타났다. 대체로 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경우 개수는 많으나 납부액은 적다. 이것은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에 명확히 드러나는데 300억 원 이상 1억 1,140만 원,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2,180만 원, 1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730만 원 등으로 나타나 격차가 커졌다.

2018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납부사업장의 경우 100억 원 미만(11.7%, 6.9%)에서는 증가한 것에 반해, 100억 원 이상(-0.2%, -1.3%)에서는 감소했고, 납부액의 경우 1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0.8%)에서만 감소한 것에 비해 다른 규모에서는 모두 증가했다.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의 경우 100억 원 미만(-2.9%, -7.2%)에서는 감소한 것에 반해, 100억 원 이상(8.8%, 3.2%)에서는 증가했다.

<그림 51> 공사규모별 공제부금 납부사업장



<그림 52> 공사규모별 공제부금 납부액



&lt;표 63&gt; 공사규모별 공제부금 납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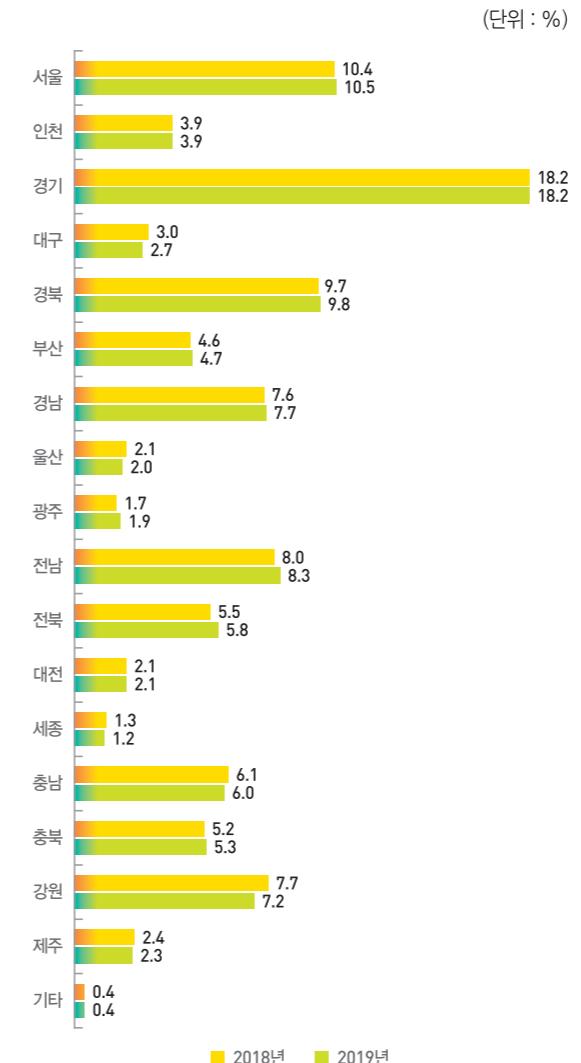
구분		2018		2019		전년대비 증감률(%)
계	납부사업장(개소, %)	36,516	100.0	39,355	100.0	7.8
	납부액(억 원, %)	5,950	100.0	6,096	100.0	2.5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백만 원)		16.3		15.5	-4.9
10억 원 미만	납부사업장(개소, %)	17,844	48.9	19,927	50.6	11.7
	납부액(억 원, %)	260	4.4	282	4.6	8.5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백만 원)		1.5		1.4	-2.9
1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납부사업장(개소, %)	11,713	32.1	12,521	31.8	6.9
	납부액(억 원, %)	919	15.4	912	15.0	-0.8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백만 원)		7.8		7.3	-7.2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납부사업장(개소, %)	3,229	8.8	3,224	8.2	-0.2
	납부액(억 원, %)	648	10.9	704	11.5	8.6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백만 원)		20.1		21.8	8.8
300억 원 이상	납부사업장(개소, %)	3,730	10.2	3,683	9.4	-1.3
	납부액(억 원, %)	4,122	69.3	4,197	68.8	1.8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백만 원)		110.5		114.0	3.1

#### 4) 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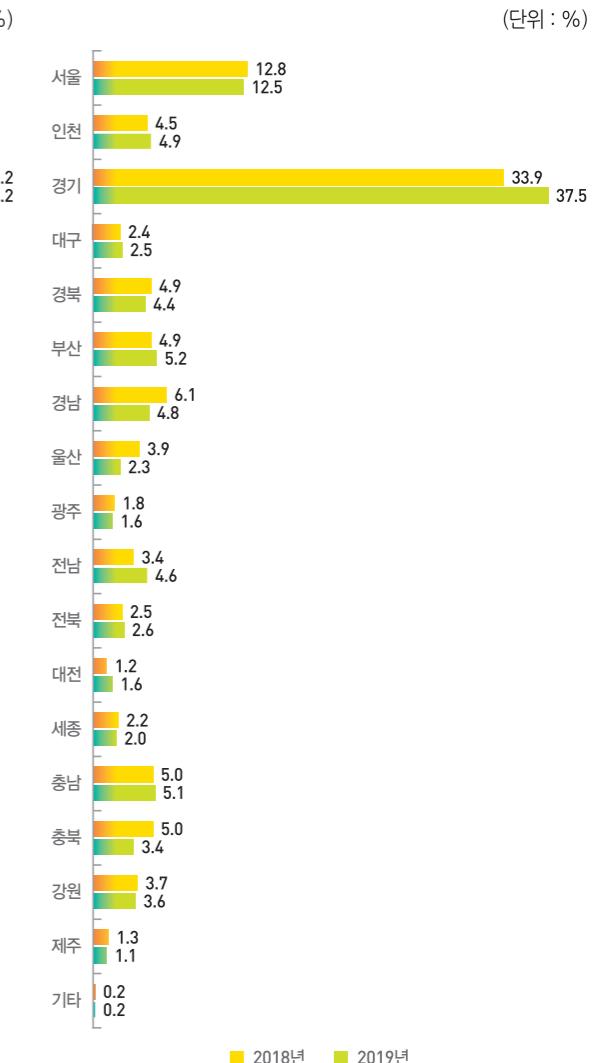
2019년도 퇴직공제부금 납부의 지역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납부사업장의 경우 경기 18.2%(7,168 개소), 서울 10.5%(4,127개소), 경북 9.8%(3,871개소)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납부액의 경우 경기 37.5%(2,290억 원), 서울 12.5%(760억 원), 부산 5.2%(320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의 순위는 달라지는데, 경기 3,190만 원, 세종 2,560만 원, 인천 1,940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납부사업장의 경우 대구(-2.0%), 세종(-0.8%), 강원(-0.1%) 등에서 감소한 데 비해 그 외의 지역에서는 증가했고, 납부액의 경우 울산(-39.1%), 충북(-30.0%), 경남(-19.4%) 등의 순으로 감소가 컼던 데 비해 대전(42.9%), 전남(40.0%), 경기(13.4%) 등의 순으로 증가가 컸다.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의 경우 대전(28.2%)과 전남(25.8%)의 증가가 컸다.

&lt;그림 53&gt; 지역별 공제부금 납부사업장



&lt;그림 54&gt; 지역별 공제부금 납부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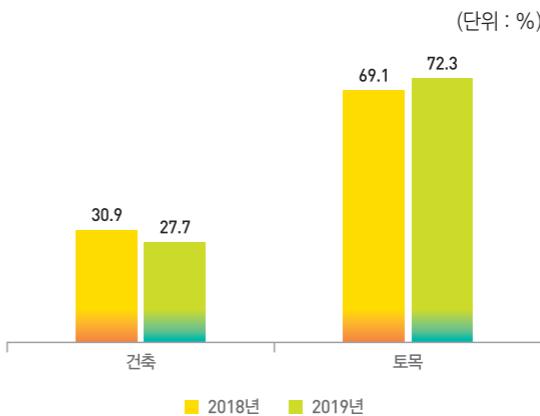
구분	2018			2019			전년 대비 증감률						
	납부사업장 (개소, %)	납부액 (십억원, %)	평균 납부액 (백만원)	납부사업장 (개소, %)	납부액 (십억원, %)	평균 납부액 (백만원)	납부 사업장 (%)	납부액 (%)	평균 납부액 (%)				
대구	1,098	3.0	14	2.4	12.8	1,076	2.7	15	2.5	13.9	-2.0	7.1	9.3
경북	3,556	9.7	29	4.9	8.2	3,871	9.8	27	4.4	7.0	8.9	-6.9	-14.5
부산	1,692	4.6	29	4.9	17.1	1,864	4.7	32	5.2	17.2	10.2	10.3	0.2
경남	2,768	7.6	36	6.1	13.0	3,014	7.7	29	4.8	9.6	8.9	-19.4	-26.0
울산	765	2.1	23	3.9	30.1	768	2.0	14	2.3	18.2	0.4	-39.1	-39.4
광주	624	1.7	11	1.8	17.6	732	1.9	10	1.6	13.7	17.3	-9.1	-22.5
전남	2,923	8.0	20	3.4	6.8	3,252	8.3	28	4.6	8.6	11.3	40.0	25.8
전북	1,994	5.5	15	2.5	7.5	2,278	5.8	16	2.6	7.0	14.2	6.7	-6.6
대전	751	2.1	7	1.2	9.3	837	2.1	10	1.6	11.9	11.5	42.9	28.2
세종	473	1.3	13	2.2	27.5	469	1.2	12	2.0	25.6	-0.8	-7.7	-6.9
충남	2,242	6.1	30	5.0	13.4	2,370	6.0	31	5.1	13.1	5.7	3.3	-2.2
충북	1,901	5.2	30	5.0	15.8	2,079	5.3	21	3.4	10.1	9.4	-30.0	-36.0
강원	2,827	7.7	22	3.7	7.8	2,825	7.2	22	3.6	7.8	-0.1	0.0	0.1
제주	872	2.4	8	1.3	9.2	903	2.3	7	1.1	7.8	3.6	-12.5	-15.5
기타	144	0.4	1	0.2	6.9	173	0.4	1	0.2	5.8	20.1	0.0	-16.8

## 5) 공사종류별

2019년도 퇴직공제부금 납부의 공사종류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납부사업장의 경우 토목 72.3%(28,438개소), 건축 27.7%(10,917개소)로 나타났고, 납부액의 경우 건축 75.5%(4,602억 원), 토목 24.5%(1,495억 원)로 나타났다.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의 경우, 건축 4,220만 원, 토목 530만 원으로 나타나 격차가 컸다. 이것은 양자 간의 퇴직공제제도 적용범위가 다른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건축공사의 경우 당연가입 적용범위가 100억 원 이상인 민간공사가 많고, 토목공사의 경우 대개 적용범위가 3억 원 이상인 공공공사이기 때문이다.

2018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납부사업장의 경우 건축(-3.3%)에서는 감소했고 토목(12.8%)에서는 증가했으며, 납부액의 경우 건축(1.7%)과 토목(5.1%)에서 모두 증가했다.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의 경우 건축(5.2%)에서 증가했고 토목(-6.8%)에서는 감소했다.

<그림 55> 공사종류별 공제부금 납부사업장



<그림 56> 공사종류별 공제부금 납부액



<표 65> 공사종류별 공제부금 납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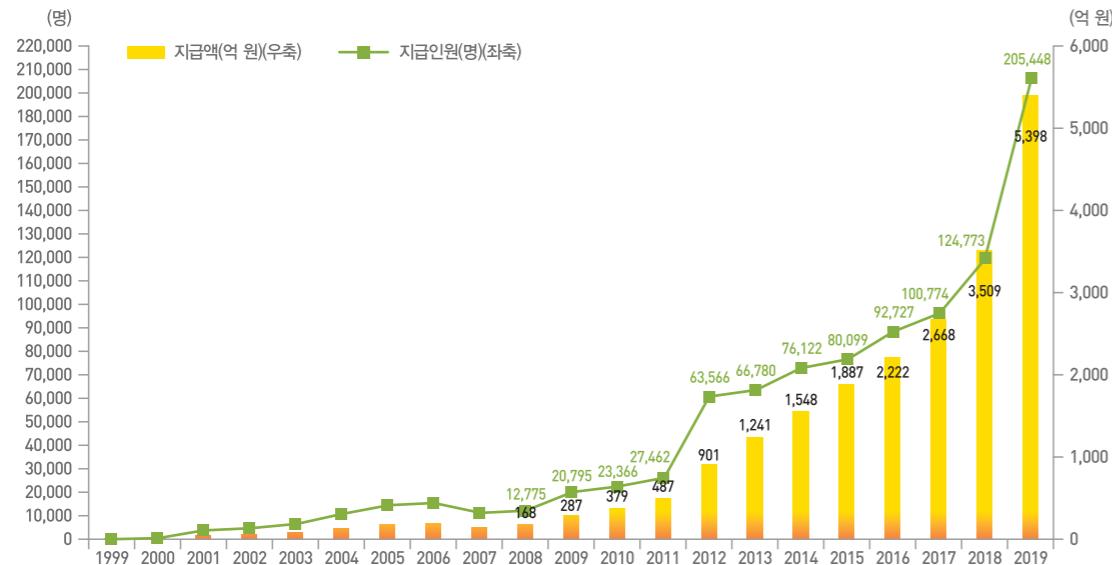
구분	2018	2019	전년대비 증감률(%)	
			납부사업장(개소, %)	납부액(억 원, %)
계	납부사업장(개소, %)	36,516	100.0	39,355
	납부액(억 원, %)	5,950	100.0	6,097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백만 원)	16.3		15.5
건축	납부사업장(개소, %)	11,295	30.9	10,917
	납부액(억 원, %)	4,527	76.1	4,602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백만 원)	40.1		42.2
토목	납부사업장(개소, %)	25,221	69.1	28,438
	납부액(억 원, %)	1,423	23.9	1,495
	사업장당 평균 납부액(백만 원)	5.6		5.3

## 4. 퇴직공제 지급

1999년부터 2019년까지의 연도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및 지급액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흐름 중 지급인원 수와 지급액 규모가 이전 흐름에 비해 크게 비약하는 시점이 2012년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당연가입 대상 공사의 적용범위 확대로 근로내역 신고일수의 적립이 촉진된 것과 건설기능인력의 고령화 심화 등의 효과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2011년에 27,462명이던 지급인원 수가 2012년에는 63,566명으로 전년 대비 131.5%가 증가했고, 동 시기에 지급액은 487억 원에서 901억 원으로 84.9%가 급증했다. 2013년 이후에는 양자 모두 가파르게 증가했는데 2019년에는 각각 205,448명과 5,398억 원에 달했다.

1999년부터 2019년까지의 공제금 지급인원 및 지급액 누계는 각각 965,277명과 2조 1,485억 원이고 퇴직자 1인당 평균 지급액은 2,226천 원이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1999년의 667천 원으로 시작해 2002년에는 1,044천 원으로 100만 원을 넘어섰고 2014년에는 2,034천 원으로 200만 원을 돌파했으며, 2019년에는 2,627천 원으로 상승했다.

<그림 57> 연도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및 지급액 추이(1999~2019)



자료 :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DB

구분	지급인원(명)	지급액(백만 원)	평균 지급액(천 원)
2004	11,430	12,782	1,118
2005	15,091	17,073	1,131
2006	15,966	18,088	1,133
2007	11,949	14,322	1,199
2008	12,775	16,811	1,316
2009	20,795	28,714	1,381
2010	23,366	37,852	1,620
2011	27,462	48,722	1,774
2012	63,566	90,087	1,417
2013	66,780	124,143	1,859
2014	76,122	154,804	2,034
2015	80,099	188,742	2,356
2016	92,727	222,168	2,396
2017	100,774	266,779	2,647
2018	124,773	350,944	2,813
2019	205,448	539,766	2,627

## 가. 특성별 분포

2019년의 퇴직공제금 지급인원은 205,448명으로서 2018년의 124,773명에 비해 64.7%가 증가했고, 지급액은 539,766백만 원으로 전년도의 350,944백만 원 대비 53.8% 증가해 양자 모두 증가폭이 컸으며, 상대적으로 지급액이 작은 여성의 증가가 더 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2,627천 원으로 전년도의 2,813천 원 대비 6.6% 감소했다.

### 1) 성별

2019년도 퇴직공제금 지급의 성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지급인원의 경우 남성 88.4%(181,658명), 여성 11.6%(23,790명)로 나타났고, 지급액의 경우 남성 90.4%(488,189백만 원), 여성 9.6%(51,576백만 원)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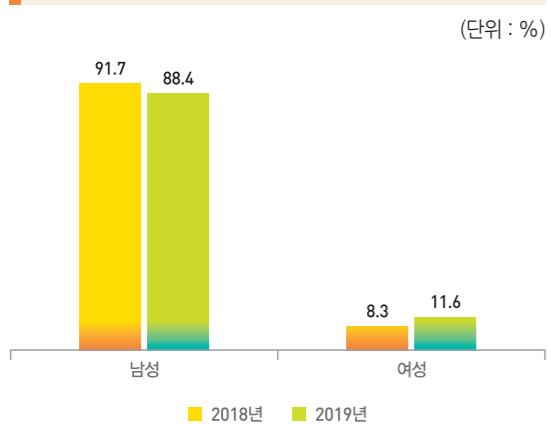
대체로 매년 남성이 차지하는 지급인원의 비중에 비해 지급액의 비중이 더 큰데, 이것은 남성의 1인당 평균 지급액이 2,687천 원으로서 여성의 2,168천 원에 비해 519천 원 더 많은 데 기인한다.

2018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지급인원과 지급액 모두 여성(129.3%, 103.3%)의 증가가 남성(58.8%, 49.9%)보다 컸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의 감소폭은 여성(-11.4%)이 남성(-5.6%)보다 더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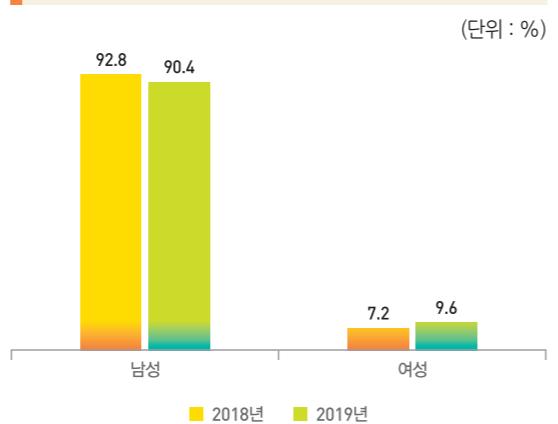
<표 66> 연도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및 지급액 추이(1999~2019)

구분	지급인원(명)	지급액(백만 원)	평균 지급액(천 원)
총합계	965,277	2,148,502	2,226
1999	3	2	667
2000	638	512	803
2001	3,836	3,599	938
2002	5,046	5,268	1,044
2003	6,631	7,325	1,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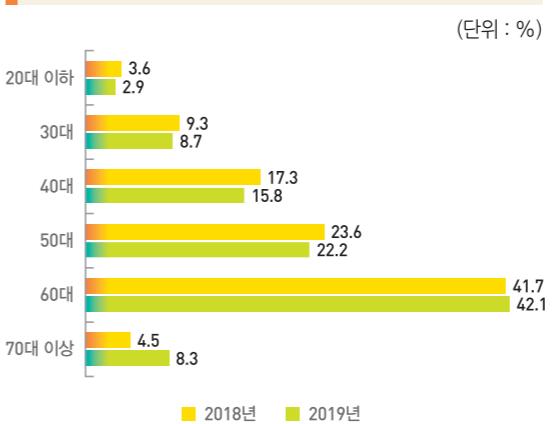
〈그림 58〉 성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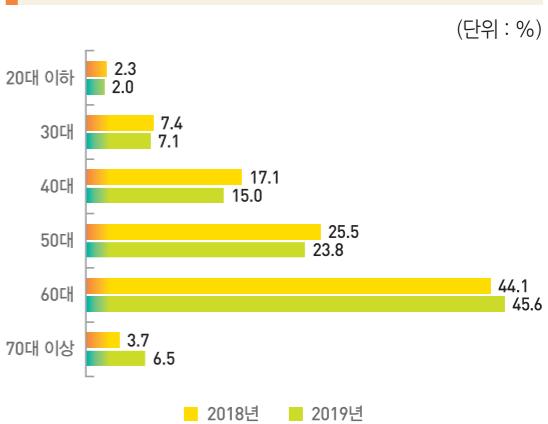
〈그림 59〉 성별 퇴직공제금 지급액



〈그림 60〉 연령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그림 61〉 연령별 퇴직공제금 지급액



〈표 67〉 성별 퇴직공제금 지급 현황

구분		2018		2019		전년대비 증감률(%)
계	지급인원(명, %)	124,773	100.0	205,448	100.0	64.7
	지급액(백만 원, %)	350,944	100.0	539,766	100.0	53.8
	평균 지급액(천 원)	2,813		2,627		-6.6
남성	지급인원(명, %)	114,398	91.7	181,658	88.4	58.8
	지급액(백만 원, %)	325,571	92.8	488,189	90.4	49.9
	평균 지급액(천 원)	2,846		2,687		-5.6
여성	지급인원(명, %)	10,375	8.3	23,790	11.6	129.3
	지급액(백만 원, %)	25,374	7.2	51,576	9.6	103.3
	평균 지급액(천 원)	2,446		2,168		-11.4

## 2) 연령별

2019년도 퇴직공제금 지급의 연령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지급인원의 경우 60대 42.1%(86,455명), 50대 22.2%(45,583명), 40대 15.8%(32,366명) 등의 순이고, 지급액의 경우에도 역시 60대 45.6%(246,335백만 원), 50대 23.8%(128,493백만 원), 40대 15.0%(81,085백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달리, 연령별 1인당 평균 지급액의 순위는 60대 2,849천 원, 50대 2,819천 원, 40대 2,505천 원 등의 순이었다.

2018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전체 지급인원과 지급액 모두 증가했는데 특히, 70대 이상(200.4%, 167.4%)의 증가가 커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의 경우 70대 이상(-11.0%)의 감소가 커다.

〈표 68〉 연령별 퇴직공제금 지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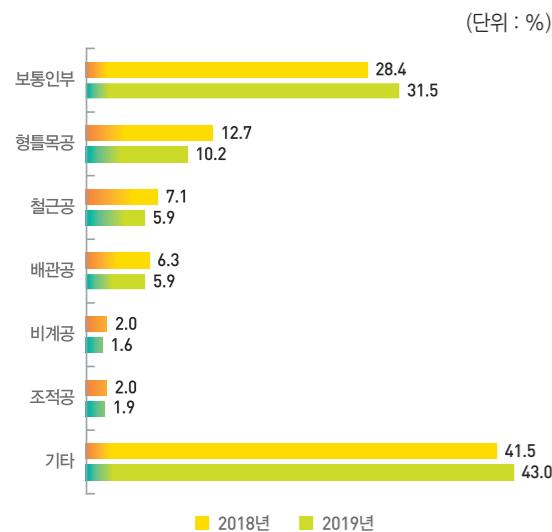
구분		2018		2019		전년대비 증감률(%)
계	지급인원(명, %)	124,773	100.0	205,448	100.0	64.7
	지급액(백만 원, %)	350,945	100.0	539,764	100.0	53.8
	평균 지급액(천 원)	2,813		2,627		-6.6
20대 이하	지급인원(명, %)	4,443	3.6	6,048	2.9	36.1
	지급액(백만 원, %)	8,033	2.3	10,845	2.0	35.0
	평균 지급액(천 원)	1,808		1,793		-0.8
30대	지급인원(명, %)	11,587	9.3	17,971	8.7	55.1
	지급액(백만 원, %)	25,885	7.4	38,074	7.1	47.1
	평균 지급액(천 원)	2,234		2,119		-5.2
40대	지급인원(명, %)	21,638	17.3	32,366	15.8	49.6
	지급액(백만 원, %)	59,850	17.1	81,085	15.0	35.5
	평균 지급액(천 원)	2,766		2,505		-9.4
50대	지급인원(명, %)	29,438	23.6	45,583	22.2	54.8
	지급액(백만 원, %)	89,506	25.5	128,493	23.8	43.6
	평균 지급액(천 원)	3,040		2,819		-7.3
60대	지급인원(명, %)	51,999	41.7	86,455	42.1	66.3
	지급액(백만 원, %)	154,606	44.1	246,335	45.6	59.3
	평균 지급액(천 원)	2,973		2,849		-4.2
70대 이상	지급인원(명, %)	5,668	4.5	17,025	8.3	200.4
	지급액(백만 원, %)	13,065	3.7	34,932	6.5	167.4
	평균 지급액(천 원)	2,305		2,052		-11.0

### 3) 직종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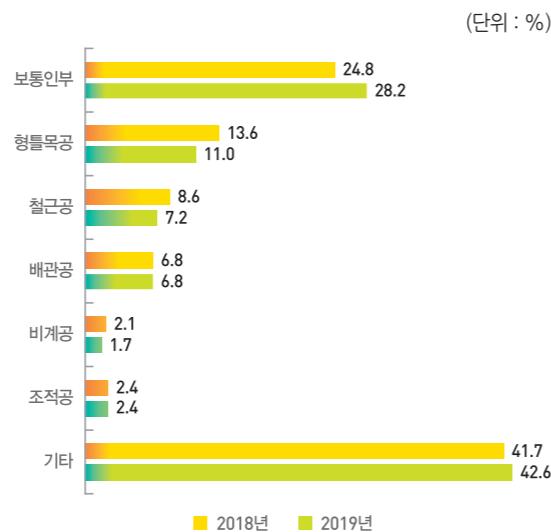
2019년도 퇴직공제금 지급의 상위 6개 직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지급인원의 경우 보통인부 31.5%(64,694명), 형틀목공 10.2%(20,952명), 철근공 5.9%(12,022명) 등의 순이고, 지급액의 경우 역시 보통인부 28.2%(152,301백만 원), 형틀목공 11.0%(59,577백만 원), 철근공 7.2%(38,985백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직종별 1인당 평균 지급액의 순위는 좀 다르게 나타났는데, 조적공 3,308천 원, 철근공 3,243천 원, 배관공 3,016천 원 등의 순이었다.

2018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모든 직종의 지급인원과 지급액이 모두 증가했는데 특히, 보통인부(82.8%, 74.7%), 배관공(55.0%, 54.2%), 조적공(54.5%, 56.9%) 등에서 증가가 커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의 경우 조적공(1.5%)에서만 증가했고 그 이외 직종에서는 모두 감소했다.

<그림 62> 직종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그림 63> 직종별 퇴직공제금 지급액



구분	2018		2019		전년대비 증감률(%)	
	지급인원(명, %)	지급액(백만 원, %)	평균 지급액(천 원)	지급인원(명, %)	지급액(백만 원, %)	
형틀목공	15,890	12.7	2,994	20,952	10.2	31.9
	47,582	13.6		59,577	11.0	25.2
			2,843			-5.0
철근공	8,873	7.1	3,402	12,022	5.9	35.5
	30,182	8.6		38,985	7.2	29.2
			3,243			-4.7
배관공	7,884	6.3	3,032	12,221	5.9	55.0
	23,905	6.8		36,860	6.8	54.2
			3,016			-0.5
비계공	2,482	2.0	2,941	3,285	1.6	32.4
	7,299	2.1		9,022	1.7	23.6
			2,746			-6.6
조적공	2,536	2.0	3,259	3,919	1.9	54.5
	8,265	2.4		12,965	2.4	56.9
			3,308			1.5
기타	51,722	41.5	2,833	88,355	43.0	70.8
	146,515	41.7		230,056	42.6	57.0
			2,604			-8.1

### 4) 적립일수 규모별

2019년도 퇴직공제금 지급의 적립일수 규모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지급인원의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 76.4%(156,808명), 3년 이상 5년 미만 13.6%(27,827명), 5년 이상 7년 미만 5.0%(10,335명) 등의 순이고, 지급액의 경우 역시 1년 이상 3년 미만 48.6%(262,423백만 원), 3년 이상 5년 미만 20.3%(109,833백만 원), 5년 이상 7년 미만 11.6%(62,784백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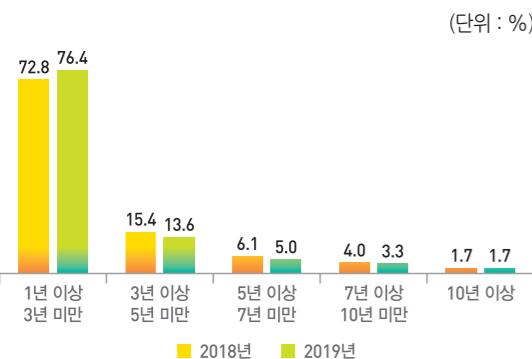
퇴직공제제도가 건설근로자의 노후대책이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향후 적립일수가 더 많이 누적된 이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적립일수 규모별 1인당 평균 지급액의 순위는 당연히 적립일수가 많을수록 높게 나타났는데, 10년 이상 12,633천 원, 7년 이상 10년 미만 8,780천 원, 5년 이상 7년 미만 6,075천 원 등의 순이었다.

2018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지급인원과 지급액 모두 전체 구간에서 증가했는데 특히, 1년 이상 3년 미만(72.9%, 66.5%)과 10년 이상(64.8%, 69.8%)에서 증가가 커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의 경우 7년 이상에서는 증가했으나 7년 미만에서는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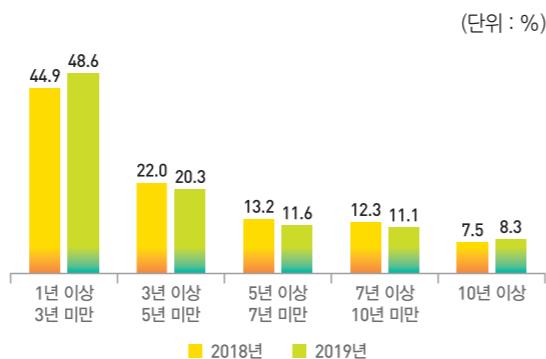
<표 69> 직종별 퇴직공제금 지급 현황

구분	2018		2019		전년대비 증감률(%)
	지급인원(명, %)	지급액(백만 원, %)	지급인원(명, %)	지급액(백만 원, %)	
계	124,773	100.0	205,448	100.0	64.7
	350,944	100.0	539,766	100.0	53.8
			2,813	2,627	-6.6
보통인부	35,386	28.4	64,694	31.5	82.8
	87,196	24.8	152,301	28.2	74.7
			2,464	2,354	-4.5

&lt;그림 64&gt; 적립일수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lt;그림 65&gt; 적립일수별 퇴직공제금 지급액



## 5) 지급액 규모별

2019년도 퇴직공제금 지급의 지급액 규모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지급인원의 경우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52.6%(107,982명), 300만 원 이상 24.9%(51,137명),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19.0%(39,035명) 등의 순이고, 지급액의 경우 300만 원 이상 53.1%(286,867백만 원),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28.2%(152,109백만 원),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17.6%(94,903백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급액 규모별 1인당 평균 지급액의 순위는 당연히 지급액 규모가 클수록 높게 나타났는데, 300만 원 이상 5,610천 원,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2,431원,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1,409천 원 등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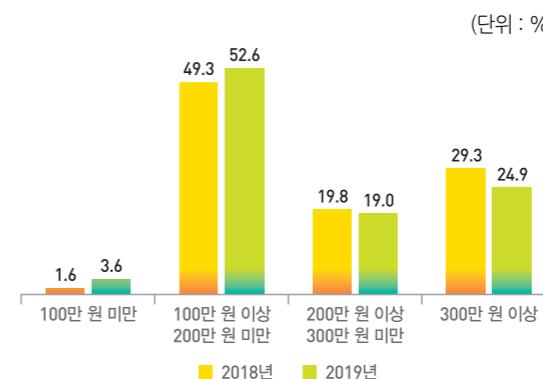
2018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지급인원과 지급액 모두 지급액 규모가 작을수록 증가가 컼는데 특히, 100만 원 미만(260.7%, 392.2%)의 증가폭이 매우 커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의 경우 100만 원 미만(36.5%)과 300만 원 이상(1.2%)에서는 증가했고, 그 외에서는 감소했다.

&lt;표 70&gt; 적립일수별 퇴직공제금 지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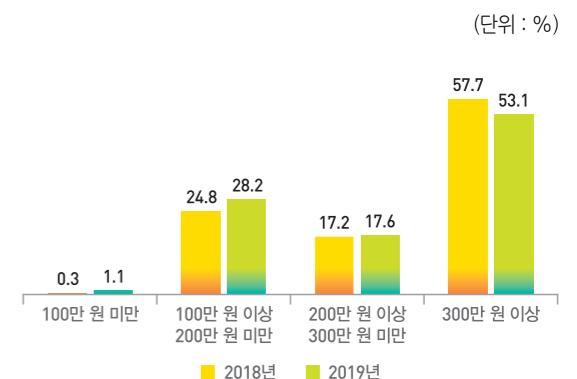
구분	2018		2019		전년대비 증감률(%)
	지급인원(명, %)	지급액(백만 원, %)	지급인원(명, %)	지급액(백만 원, %)	
계	124,594	100.0	205,341	100.0	64.8
	350,919	100.0	539,741	100.0	53.8
	평균 지급액(천 원)	2,816		2,629	-6.7
1년이상 3년미만	지급인원(명, %)	90,719	72.8	156,808	76.4
	지급액(백만 원, %)	157,577	44.9	262,423	48.6
	평균 지급액(천 원)		1,737		1,674
3년이상 5년미만	지급인원(명, %)	19,203	15.4	27,827	13.6
	지급액(백만 원, %)	77,279	22.0	109,833	20.3
	평균 지급액(천 원)		4,024		3,947
5년이상 7년미만	지급인원(명, %)	7,583	6.1	10,335	5.0
	지급액(백만 원, %)	46,449	13.2	62,784	11.6
	평균 지급액(천 원)		6,125		6,075
7년이상 10년미만	지급인원(명, %)	4,940	4.0	6,830	3.3
	지급액(백만 원, %)	43,271	12.3	59,966	11.1
	평균 지급액(천 원)		8,759		8,780
10년 이상	지급인원(명, %)	2,149	1.7	3,541	1.7
	지급액(백만 원, %)	26,343	7.5	44,735	8.3
	평균 지급액(천 원)		12,258		12,633

주 : 적립일수 1년 미만인 추가지급자 2018년 179명, 2019년 107명 제외

&lt;그림 66&gt; 지급액규모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lt;그림 67&gt; 지급액규모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lt;표 71&gt; 지급액규모별 퇴직공제금 지급 현황

구분	2018		2019		전년대비 증감률(%)
	지급인원(명, %)	지급액(백만 원, %)	지급인원(명, %)	지급액(백만 원, %)	
계	124,773	100.0	205,448	100.0	64.7
	350,944	100.0	539,766	100.0	53.8
	평균 지급액(천 원)	2,813		2,627	-6.6
100만 원 미만	2,022	1.6	7,294	3.6	260.7
	1,196	0.3	5,887	1.1	392.2
	평균 지급액(천 원)	591		807	3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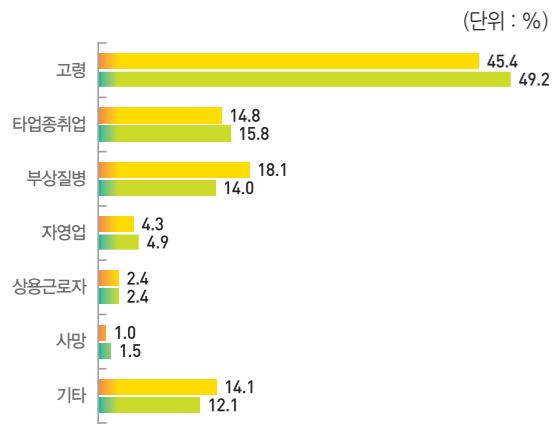
구분	2018		2019		전년대비 증감률(%)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지급인원(명, %)	61,484	49.3	107,982	52.6	75.6
	지급액(백만 원, %)	86,922	24.8	152,109	28.2	75.0
	평균 지급액(천 원)	1,414		1,409	-0.4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지급인원(명, %)	24,750	19.8	39,035	19.0	57.7
	지급액(백만 원, %)	60,417	17.2	94,903	17.6	57.1
	평균 지급액(천 원)	2,441		2,431	-0.4	
300만 원 이상	지급인원(명, %)	36,517	29.3	51,137	24.9	40.0
	지급액(백만 원, %)	202,409	57.7	286,867	53.1	41.7
	평균 지급액(천 원)	5,543		5,610	1.2	

## 6) 지급사유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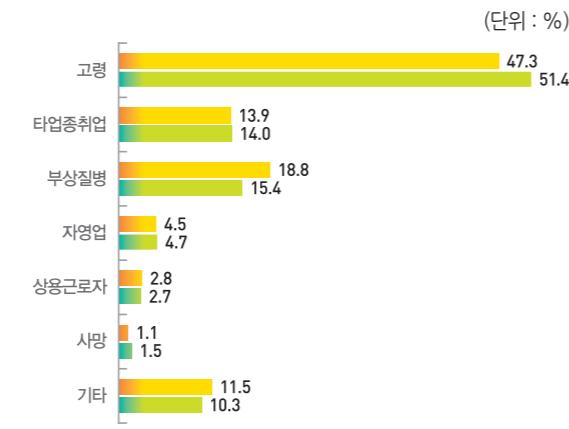
2019년도 퇴직공제금 지급의 지급사유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지급인원의 경우 고령 49.2%(101,176명), 타업종 취업 15.8%(32,441명), 부상·질병 14.0%(28,762명) 등의 순이고, 지급액의 경우 고령 51.4%(277,546백만 원), 부상·질병 15.4%(83,140만 원), 타업종 취업 14.0%(75,478백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급사유별 1인당 평균 지급액의 순위는 위와 다른데, 상용근로자 2,919천 원, 부상·질병 2,891천 원, 고령 2,743천 원 등의 순이었다.

2018년과 비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지급인원과 지급액이 모든 사유에서 증가했는데 특히, 사망(150.7%, 105.0%)의 경우 증가폭이 커졌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의 경우 모든 사유에서 감소했는데 상대적으로 사망(-18.2%)의 경우 감소폭이 커졌다.

<그림 68> 지급사유별 퇴직공제금 지급인원



<그림 69> 지급사유별 퇴직공제금 지급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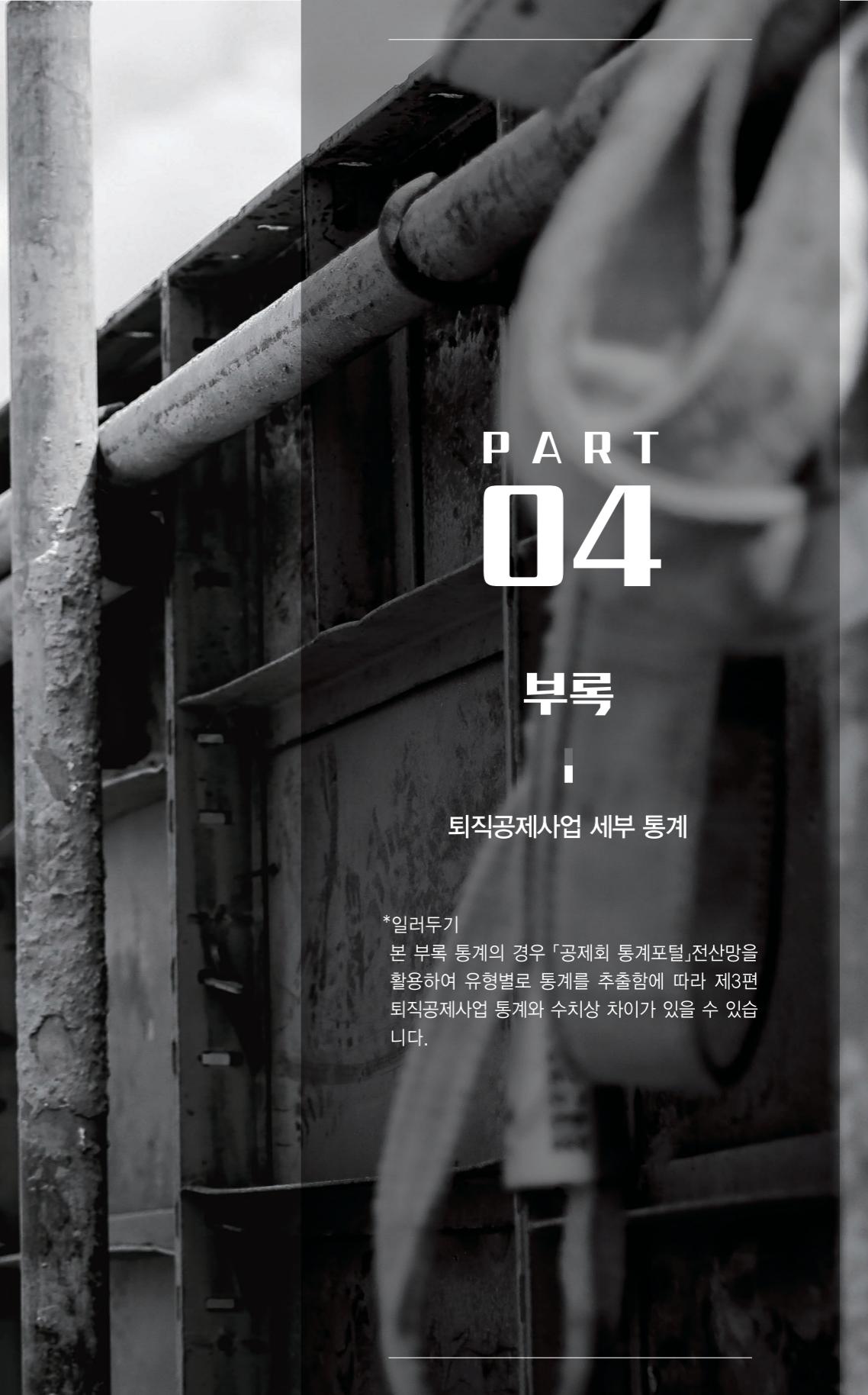
<표 72> 지급사유별 퇴직공제금 지급 현황

구분	2018		2019		전년대비 증감률(%)	
계	지급인원(명, %)	124,773	100.0	205,448	100.0	64.7
	지급액(백만 원, %)	350,944	100.0	539,766	100.0	53.8
	평균 지급액(천 원)	2,813		2,627	-6.6	
고령	지급인원(명, %)	56,624	45.4	101,176	49.2	78.7
	지급액(백만 원, %)	166,138	47.3	277,546	51.4	67.1
	평균 지급액(천 원)	2,934		2,743	-6.5	
타업종취업	지급인원(명, %)	18,443	14.8	32,441	15.8	75.9
	지급액(백만 원, %)	48,708	13.9	75,478	14.0	55.0
	평균 지급액(천 원)	2,641		2,327	-11.9	
부상질병	지급인원(명, %)	22,589	18.1	28,762	14.0	27.3
	지급액(백만 원, %)	66,058	18.8	83,140	15.4	25.9
	평균 지급액(천 원)	2,924		2,891	-1.2	
자영업	지급인원(명, %)	5,324	4.3	10,141	4.9	90.5
	지급액(백만 원, %)	15,832	4.5	25,616	4.7	61.8
	평균 지급액(천 원)	2,974		2,526	-15.1	
상용근로자	지급인원(명, %)	2,994	2.4	4,974	2.4	66.1
	지급액(백만 원, %)	9,891	2.8	14,520	2.7	46.8
	평균 지급액(천 원)	3,304		2,919	-11.6	
사망	지급인원(명, %)	1,253	1.0	3,141	1.5	150.7
	지급액(백만 원, %)	3,967	1.1	8,133	1.5	105.0
	평균 지급액(천 원)	3,166		2,589	-18.2	
기타	지급인원(명, %)	17,546	14.1	24,813	12.1	41.4
	지급액(백만 원, %)	40,351	11.5	55,333	10.3	37.1
	평균 지급액(천 원)	2,300		2,230	-3.0	

2019년도

건설근로자 고용복지

사업연보



## PART 04 부록

퇴직공제사업 세부 통계

\*일라두기

본 부록 통계의 경우 「공제회 통계포털」전산망을 활용하여 유형별로 통계를 추출함에 따라 제3편 퇴직공제사업 통계와 수치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부표 1〉 연도별 피공제자수

(단위 : 명)

구분	전체	퇴직자
합계	6,447,752	911,767
1998년	1,008	—
1999년	38,310	4
2000년	83,447	736
2001년	98,166	3,862
2002년	132,502	4,950
2003년	172,201	6,720
2004년	276,572	11,451
2005년	278,170	15,743
2006년	477,341	14,162
2007년	437,083	11,838
2008년	417,324	12,722
2009년	435,136	20,048
2010년	329,030	23,007
2011년	308,082	25,494
2012년	344,134	45,781
2013년	376,300	57,871
2014년	339,596	68,357
2015년	313,911	73,222
2016년	378,768	86,277
2017년	450,889	100,360
2018년	384,412	125,331
2018년	375,370	203,831

주 : 연도별 신규 피공제자수는 건설사업주의 파산으로 인한 적립불가 등의 사유로 Part 3의 신규적립자수와 차이가 있음(이하동일)

&lt;부표 2&gt; 연도별 연령별 신규 피공제자수

(단위 : 명)

구분	전체	19세 이하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합계	6,447,752	211,993	580,843	507,320	532,892	668,816	786,311
1998년	1,008	13	40	90	126	169	178
1999년	38,310	434	1,717	3,651	4,736	6,318	6,866
2000년		911	3,426	6,302	9,006	12,041	14,847
2001년	98,166	979	4,511	7,156	10,265	13,009	17,079
2002년	132,502	1,537	7,290	9,183	13,103	15,772	21,031
2003년	172,201	1,772	10,332	12,657	17,754	21,269	27,200
2004년	276,572	2,740	15,986	21,465	30,258	37,372	43,701
2005년	278,170	2,543	14,405	21,153	29,390	38,105	43,453
2006년	477,341	6,434	28,997	36,799	45,943	63,081	70,681
2007년	437,083	9,261	34,301	38,211	39,500	55,172	59,850
2008년	417,324	9,887	33,123	36,133	35,191	51,029	56,246
2009년	435,136	10,268	34,805	36,992	35,407	50,863	58,830
2010년	329,030	10,742	29,434	26,254	26,457	34,520	41,093
2011년	308,082	11,116	29,286	23,433	23,906	29,115	37,146
2012년	344,134	12,990	37,345	24,742	27,387	31,146	40,890
2013년	376,300	15,135	43,240	26,894	29,672	31,979	42,642
2014년	339,596	12,539	40,139	25,325	25,784	28,013	37,479
2015년	313,911	13,179	35,690	23,107	22,115	24,770	31,357
2016년	378,768	20,348	46,318	31,127	27,905	29,998	34,768
2017년	450,889	27,706	57,081	38,892	31,898	36,994	39,444
2018년	384,412	22,137	39,102	30,368	25,599	31,314	32,614
2019년	375,370	19,322	34,275	27,386	21,490	26,767	28,916

구분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65세	66~69세	70~79세	80세 이상
합계	864,187	791,542	625,193	533,233	67,354	173,823	100,583	3,662
1998년	145	112	80	38	2	9	6	0
1999년	5,113	4,170	3,314	1,542	141	234	67	7
2000년	12,366	10,629	8,244	4,280	412	772	208	3
2001년	14,598	12,429	9,799	6,141	660	1,264	273	3
2002년	19,476	16,433	13,184	10,898	1,128	2,686	763	18
2003년	26,260	20,163	16,378	12,676	1,417	3,297	1,005	21
2004년	43,233	31,069	24,150	17,537	2,266	5,040	1,722	33
2005년	45,251	33,022	24,491	16,282	2,168	5,588	2,253	66
2006년	77,510	58,933	40,733	27,142	4,351	10,948	5,483	306
2007년	67,457	52,514	36,285	23,777	4,557	10,398	5,595	205
2008년	63,031	53,314	35,253	24,395	3,318	10,599	5,605	200
2009년	65,023	57,751	37,975	26,130	3,399	10,972	6,416	305
2010년	44,711	43,654	30,836	22,726	2,742	9,673	5,940	248
2011년	40,087	42,113	30,658	22,215	3,016	9,010	6,792	189
2012년	42,364	45,980	34,529	26,525	3,955	8,853	7,232	196
2013년	45,976	48,984	38,511	31,828	4,346	9,914	6,999	180
2014년	41,491	43,318	35,415	30,479	3,872	9,388	6,153	201
2015년	36,776	38,369	34,636	34,435	3,764	9,772	5,755	186
2016년	42,586	43,137	39,861	39,842	4,073	11,830	6,686	289
2017년	49,406	49,606	46,721	46,875	5,614	12,895	7,422	335
2018년	42,511	43,290	42,084	48,356	5,095	13,673	7,973	296
2019년	38,816	42,552	42,056	59,114	7,058	17,008	10,235	375

〈부표 3〉 연도별 시도별 신규 피공제자수

(단위 : 명)

구분	전체	서울	인천	경기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울산
합계	6,447,752	1,054,904	385,848	1,368,032	298,385	338,444	360,123	447,874	138,843
1998년	1,008	219	58	242	47	21	14	15	2
1999년	38,310	7,792	2,720	7,808	1,987	1,444	963	1,691	554
2000년	83,447	12,830	4,675	14,396	4,469	5,046	3,943	5,012	1,498
2001년	98,166	13,702	5,467	16,883	4,919	6,297	4,793	6,709	1,485
2002년	132,502	16,852	6,221	21,305	7,110	9,823	8,790	9,773	2,349
2003년	172,201	24,385	8,749	30,274	12,522	10,712	8,763	16,726	2,871
2004년	276,572	42,949	16,902	54,147	13,996	15,756	15,637	24,137	5,182
2005년	278,170	44,609	18,649	56,357	13,071	13,710	15,359	20,694	4,159
2006년	477,341	83,391	28,826	91,307	26,099	28,016	26,332	34,162	8,030
2007년	437,083	73,977	25,569	81,684	26,116	24,848	25,951	31,116	7,786
2008년	417,324	73,849	23,139	83,983	22,223	23,347	23,183	27,573	6,464
2009년	435,136	73,766	27,462	89,519	21,202	24,068	23,337	27,019	7,588
2010년	329,030	52,561	21,676	63,489	16,204	19,592	19,157	22,088	5,814
2011년	308,082	47,151	19,368	59,100	13,799	19,236	18,081	21,772	6,928
2012년	344,134	54,340	20,702	70,721	14,050	19,753	20,761	25,273	9,016
2013년	376,300	61,933	22,783	79,729	15,563	19,533	22,918	26,798	10,562
2014년	339,596	59,830	20,375	80,290	13,285	16,079	18,134	21,481	7,386
2015년	313,911	52,661	18,508	71,732	13,508	15,452	17,130	21,031	6,554
2016년	378,768	61,988	22,342	91,360	14,995	17,521	20,400	24,828	9,143
2017년	450,889	73,083	26,378	111,853	15,705	18,194	26,430	29,173	15,812
2018년	384,412	62,886	22,701	95,061	13,517	14,907	21,719	25,992	10,959
2019년	375,370	60,150	22,578	96,792	13,998	15,089	18,328	24,811	8,701

구분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강원	제주	기타
합계	189,012	28,197	281,880	204,800	202,115	315,909	263,085	247,331	80,901	242,069
1998년	104	2	16	14	24	51	83	82	1	13
1999년	2,245	108	1,449	1,564	1,484	1,927	1,647	1,451	420	1,056
2000년	4,563	233	4,535	4,501	2,609	5,145	4,200	3,724	491	1,577
2001년	4,262	276	4,944	4,486	3,363	5,893	6,107	5,239	1,366	1,975
2002년	4,924	364	7,525	5,631	5,091	9,046	7,482	6,348	1,312	2,556
2003년	6,232	412	8,420	6,177	6,248	10,371	8,802	6,067	1,456	3,014
2004년	9,601	625	10,889	9,534	9,048	15,323	12,925	10,782	3,163	5,976
2005년	9,336	564	10,969	9,842	8,611	15,274	13,071	13,142	4,528	6,225
2006년	14,425	891	17,804	16,335	15,513	24,439	21,786	21,821	4,876	13,288
2007년	12,010	965	17,596	14,082	15,991	23,183	19,316	19,790	4,873	12,230
2008년	11,504	1,024	17,257	13,509	15,879	22,147	18,692	17,092	5,332	11,127
2009년	13,369	1,163	18,780	14,349	14,848	23,452	20,107	17,213	6,272	11,622
2010년	10,312	930	13,983	11,416	11,307	18,304	15,519	13,087	4,855	8,736
2011년	9,293	1,022	13,676	10,009	10,573	18,597	14,774	12,825	4,146	7,732
2012년	9,048	1,111	16,936	10,064	11,273	20,284	15,873	13,220	4,779	6,930
2013년	10,824	1,531	16,892	10,983	12,460	19,512	16,208	13,264	5,525	9,282
2014년	9,137	1,998	15,318	9,609	10,519	15,445	12,856	12,196	4,954	10,704
2015년	8,646	2,211	14,576	8,855	8,633	12,339	10,489	11,230	4,371	15,985
2016년	9,565	3,205	17,631	10,186	9,181	13,395	10,491	12,068	4,714	25,755
2017년	10,368	3,692	22,029	12,002	9,930	14,393	11,732	14,311	4,930	30,874
2018년	9,448	3,076	15,476	11,642	9,800	13,488	10,498	11,524	4,332	27,386
2019년	9,796	2,794	15,179	10,010	9,730	13,901	10,427	10,855	4,205	28,026

## 〈부표 4〉 연도별 적립금액별 신규 피공제자수

(단위 : 명)

구분	전체	50만 원 미만	100만 원 미만	200만 원 미만	300만 원 미만	400만 원 미만
합계	6,447,752	4,123,744	789,323	795,165	307,195	155,828
1998년	1,008	612	83	97	61	42
1999년	38,310	21,810	3,206	4,011	2,333	1,627
2000년	83,447	47,716	7,200	8,583	4,967	3,461
2001년	98,166	56,428	8,837	10,322	5,782	3,932
2002년	132,502	79,989	12,129	13,579	7,518	4,831
2003년	172,201	99,168	17,100	18,985	10,273	6,657
2004년	276,572	154,597	30,591	33,080	16,966	10,579
2005년	278,170	151,164	35,581	35,875	17,551	10,512
2006년	477,341	278,246	65,128	60,167	26,226	14,889
2007년	437,083	282,790	53,520	49,048	19,770	10,753
2008년	417,324	276,838	49,806	46,967	17,992	9,382
2009년	435,136	295,964	51,064	47,549	17,221	8,820
2010년	329,030	226,436	37,476	36,052	12,656	6,324
2011년	308,082	204,417	34,500	36,920	14,026	7,210
2012년	344,134	224,012	38,655	43,159	16,644	8,792
2013년	376,300	240,190	42,910	50,531	19,375	10,203
2014년	339,596	210,200	39,617	48,406	20,316	10,398
2015년	313,911	189,355	37,846	49,320	20,134	10,093
2016년	378,768	231,571	48,650	59,913	24,245	10,781
2017년	450,889	288,454	61,473	69,653	24,642	6,003
2018년	384,412	266,451	56,696	52,576	8,164	480
2019년	375,370	297,336	57,255	20,372	333	59

구분	500만 원 미만	600만 원 미만	700만원 미만	800만 원 미만	800만 원 이상
합계	90,762	58,220	40,369	28,560	58,586
1998년	22	20	18	16	37
1999년	1,201	957	771	642	1,752
2000년	2,709	2,010	1,630	1,359	3,812
2001년	2,925	2,380	1,868	1,499	4,193
2002년	3,451	2,674	2,110	1,750	4,471
2003년	4,677	3,691	2,864	2,351	6,435
2004년	7,657	5,669	4,537	3,562	9,334
2005년	7,268	5,284	4,098	3,168	7,669
2006년	9,516	6,625	5,056	3,648	7,840
2007년	6,688	4,438	3,350	2,409	4,317
2008년	5,409	3,655	2,542	1,837	2,896
2009년	5,156	3,338	2,220	1,572	2,232
2010년	3,702	2,347	1,632	1,071	1,334
2011년	4,283	2,733	1,781	1,155	1,057
2012년	5,254	3,400	2,171	1,228	819
2013년	6,225	3,590	2,055	921	300
2014년	5,802	3,170	1,296	318	73
2015년	5,001	1,792	322	38	10
2016년	3,163	386	40	14	5
2017년	602	52	8	2	0
2018년	36	9	0	0	0
2019년	15	0	0	0	0

## 〈부표 5〉 연도별 적립일수별 신규 피공제자수

(단위 : 명)

구분	전체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합계	6,447,752	4,795,582	847,544	329,726	168,145	97,584
1998년	1,008	655	106	62	53	31
1999년	38,310	23,489	4,259	2,593	1,791	1,350
2000년	83,447	51,340	9,111	5,523	3,859	2,993
2001년	98,166	60,882	10,951	6,544	4,599	3,312
2002년	132,502	86,347	14,823	8,439	5,715	3,947
2003년	172,201	108,070	20,741	11,830	7,834	5,486
2004년	276,572	170,816	37,068	20,056	12,454	8,891
2005년	278,170	169,553	42,381	21,020	12,710	8,453
2006년	477,341	308,694	77,517	33,436	18,434	11,454
2007년	437,083	314,243	61,717	24,364	12,602	7,719
2008년	417,324	313,724	54,911	20,616	10,477	5,866
2009년	435,136	341,224	51,409	18,357	9,282	5,296
2010년	329,030	262,016	37,551	12,931	6,449	3,722
2011년	308,082	238,326	37,652	14,058	7,231	4,253
2012년	344,134	262,630	43,555	16,625	8,779	5,199
2013년	376,300	283,415	50,774	19,297	10,147	6,148
2014년	339,596	250,426	48,502	20,208	10,311	5,683
2015년	313,911	228,063	49,446	19,977	9,899	4,738
2016년	378,768	281,747	59,981	23,862	10,241	2,635
2017년	450,889	352,714	69,431	23,388	4,941	375
2018년	384,412	327,603	50,152	6,347	283	21
2019년	375,370	359,605	15,506	193	54	12

구분	6년 미만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9년 이상
합계	62,573	43,060	30,701	22,642	50,195
1998년	14	22	17	14	34
1999년	1,076	846	687	592	1,627
2000년	2,338	1,805	1,480	1,274	3,724
2001년	2,621	2,098	1,672	1,400	4,087
2002년	3,037	2,380	1,949	1,577	4,288
2003년	4,113	3,230	2,569	2,158	6,170
2004년	6,353	5,045	3,949	3,210	8,730
2005년	6,151	4,469	3,550	2,805	7,078
2006년	7,798	5,650	4,271	3,176	6,911
2007년	4,913	3,665	2,648	1,916	3,296
2008년	3,903	2,717	1,917	1,343	1,850
2009년	3,417	2,255	1,595	1,090	1,211
2010년	2,379	1,641	1,046	706	589
2011년	2,731	1,763	1,082	630	356
2012년	3,352	2,121	1,167	523	183
2013년	3,532	1,945	813	181	48
2014년	3,011	1,157	248	41	9
2015년	1,536	217	28	6	1
2016년	260	28	11	0	3
2017년	32	6	2	0	0
2018년	6	0	0	0	0
2019년	0	0	0	0	0

〈부표 6〉 연도별 성별 신규 피공제자수

(단위 : 명)

구분	전체	남성	여성
합계	6,447,752	5,469,269	978,483
1998년	1,008	938	70
1999년	38,310	36,323	1,987
2000년	83,447	77,944	5,503
2001년	98,166	89,510	8,656
2002년	132,502	120,072	12,430
2003년	172,201	154,500	17,701
2004년	276,572	248,903	27,669
2005년	278,170	248,582	29,588
2006년	477,341	425,558	51,783
2007년	437,083	380,849	56,234
2008년	417,324	354,663	62,661
2009년	435,136	361,428	73,708
2010년	329,030	267,498	61,532
2011년	308,082	252,174	55,908
2012년	344,134	285,109	59,025
2013년	376,300	312,020	64,280
2014년	339,596	278,070	61,526
2015년	313,911	259,599	54,312
2016년	378,768	316,994	61,774
2017년	450,889	373,939	76,950
2018년	384,412	314,357	70,055
2019년	375,370	310,239	65,131

〈부표 7〉 연도별 내외국인 피공제자수

(단위 : 명)

구분	전체	내국인	외국인
합계	6,447,752	5,803,897	643,855
1998년	1,008	1,008	0
1999년	38,310	38,310	0
2000년	83,447	83,447	0
2001년	98,166	98,166	0
2002년	132,502	132,498	4
2003년	172,201	172,200	1
2004년	276,572	272,582	3,990
2005년	278,170	275,348	2,822
2006년	477,341	453,777	23,564
2007년	437,083	405,083	32,000
2008년	417,324	369,119	48,205
2009년	435,136	394,937	40,199
2010년	329,030	306,589	22,441
2011년	308,082	281,212	26,870
2012년	344,134	312,553	31,581
2013년	376,300	335,700	40,600
2014년	339,596	291,869	47,727
2015년	313,911	268,896	45,015
2016년	378,768	314,122	64,646
2017년	450,889	367,797	83,092
2018년	384,412	314,629	69,783
2019년	375,370	314,055	61,315

〈부표 8〉 연령별 시도별 누적 피공제자수

(단위 : 명)

구분	2015년	서울	인천	경기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울산
합계	4,559,881	741,200	274,282	919,206	219,746	256,258	260,128	317,105	90,718
19세이하	25,788	2,184	1,053	5,057	1,187	1,776	2,396	1,574	1,050
20~24세	177,537	19,476	10,959	34,459	6,924	10,796	12,176	15,688	5,446
25~29세	268,040	35,429	17,645	49,827	13,318	16,037	17,276	22,718	7,047
30~34세	336,869	50,431	20,129	63,242	17,015	19,447	20,428	27,979	7,499
35~39세	361,096	57,745	20,742	73,040	17,532	19,563	20,499	27,076	7,051
40~44세	473,706	77,939	27,915	102,066	23,004	25,289	25,955	29,901	8,912
45~49세	582,256	98,986	35,672	128,239	28,303	30,318	31,917	35,473	10,826
50~54세	647,380	114,601	41,507	143,058	31,471	33,598	34,073	39,415	11,586
55~59세	646,653	115,052	40,061	136,615	31,113	34,732	34,707	43,324	12,382
60~64세	456,603	82,348	26,378	88,090	22,907	26,304	25,926	34,115	9,013
65세	68,111	12,028	3,900	11,806	3,372	3,972	3,881	4,955	1,286
66~69세	228,512	38,318	12,495	39,445	10,830	13,877	13,474	17,035	4,195
70세이상	287,330	36,663	15,826	44,262	12,770	20,549	17,420	17,852	4,425

구분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강원	제주	기타
합계	137,795	15,007	200,666	150,893	150,339	243,768	203,751	187,604	60,755	130,660
19세이하	638	418	1,485	789	637	988	655	1,015	468	2,418
20~24세	5,032	821	8,863	5,094	6,269	11,094	7,749	7,514	3,671	5,506
25~29세	8,196	990	11,663	8,415	9,634	15,412	11,976	10,908	3,903	7,646
30~34세	11,088	1,090	14,124	10,574	13,291	18,241	14,954	12,987	4,718	9,632
35~39세	11,877	1,251	15,376	11,064	14,030	19,059	16,615	13,229	5,182	10,165
40~44세	15,065	1,645	20,545	14,774	17,803	23,510	21,001	17,606	7,141	13,635
45~49세	18,117	1,846	24,810	18,652	19,757	27,627	23,832	22,592	8,282	17,007
50~54세	19,651	1,922	27,233	20,750	19,721	30,077	25,886	25,318	8,251	19,262
55~59세	19,598	2,046	27,526	21,628	18,769	30,950	27,091	27,185	7,559	16,315
60~64세	13,282	1,413	19,308	15,479	12,872	23,231	20,570	19,013	4,808	11,546
65세	1,958	211	3,223	2,173	2,108	4,200	3,976	2,498	704	1,860
66~69세	6,042	603	10,526	7,782	7,100	15,063	12,442	10,292	2,711	6,282
70세이상	7,251	751	15,984	13,719	8,348	24,316	17,004	17,447	3,357	9,386

〈부표 8〉 연령별 시도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 명)

구분	2016년	서울	인천	경기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울산
합계	4,892,992	791,593	293,263	1,004,048	231,791	271,066	279,354	337,212	99,784
19세이하	40,157	3,430	1,382	9,044	1,412	2,600	3,567	1,939	1,528
20~24세	187,704	21,618	11,228	39,214	7,284	10,436	11,700	15,527	5,424
25~29세	293,234	38,748	19,191	57,676	13,714	17,180	18,862	24,382	7,981
30~34세	347,743	51,693	21,154	67,305	17,062	19,461	21,183	28,043	8,049
35~39세	391,904	62,271	22,624	79,437	18,811	21,186	22,834	30,486	8,071
40~44세	468,164	75,857	27,359	101,156	22,392	24,797	25,978	29,952	9,132
45~49세	610,654	103,344	36,918	136,148	29,141	31,479	33,525	37,132	11,689
50~54세	666,594	118,932	42,221	150,285	31,619	34,028	34,843	39,486	12,210
55~59세	706,064	122,773	44,225	150,921	33,996	37,330	38,157	46,565	13,637
60~64세	520,597	93,291	30,634	103,917	25,546	29,528	29,204	37,926	10,548
65세	68,680	11,962	3,637	11,948	3,549	4,180	4,149	5,431	1,419
66~69세	258,671	44,066	14,223	44,642	12,568	15,760	15,361	19,180	4,922
70세이상	332,826	43,608	18,467	52,355	14,697	23,101	19,991	21,163	5,174

구분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강원	제주	기타
합계	145,369	17,968	217,929	159,619	157,713	254,351	211,397	197,904	65,234	157,397
19세이하	829	956	2,368	1,361	669	1,216	775	1,467	525	5,089
20~24세	5,168	929	10,287	5,318	6,213	10,244	7,281	7,870	3,990	7,973
25~29세	8,696	1,232	13,197	8,735	9,994	16,141	12,272	11,418	4,348	9,467
30~34세	11,039	1,327	14,844	10,774	13,217	18,450	14,937	13,191	4,748	11,266
35~39세	12,668	1,511	16,564	11,919	14,724	19,895	17,245	14,006	5,528	12,124
40~44세	14,756	1,844	20,526	14,476	17,584	23,098	20,391	17,126	6,948	14,792
45~49세	18,834	2,114	26,599	19,125	20,545	28,415	24,544	22,897	8,724	19,481
50~54세	19,574	2,139	27,833	20,782	20,348	30,671	25,889	25,249	8,796	21,689
55~59세	21,247	2,307	30,519	23,536	20,489	33,369	28,863	29,442	8,374	20,314
60~64세	15,286	1,736	21,935	17,601	14,169	24,622	22,323	22,169	5,585	14,577
65세	1,841	245	3,080	2,191	2,112	4,330	3,374	2,435	770	2,027
66~69세	7,011	758	12,005	8,556	7,937	16,477	14,027	10,774	2,887	7,517
70세이상	8,420	870	18,172	15,245	9,712	27,423	19,476	19,860	4,011	11,081

〈부표 8〉 연령별 시도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 명)

구분	2017년	서울	인천	경기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울산
합계	5,253,833	847,363	313,786	1,096,685	243,076	284,257	301,973	359,800	114,615
19세이하	55,914	4,714	1,753	14,122	1,506	3,002	4,628	2,608	2,087
20~24세	198,291	23,924	11,574	44,257	7,331	9,986	11,557	15,134	5,854
25~29세	324,474	42,884	20,988	67,112	14,307	18,005	20,544	26,954	9,335
30~34세	357,947	53,240	21,980	71,362	17,007	19,598	21,993	28,225	9,092
35~39세	427,166	67,209	24,852	87,141	19,858	22,539	25,747	33,793	10,031
40~44세	471,335	74,822	27,083	101,415	21,979	24,721	27,248	30,944	10,192
45~49세	640,006	108,072	38,233	144,249	29,875	32,272	35,814	38,959	13,410
50~54세	683,332	120,082	42,655	155,610	31,872	34,404	36,266	40,223	13,685
55~59세	757,919	131,877	47,802	164,652	35,946	39,171	41,052	48,909	15,241
60~64세	582,634	104,437	34,806	118,848	28,084	32,228	32,342	41,498	12,155
65세	94,205	16,449	5,466	18,179	4,600	5,545	5,500	6,973	1,892
66~69세	270,070	46,513	14,804	47,251	13,402	16,363	16,065	20,318	5,340
70세이상	390,540	53,140	21,790	62,487	17,309	26,423	23,217	25,262	6,301

구분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강원	제주	기타
합계	152,826	21,372	234,052	169,209	165,407	264,490	219,573	208,883	69,611	186,855
19세이하	1,067	1,547	3,262	1,951	723	1,266	1,087	2,285	650	7,656
20~24세	5,272	1,140	11,148	5,652	6,178	9,574	6,766	8,285	4,054	10,605
25~29세	9,257	1,613	14,928	9,436	10,552	16,914	12,785	12,271	4,952	11,637
30~34세	10,841	1,544	15,334	11,011	12,905	18,305	14,820	13,155	4,678	12,857
35~39세	13,369	1,802	18,007	12,741	15,585	21,229	17,962	14,962	5,906	14,433
40~44세	14,835	2,026	20,623	14,566	17,534	22,945	20,383	16,882	6,923	16,214
45~49세	19,329	2,393	27,755	19,517	21,265	29,112	25,203	23,246	9,180	22,122
50~54세	19,633	2,354	28,833	21,006	21,022	31,205	25,983	25,212	9,271	24,016
55~59세	22,448	2,625	32,681	24,725	21,685	34,714	29,994	30,788	8,920	24,689
60~64세	16,999	2,090	24,498	19,412	15,670	26,640	24,192	24,299	6,439	17,997
65세	2,604	317	3,794	3,327	2,601	4,753	3,909	4,419	990	2,887
66~69세	7,336	871	12,429	8,717	8,207	16,519	13,822	10,597	2,999	8,517
70세이상	9,836	1,050	20,760	17,148	11,480	31,314	22,667	22,482	4,649	13,225

〈부표 8〉 연령별 시도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 명)

구분	2018년	서울	인천	경기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울산
합계	5,534,109	889,214	329,663	1,169,127	252,059	294,050	318,095	378,172	123,281
19세이하	65,850	6,055	1,767	17,344	1,772	3,357	5,174	2,855	2,121
20~24세	189,275	22,869	10,945	43,547	6,955	8,918	10,573	13,854	5,482
25~29세	344,665	45,711	21,752	74,148	14,058	18,340	21,404	28,553	9,896
30~34세	366,054	54,246	22,866	74,979	17,103	19,699	22,366	28,535	9,623
35~39세	452,179	70,378	26,469	92,854	21,013	23,399	27,653	35,895	11,165
40~44세	465,864	73,174	26,657	100,183	21,273	24,219	27,488	31,686	10,543
45~49세	645,075	107,694	38,082	146,095	29,347	32,012	36,775	39,749	14,084
50~54세	713,256	122,478	44,161	162,744	33,065	35,547	38,696	42,250	14,779
55~59세	787,487	137,695	49,626	173,486	37,056	40,075	42,248	49,732	16,049
60~64세	654,134	115,815	39,652	136,903	30,610	34,539	35,795	45,652	13,847
65세	89,005	16,274	5,146	17,517	4,419	5,350	4,938	6,532	1,955
66~69세	305,805	53,116	17,136	55,468	15,042	18,064	17,942	22,815	6,237
70세이상	455,460	63,709	25,404	73,859	20,346	30,531	27,043	30,064	7,500

구분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강원	제주	기타
합계	158,967	23,861	244,642	177,566	172,534	273,743	226,361	216,461	72,834	213,479
19세이하	1,174	2,060	3,555	2,555	831	1,329	1,225	2,680	538	9,458
20~24세	5,028	1,177	10,288	5,708	5,999	8,799	6,054	7,788	3,709	11,582
25~29세	9,663	1,809	16,177	9,813	10,914	17,341	12,974	12,772	5,548	13,792
30~34세	10,754	1,716	15,584	11,175	12,664	18,201	14,656	13,199	4,712	13,976
35~39세	13,876	1,924	18,921	13,459	16,424	22,058	18,474	15,580	6,178	16,459
40~44세	14,455	2,089	20,206	14,184	17,176	22,518	19,893	16,163	6,630	17,327
45~49세	19,323	2,612	27,721	19,653	21,451	29,142	25,163	22,871	9,368	23,933
50~54세	20,634	2,639	30,541	22,099	21,968	31,882	27,095	26,087	9,633	26,958
55~59세	22,917	2,774	33,257	24,931	22,721	35,708	30,309	30,909	9,530	28,464
60~64세	18,871	2,426	27,495	21,704	17,650	29,711	26,396	27,169	7,382	22,517
65세	2,438	317	3,636	2,935	2,300	4,074	3,614	3,623	897	3,040
66~69세	8,275	1,061	13,471	9,992	9,049	17,564	14,687	12,272	3,290	10,324
70세이상	11,559	1,257	23,790	19,358	13,387	35,416	25,821	25,348	5,419	15,649

〈부표 8〉 연령별 시도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 명)

구분	2019년	서울	인천	경기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울산
합계	5,775,777	923,410	343,357	1,233,493	260,197	302,778	330,281	392,678	129,336
19세이하	73,689	6,588	2,161	19,629	2,083	3,666	5,479	3,279	2,351
20~24세	170,121	19,893	9,530	40,557	6,170	7,737	9,260	12,283	4,676
25~29세	360,730	47,812	22,322	80,766	13,992	18,401	21,571	29,000	10,434
30~34세	373,791	54,982	23,783	78,557	17,229	19,883	22,615	29,096	9,848
35~39세	456,621	70,112	26,785	94,609	21,021	23,573	27,860	36,278	11,536
40~44세	471,721	74,575	26,916	101,813	21,340	23,838	28,014	33,142	10,903
45~49세	640,869	105,129	37,524	145,358	28,817	31,660	36,537	39,766	14,186
50~54세	735,326	124,138	45,049	168,474	33,654	36,253	40,696	43,683	15,675
55~59세	803,904	140,941	50,784	180,534	36,923	39,672	42,984	49,640	16,172
60~64세	723,069	126,501	44,107	153,280	33,773	38,004	38,891	49,195	15,418
65세	110,634	19,618	6,356	22,104	5,320	5,966	6,194	7,946	2,293
66~69세	329,337	57,379	18,670	61,523	16,176	19,415	18,925	24,349	6,940
70세이상	525,965	75,742	29,370	86,289	23,699	34,710	31,255	35,021	8,904

구분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강원	제주	기타
합계	164,962	25,812	253,681	183,415	178,991	283,103	231,696	222,929	75,928	239,730
19세이하	1,771	2,283	3,968	2,793	889	1,493	1,257	2,855	543	10,601
20~24세	4,490	1,149	8,800	5,038	5,702	8,075	5,216	6,744	3,220	11,581
25~29세	10,074	1,992	17,350	10,226	11,214	17,469	12,987	13,206	6,068	15,846
30~34세	10,749	1,844	15,939	11,125	12,380	18,155	14,456	13,350	4,799	15,001
35~39세	13,848	2,048	19,002	13,467	16,571	22,195	18,193	15,632	6,101	17,790
40~44세	14,539	2,119	20,035	14,158	17,018	22,628	19,400	15,899	6,708	18,676
45~49세	18,956	2,773	27,300	19,256	21,774	29,338	25,396	22,216	9,415	25,468
50~54세	21,193	2,831	31,226	22,793	22,725	32,786	27,667	26,698	10,041	29,744
55~59세	23,171	2,922	33,939	24,886	23,026	35,689	30,247	30,597	9,887	31,890
60~64세	20,713	2,722	30,203	23,632	19,896	32,693	28,239	29,548	8,281	27,973
65세	3,188	438	4,720	3,577	2,935	5,197	4,597	4,692	1,190	4,303
66~69세	8,949	1,201	14,117	10,873	9,308	17,662	14,803	13,347	3,467	12,233
70세이상	13,321	1,490	27,082	21,591	15,553	39,723	29,238	28,145	6,208	18,624

〈부표 9〉 연령별 적립금액별 누적 피공제자수

(단위 : 명)

구분	전체	50만 원 미만	100만 원 미만	200만 원 미만	300만 원 미만	400만 원 미만
2015년	4,559,881	3,344,421	510,071	364,484	145,499	78,777
19세이하	25,788	22,069	2,514	1,011	160	29
20~24세	177,537	165,635	8,675	2,817	346	52
25~29세	268,040	236,599	19,073	9,540	2,036	568
30~34세	336,869	281,577	29,666	17,332	4,977	1,906
35~39세	361,096	276,535	39,707	26,758	9,246	4,186
40~44세	473,706	333,633	58,826	43,223	17,438	8,743
45~49세	582,256	391,944	73,506	57,886	24,580	13,576
50~54세	647,380	422,107	81,365	67,144	30,326	17,796
55~59세	646,653	417,962	79,887	66,936	31,674	19,015
60~64세	456,603	317,986	59,393	41,407	15,642	8,796
65세	68,111	49,577	8,676	5,622	1,987	1,004
66~69세	228,512	176,694	27,012	15,372	4,726	2,185
70세이상	287,330	252,103	21,771	9,436	2,361	921

구분	500만 원 미만	600만 원 미만	700만 원 미만	800만 원 미만	800만 원 이상
2015년	49,134	31,324	19,515	10,619	6,037
19세이하	1	1	0	0	3
20~24세	11	1	0	0	0
25~29세	160	37	21	4	2
30~34세	785	321	200	68	37
35~39세	2,191	1,209	718	323	223
40~44세	5,085	3,103	1,944	1,101	610
45~49세	8,647	5,547	3,379	1,960	1,231
50~54세	11,610	7,741	4,942	2,750	1,599
55~59세	12,793	8,451	5,411	2,924	1,600
60~64세	5,685	3,696	2,254	1,166	578
65세	555	351	190	107	42
66~69세	1,202	692	368	171	90
70세이상	409	174	88	45	22

〈부표 9〉 연령별 적립금액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 명)

구분	전체	50만 원 미만	100만 원 미만	200만 원 미만	300만 원 미만	400만 원 미만
2016년	4,892,992	3,561,276	554,683	390,895	156,849	85,105
19세이하	40,157	33,814	4,233	1,752	290	54
20~24세	187,704	173,271	10,398	3,485	458	72
25~29세	293,234	255,775	22,223	11,512	2,620	782
30~34세	347,743	287,287	32,050	18,740	5,661	2,279
35~39세	391,904	300,167	42,923	28,212	10,338	4,761
40~44세	468,164	327,919	58,414	42,492	17,193	9,009
45~49세	610,654	407,841	77,104	60,254	26,120	14,512
50~54세	666,594	429,406	83,915	68,939	31,999	18,407
55~59세	706,064	450,082	87,550	72,503	34,193	20,954
60~64세	520,597	358,755	68,636	47,941	17,746	9,646
65세	68,680	50,058	8,878	5,556	1,785	982
66~69세	258,671	196,988	31,677	18,201	5,741	2,545
70세이상	332,826	289,913	26,682	11,308	2,705	1,102

구분	500만 원 미만	600만 원 미만	700만 원 미만	800만 원 미만	800만 원 이상
2016년	53,101	35,876	24,440	15,707	15,060
19세이하	9	1	1	0	3
20~24세	14	5	1	0	0
25~29세	216	72	24	9	1
30~34세	959	406	182	114	65
35~39세	2,445	1,390	786	482	400
40~44세	5,182	3,219	2,098	1,347	1,291
45~49세	9,128	6,135	4,125	2,665	2,770
50~54세	11,937	8,517	5,831	3,877	3,766
55~59세	14,288	10,061	7,231	4,663	4,539
60~64세	6,408	4,557	3,163	1,973	1,772
65세	542	360	236	154	129
66~69세	1,408	892	613	339	267
70세이상	565	261	149	84	57

〈부표 9〉 연령별 적립금액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 명)

구분	전체	50만 원 미만	100만 원 미만	200만 원 미만	300만 원 미만	400만 원 미만
2017년	5,253,833	3,778,808	615,717	428,631	168,062	91,465
19세이하	55,914	45,488	6,847	2,975	499	80
20~24세	198,291	179,729	12,895	4,913	618	106
25~29세	324,474	276,272	27,737	15,177	3,624	1,150
30~34세	357,947	289,210	35,643	21,740	6,546	2,676
35~39세	427,166	323,770	48,325	32,121	11,229	5,337
40~44세	471,335	327,858	59,766	43,498	17,126	8,991
45~49세	640,006	421,113	83,170	64,416	27,406	15,369
50~54세	683,332	432,984	88,353	72,007	32,411	19,103
55~59세	757,919	476,145	95,241	78,842	36,474	21,945
60~64세	582,634	394,900	77,791	54,685	20,538	11,265
65세	94,205	67,695	12,734	7,617	2,672	1,284
66~69세	270,070	204,648	34,238	18,104	5,808	2,830
70세이상	390,540	338,996	32,977	12,536	3,111	1,329

구분	500만 원 미만	600만 원 미만	700만 원 미만	800만 원 미만	800만 원 이상
2017년	57,362	39,256	27,895	19,624	27,013
19세이하	18	6	1	0	0
20~24세	22	4	1	0	3
25~29세	353	105	35	14	7
30~34세	1,170	523	222	122	95
35~39세	2,763	1,579	915	518	609
40~44세	5,305	3,320	2,137	1,446	1,888
45~49세	9,687	6,566	4,592	3,137	4,550
50~54세	12,357	8,715	6,323	4,629	6,450
55~59세	15,356	11,133	8,384	5,961	8,438
60~64세	7,292	5,361	3,994	2,908	3,900
65세	797	503	321	252	330
66~69세	1,555	1,051	742	490	604
70세이상	687	390	228	147	139

〈부표 9〉 연령별 적립금액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 명)

구분	전체	50만 원 미만	100만 원 미만	200만 원 미만	300만 원 미만	400만 원 미만
2018년	5,534,109	3,945,317	659,831	461,655	178,550	95,859
19세이하	65,850	52,219	8,740	4,082	658	118
20~24세	189,275	169,830	13,036	5,425	836	119
25~29세	344,665	288,321	30,671	18,438	4,936	1,555
30~34세	366,054	290,910	37,113	24,466	7,717	3,229
35~39세	452,179	339,738	51,157	35,752	12,528	5,758
40~44세	465,864	322,116	59,489	43,782	17,251	8,888
45~49세	645,075	420,189	84,721	66,426	28,019	15,215
50~54세	713,256	447,602	92,957	76,378	33,561	19,727
55~59세	787,487	489,588	100,320	82,459	37,600	22,421
60~64세	654,134	440,615	88,453	61,203	22,435	12,514
65세	89,005	63,506	12,147	7,223	2,461	1,315
66~69세	305,805	229,030	40,257	20,766	6,715	3,286
70세이상	455,460	391,653	40,770	15,255	3,833	1,714

구분	500만 원 미만	600만 원 미만	700만 원 미만	800만 원 미만	800만 원 이상
2018년	60,233	41,469	30,080	21,962	39,153
19세이하	22	10	1	0	0
20~24세	21	4	1	0	3
25~29세	472	190	50	21	11
30~34세	1,415	649	296	135	124
35~39세	3,048	1,791	1,045	603	759
40~44세	5,240	3,268	2,069	1,446	2,315
45~49세	9,726	6,770	4,663	3,376	5,970
50~54세	12,788	9,149	6,744	5,012	9,338
55~59세	15,677	11,288	8,970	6,697	12,467
60~64세	8,261	6,042	4,639	3,584	6,388
65세	795	516	328	242	472
66~69세	1,913	1,263	933	629	1,013
70세이상	855	529	341	217	293

〈부표 9〉 연령별 적립금액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 명)

구분	전체	50만 원 미만	100만 원 미만	200만 원 미만	300만 원 미만	400만 원 미만
2019년	5,775,777	4,107,418	698,209	474,157	186,555	100,057
19세이하	73,689	56,803	10,856	4,997	838	154
20~24세	170,121	151,365	12,409	5,200	895	210
25~29세	360,730	298,557	33,465	19,446	6,057	2,097
30~34세	373,791	294,645	37,664	25,320	9,041	3,817
35~39세	456,621	342,875	50,796	35,373	13,519	6,242
40~44세	471,721	326,714	59,281	43,504	17,983	9,171
45~49세	640,869	416,420	83,778	65,199	28,453	15,574
50~54세	735,326	460,929	95,799	77,558	34,580	20,093
55~59세	803,904	497,332	102,904	83,866	38,151	22,818
60~64세	723,069	485,743	100,528	66,950	23,540	13,074
65세	110,634	79,065	15,589	8,670	2,816	1,544
66~69세	329,337	246,617	45,230	21,256	6,405	3,396
70세이상	525,965	450,353	49,910	16,818	4,277	1,867

구분	500만 원 미만	600만 원 미만	700만 원 미만	800만 원 미만	800만 원 이상
2019년	61,763	42,382	31,171	23,288	50,777
19세이하	28	12	1	0	0
20~24세	29	8	2	0	3
25~29세	729	252	89	24	14
30~34세	1,731	860	381	184	148
35~39세	3,218	1,894	1,177	638	889
40~44세	5,346	3,341	2,217	1,484	2,680
45~49세	9,524	6,608	4,758	3,387	7,168
50~54세	13,058	9,231	6,934	5,225	11,919
55~59세	15,438	11,417	8,783	6,948	16,247
60~64세	8,729	6,232	5,030	4,063	9,180
65세	921	555	414	356	704
66~69세	2,028	1,346	967	700	1,392
70세이상	984	626	418	279	433

〈부표 10〉 연령별 적립일수별 누적 피공제자수

(단위 : 명)

구분	전체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2015년	4,559,881	3,768,218	403,531	157,322	83,607	52,390
19세이하	25,788	24,599	998	156	29	2
20~24세	177,537	174,269	2,849	354	52	12
25~29세	268,040	254,750	10,248	2,182	605	172
30~34세	336,869	307,573	19,911	5,555	2,116	867
35~39세	361,096	310,076	30,383	10,291	4,547	2,352
40~44세	473,706	382,489	47,866	19,011	9,560	5,477
45~49세	582,256	452,443	63,036	26,470	14,438	9,227
50~54세	647,380	488,628	72,244	32,223	18,647	12,196
55~59세	646,653	482,002	72,215	33,335	19,647	13,414
60~64세	456,603	367,562	45,818	16,644	9,131	6,087
65세	68,111	56,723	6,419	2,139	1,149	622
66~69세	228,512	198,580	18,463	5,610	2,467	1,366
70세이상	287,330	268,524	13,081	3,352	1,219	596

구분	6년 미만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9년 이상
2015년	35,039	24,189	16,321	10,255	9,009
19세이하	1	0	0	0	3
20~24세	1	0	0	0	0
25~29세	50	19	11	2	1
30~34세	395	224	126	69	33
35~39세	1,457	892	507	325	266
40~44세	3,474	2,374	1,630	964	861
45~49세	6,107	4,174	2,856	1,789	1,716
50~54세	8,353	5,995	4,131	2,628	2,335
55~59세	9,420	6,657	4,497	2,939	2,527
60~64세	4,251	2,924	1,984	1,199	1,003
65세	419	272	178	104	86
66~69세	842	528	322	181	153
70세이상	269	130	79	55	25

〈부표 10〉 연령별 적립일수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 명)

구분	전체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2016년	4,892,992	4,037,252	429,332	167,694	89,795	55,367
19세이하	40,157	38,082	1,725	283	53	8
20~24세	187,704	183,681	3,480	453	71	13
25~29세	293,234	277,482	11,888	2,718	796	237
30~34세	347,743	316,364	20,982	6,052	2,404	1,040
35~39세	391,904	337,712	31,566	11,225	5,012	2,661
40~44세	468,164	377,891	46,827	18,496	9,662	5,528
45~49세	610,654	473,138	65,468	27,807	15,432	9,429
50~54세	666,594	500,168	74,003	33,642	19,288	12,480
55~59세	706,064	522,763	77,848	35,909	21,696	14,677
60~64세	520,597	417,980	52,507	18,813	10,117	6,371
65세	68,680	57,743	6,289	1,930	987	603
66~69세	258,671	223,495	21,391	6,581	2,858	1,595
70세이상	332,826	310,753	15,358	3,785	1,419	725

구분	6년 미만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9년 이상
2016년	37,391	26,754	19,067	13,390	16,950
19세이하	2	1	0	0	3
20~24세	5	1	0	0	0
25~29세	77	23	8	5	0
30~34세	431	218	123	70	59
35~39세	1,467	902	607	337	415
40~44세	3,402	2,298	1,589	1,099	1,372
45~49세	6,456	4,518	3,175	2,265	2,966
50~54세	8,699	6,286	4,568	3,273	4,187
55~59세	10,416	7,792	5,641	4,079	5,243
60~64세	4,789	3,574	2,554	1,777	2,115
65세	346	277	205	131	169
66~69세	949	679	490	282	351
70세이상	352	185	107	72	70

〈부표 10〉 연령별 적립일수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 명)

구분	전체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2017년	5,253,833	4,323,415	464,942	178,340	95,790	59,218
19세이하	55,914	52,397	2,923	492	76	19
20~24세	198,291	192,673	4,888	599	100	22
25~29세	324,474	303,781	15,382	3,633	1,158	345
30~34세	357,947	322,677	23,413	6,873	2,723	1,223
35~39세	427,166	367,225	35,330	12,038	5,611	2,846
40~44세	471,335	380,480	47,461	18,216	9,531	5,581
45~49세	640,006	493,566	69,375	29,068	16,314	9,955
50~54세	683,332	509,660	76,821	34,003	19,852	12,809
55~59세	757,919	557,406	84,283	38,250	22,797	15,718
60~64세	582,634	463,551	59,184	21,604	11,764	7,410
65세	94,205	79,136	8,394	2,889	1,345	785
66~69세	270,070	234,663	20,865	6,466	2,956	1,718
70세이상	390,540	366,200	16,623	4,209	1,563	787

구분	6년 미만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9년 이상
2017년	40,046	28,766	21,267	15,599	26,450
19세이하	6	1	0	0	0
20~24세	5	1	0	0	3
25~29세	115	36	14	7	3
30~34세	533	246	133	67	59
35~39세	1,652	972	591	382	519
40~44세	3,415	2,226	1,585	1,087	1,753
45~49세	6,735	4,811	3,418	2,456	4,308
50~54세	8,945	6,530	4,874	3,562	6,276
55~59세	11,177	8,514	6,457	4,905	8,412
60~64세	5,434	4,109	3,167	2,418	3,993
65세	504	328	272	190	362
66~69세	1,046	731	594	415	616
70세이상	479	261	162	110	146

〈부표 10〉 연령별 적립일수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 명)

구분	전체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2018년	5,534,109	4,543,130	494,736	187,673	99,478	61,633
19세이하	65,850	61,075	3,974	653	115	22
20~24세	189,275	182,966	5,361	806	115	19
25~29세	344,665	319,099	18,414	4,896	1,516	470
30~34세	366,054	326,734	25,548	7,880	3,240	1,415
35~39세	452,179	386,975	38,501	13,140	5,933	3,148
40~44세	465,864	375,930	47,178	18,086	9,224	5,463
45~49세	645,075	495,892	70,907	29,435	15,914	10,021
50~54세	713,256	530,256	80,814	35,152	20,381	13,173
55~59세	787,487	577,709	87,561	39,153	23,197	15,747
60~64세	654,134	520,298	65,626	23,496	13,008	8,391
65세	89,005	74,700	7,803	2,592	1,382	784
66~69세	305,805	265,406	23,298	7,332	3,479	1,991
70세이상	455,460	426,090	19,751	5,052	1,974	989

구분	6년 미만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9년 이상
2018년	42,209	30,131	22,705	17,015	35,399
19세이하	10	1	0	0	0
20~24세	4	1	0	0	3
25~29세	185	54	20	8	3
30~34세	653	299	140	72	73
35~39세	1,792	1,055	649	406	580
40~44세	3,330	2,147	1,506	1,069	1,931
45~49세	6,869	4,711	3,524	2,512	5,290
50~54세	9,353	6,724	5,141	3,906	8,356
55~59세	11,656	8,823	6,897	5,285	11,459
60~64세	6,025	4,714	3,683	2,865	6,028
65세	493	340	257	197	457
66~69세	1,263	906	643	529	958
70세이상	576	356	245	166	261

〈부표 10〉 연령별 적립일수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 명)

구분	전체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2019년	5,775,777	4,760,785	500,153	192,953	101,870	62,672
19세이하	73,689	67,878	4,821	805	146	27
20~24세	170,121	164,144	4,926	830	184	23
25~29세	360,730	332,854	19,040	5,841	1,979	684
30~34세	373,791	332,217	25,764	8,924	3,710	1,662
35~39세	456,621	391,236	37,533	13,737	6,253	3,219
40~44세	471,721	382,158	46,252	18,483	9,258	5,432
45~49세	640,869	493,890	68,906	29,255	15,964	9,672
50~54세	735,326	549,076	81,144	35,812	20,496	13,342
55~59세	803,904	591,024	87,987	39,541	23,232	15,611
60~64세	723,069	579,636	70,108	24,431	13,337	8,888
65세	110,634	93,802	9,210	2,913	1,598	933
66~69세	329,337	289,010	23,088	6,886	3,541	2,075
70세이상	525,965	493,860	21,374	5,495	2,172	1,104

구분	6년 미만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9년 이상
2019년	42,345	30,999	23,119	17,995	42,886
19세이하	11	1	0	0	0
20~24세	10	1	0	0	3
25~29세	216	80	24	7	5
30~34세	821	364	176	79	74
35~39세	1,842	1,136	669	409	587
40~44세	3,375	2,170	1,484	1,006	2,103
45~49세	6,639	4,744	3,344	2,574	5,881
50~54세	9,246	6,974	5,182	4,071	9,983
55~59세	11,393	8,776	6,902	5,642	13,796
60~64세	6,311	4,963	3,991	3,229	8,175
65세	540	388	341	265	644
66~69세	1,297	953	706	519	1,262
70세이상	644	449	300	194	373

〈부표 11〉 연령별 성별 누적 피공제자수

(단위 : 명)

구분	2015년	남성	여성	2016년	남성	여성	2017년	남성	여성
합계	4,559,881	3,897,319	662,562	4,892,992	4,170,677	722,315	5,253,833	4,462,183	791,650
19세이하	25,788	24,396	1,392	40,157	38,357	1,800	55,914	53,623	2,291
20~24세	177,537	170,023	7,514	187,704	179,304	8,400	198,291	188,465	9,826
25~29세	268,040	254,349	13,691	293,234	277,652	15,582	324,474	306,553	17,921
30~34세	336,869	309,698	27,171	347,743	320,121	27,622	357,947	329,360	28,587
35~39세	361,096	315,941	45,155	391,904	343,984	47,920	427,166	375,974	51,192
40~44세	473,706	404,010	69,696	468,164	397,128	71,036	471,335	397,447	73,888
45~49세	582,256	497,536	84,720	610,654	517,255	93,399	640,006	538,462	101,544
50~54세	647,380	547,840	99,540	666,594	562,806	103,788	683,332	572,568	110,764
55~59세	646,653	538,537	108,116	706,064	585,240	120,824	757,919	625,160	132,759
60~64세	456,603	377,771	78,832	520,597	430,181	90,416	582,634	480,002	102,632
65세	68,111	55,690	12,421	68,680	56,302	12,378	94,205	77,438	16,767
66~69세	228,512	185,536	42,976	258,671	210,442	48,229	270,070	219,794	50,276
70세이상	287,330	215,992	71,338	332,826	251,905	80,921	390,540	297,337	93,203

구분	2018년	남성	여성	2019년	남성	여성
합계	5,534,109	4,682,436	851,673	5,775,777	4,871,423	904,354
19세이하	65,850	63,047	2,803	73,689	70,547	3,142
20~24세	189,275	178,754	10,521	170,121	159,244	10,877
25~29세	344,665	325,105	19,560	360,730	339,745	20,985
30~34세	366,054	336,295	29,759	373,791	343,088	30,703
35~39세	452,179	398,413	53,766	456,621	403,553	53,068
40~44세	465,864	392,926	72,938	471,721	398,190	73,531
45~49세	645,075	538,759	106,316	640,869	532,539	108,330
50~54세	713,256	593,506	119,750	735,326	608,445	126,881
55~59세	787,487	647,287	140,200	803,904	659,584	144,320
60~64세	654,134	537,338	116,796	723,069	592,392	130,677
65세	89,005	72,730	16,275	110,634	90,537	20,097
66~69세	305,805	249,236	56,569	329,337	267,931	61,406
70세이상	455,460	349,040	106,420	525,965	405,628	120,337

〈부표 12〉 연령별 내외국인 피공제자수

(단위 : 명)

구분	2015년	내국인	외국인	2016년	내국인	외국인	2017년	내국인	외국인
합계	4,559,881	4,212,209	347,672	4,892,992	4,482,455	410,537	5,253,833	4,771,292	482,541
19세이하	25,788	13,114	12,674	40,157	15,387	24,770	55,914	14,699	41,215
20~24세	177,537	173,816	3,721	187,704	183,130	4,574	198,291	192,395	5,896
25~29세	268,040	249,030	19,010	293,234	270,237	22,997	324,474	298,906	25,568
30~34세	336,869	310,598	26,271	347,743	313,844	33,899	357,947	316,125	41,822
35~39세	361,096	331,132	29,964	391,904	357,358	34,546	427,166	385,936	41,230
40~44세	473,706	434,001	39,705	468,164	426,497	41,667	471,335	427,955	43,380
45~49세	582,256	532,588	49,668	610,654	555,104	55,550	640,006	577,238	62,768
50~54세	647,380	592,006	55,374	666,594	600,630	65,964	683,332	613,490	69,842
55~59세	646,653	596,485	50,168	706,064	654,213	51,851	757,919	697,861	60,058
60~64세	456,603	420,517	36,086	520,597	477,630	42,967	582,634	531,700	50,934
65세	68,111	63,262	4,849	68,680	62,802	5,878	94,205	86,916	7,289
66~69세	228,512	213,738	14,774	258,671	240,718	17,953	270,070	248,961	21,109
70세이상	287,330	281,922	5,408	332,826	324,905	7,921	390,540	379,110	11,430

구분	2018년	내국인	외국인	2019년	내국인	외국인
합계	5,534,109	4,998,124	535,985	5,775,777	5,197,877	577,900
19세이하	65,850	10,824	55,026	73,689	9,624	64,065
20~24세	189,275	183,047	6,228	170,121	163,853	6,268
25~29세	344,665	318,997	25,668	360,730	337,200	23,530
30~34세	366,054	318,475	47,579	373,791	323,573	50,218
35~39세	452,179	406,251	45,928	456,621	407,479	49,142
40~44세	465,864	420,258	45,606	471,721	422,134	49,587
45~49세	645,075	580,678	64,397	640,869	576,167	64,702
50~54세	713,256	642,664	70,592	735,326	662,428	72,898
55~59세	787,487	718,826	68,661	803,904	727,485	76,419
60~64세	654,134	596,597	57,537	723,069	660,912	62,157
65세	89,005	80,648	8,357	110,634	100,673	9,961
66~69세	305,805	280,901	24,904	329,337	301,712	27,625
70세이상	455,460	439,958	15,502	525,965	504,637	21,328

〈부표 13〉 시도별 적립금액별 누적 피공제자수

(단위 : 명)

구분	전체	50만 원 미만	100만 원 미만	200만 원 미만	300만 원 미만	400만 원 미만
2015년	4,559,881	510,071	364,484	145,499	78,777	49,134
서울	741,200	89,549	68,576	28,381	15,323	9,926
인천	274,282	30,462	22,610	9,579	5,482	3,670
경기	919,206	105,278	78,226	31,214	17,191	10,953
대구	219,746	24,453	16,668	6,834	3,734	2,479
경북	256,258	28,085	19,039	6,999	3,587	2,095
경남	260,128	25,734	16,883	5,805	2,822	1,551
부산	317,105	32,700	23,295	9,548	5,241	3,620
울산	90,718	9,405	6,797	2,556	1,118	463
대전	137,795	16,141	11,640	5,093	2,945	1,934
세종	15,007	1,982	1,567	605	329	233
충남	200,666	22,073	16,050	6,279	3,525	1,982
충북	150,893	17,123	11,777	4,511	2,398	1,304
광주	150,339	17,697	12,033	4,608	2,458	1,590
전남	243,768	25,771	18,150	7,623	4,117	2,344
전북	203,751	23,755	15,943	5,865	3,062	1,689
강원	187,604	20,500	13,804	5,365	2,870	1,696
제주	60,755	7,135	4,835	1,656	698	369
기타	130,660	12,228	6,591	2,978	1,877	1,236

구분	500만 원 미만	600만 원 미만	700만 원 미만	800만 원 미만	800만 원 이상
2015년	3,344,421	31,324	19,515	10,619	6,037
서울	516,682	6,146	3,727	1,901	989
인천	197,123	2,341	1,546	911	558
경기	660,496	7,174	4,551	2,598	1,525
대구	161,481	1,799	1,233	685	380
경북	193,296	1,420	911	498	328
경남	205,188	1,004	596	357	188
부산	237,854	2,401	1,463	710	273
울산	69,885	245	138	67	44
대전	97,201	1,301	797	463	280
세종	9,916	155	112	68	40
충남	148,694	1,026	582	284	171
충북	111,943	865	517	276	179
광주	109,732	1,019	645	364	193
전남	182,313	1,513	968	566	403
전북	151,536	964	565	263	109
강원	141,462	960	548	260	139
제주	45,743	186	88	35	10
기타	103,876	805	528	313	228

〈부표 13〉 시도별 적립금액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 명)

구분	전체	50만 원 미만	100만 원 미만	200만 원 미만	300만 원 미만	400만 원 미만
2016년	4,892,992	554,683	390,895	156,849	85,105	53,101
서울	791,593	95,693	72,681	31,565	16,920	10,592
인천	293,263	33,026	24,013	10,132	5,779	3,835
경기	1,004,048	116,575	86,025	35,179	18,948	11,999
대구	231,791	26,314	17,614	7,014	3,924	2,555
경북	271,066	30,264	20,346	7,376	3,866	2,303
경남	279,354	28,608	18,417	6,277	2,991	1,711
부산	337,212	35,666	24,761	9,886	5,397	3,578
울산	99,784	10,526	7,157	2,868	1,331	629
대전	145,369	17,401	12,409	5,061	3,094	1,995
세종	17,968	2,325	1,827	676	388	248
충남	217,929	24,216	17,161	6,897	3,842	2,353
충북	159,619	18,307	12,770	4,805	2,511	1,420
광주	157,713	18,887	12,626	4,780	2,615	1,635
전남	254,351	27,132	18,607	7,467	4,446	2,696
전북	211,397	24,943	16,510	5,993	3,060	1,861
강원	197,904	21,971	14,712	5,662	3,035	1,862
제주	65,234	7,661	5,156	1,790	793	401
기타	157,397	15,168	8,103	3,421	2,165	1,428

구분	500만 원 미만	600만 원 미만	700만 원 미만	800만 원 미만	800만 원 이상
2016년	3,561,276	35,876	24,440	15,707	15,060
서울	546,089	7,386	4,936	3,080	2,651
인천	209,283	2,667	1,910	1,276	1,342
경기	713,627	8,352	5,676	3,803	3,864
대구	169,197	1,836	1,375	986	976
경북	203,083	1,443	1,058	675	652
경남	218,522	1,189	698	457	484
부산	251,488	2,587	1,833	1,127	889
울산	76,569	324	175	98	107
대전	101,755	1,380	1,022	589	663
세종	12,031	140	136	102	95
충남	160,419	1,388	774	484	395
충북	117,391	939	661	416	399
광주	114,238	1,144	779	509	500
전남	189,617	1,692	1,125	758	811
전북	156,437	1,111	740	409	333
강원	148,057	1,118	741	401	345
제주	48,998	212	119	63	41
기타	124,475	968	682	474	513

〈부표 13〉 시도별 적립금액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 명)

구분	전체	50만 원 미만	100만 원 미만	200만 원 미만	300만 원 미만	400만 원 미만
2017년	5,253,833	615,717	428,631	168,062	91,465	57,362
서울	847,363	105,058	78,313	33,861	18,619	11,685
인천	313,786	36,818	26,144	10,707	6,161	3,972
경기	1,096,685	131,980	97,938	38,788	21,096	13,101
대구	243,076	28,106	18,819	7,358	4,115	2,637
경북	284,257	32,799	21,466	7,887	4,020	2,474
경남	301,973	32,600	21,046	6,887	3,321	1,851
부산	359,800	39,937	27,565	10,543	5,653	3,722
울산	114,615	13,228	8,560	3,166	1,667	859
대전	152,826	18,640	13,148	5,278	3,088	2,060
세종	21,372	2,822	2,087	810	397	269
충남	234,052	27,006	18,665	7,181	3,914	2,537
충북	169,209	19,808	13,671	5,164	2,630	1,631
광주	165,407	19,972	13,442	5,001	2,824	1,738
전남	264,490	28,773	19,248	7,427	4,388	2,918
전북	219,573	26,429	17,170	6,233	3,147	1,906
강원	208,883	23,628	15,551	5,745	3,143	1,944
제주	69,611	8,254	5,429	1,837	867	434
기타	186,855	19,859	10,369	4,189	2,415	1,624

구분	500만 원 미만	600만 원 미만	700만 원 미만	800만 원 미만	800만 원 이상
2017년	3,778,808	39,256	27,895	19,624	27,013
서울	576,700	8,093	5,870	4,034	5,130
인천	221,100	2,851	2,200	1,502	2,331
경기	766,439	9,209	6,613	4,663	6,858
대구	175,912	1,870	1,418	1,129	1,712
경북	211,109	1,564	1,075	786	1,077
경남	232,812	1,212	840	568	836
부산	264,509	2,614	1,997	1,493	1,767
울산	86,094	479	223	154	185
대전	106,181	1,514	1,053	793	1,071
세종	14,403	181	132	98	173
충남	170,769	1,611	1,000	620	749
충북	123,385	994	721	513	692
광주	118,839	1,200	868	632	891
전남	196,421	1,904	1,244	873	1,294
전북	161,386	1,296	836	535	635
강원	155,635	1,245	823	554	615
제주	52,250	243	130	93	74
기타	144,864	1,176	852	584	923

〈부표 13〉 시도별 적립금액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구분	전체	50만 원 미만	100만 원 미만	200만 원 미만	300만 원 미만	400만 원 미만
2018년	5,534,109	659,831	461,655	178,550	95,859	60,233
서울	889,214	111,393	82,904	35,013	19,434	12,296
인천	329,663	38,982	28,031	11,142	6,298	4,143
경기	1,169,127	141,802	106,831	42,510	22,692	14,102
대구	252,059	29,554	19,480	7,652	4,129	2,784
경북	294,050	34,406	22,166	8,077	4,134	2,510
경남	318,095	36,002	24,052	7,767	3,512	1,994
부산	378,172	43,237	30,380	11,281	5,957	3,887
울산	123,281	15,142	10,389	3,549	1,863	1,061
대전	158,967	19,723	13,575	5,408	3,199	2,010
세종	23,861	3,181	2,403	840	451	278
충남	244,642	28,681	19,813	7,564	3,926	2,520
충북	177,566	21,184	14,699	5,380	2,776	1,668
광주	172,534	20,981	13,987	5,326	2,956	1,848
전남	273,743	30,324	20,183	7,508	4,343	2,894
전북	226,361	27,383	17,952	6,479	3,256	1,974
강원	216,461	24,786	16,140	5,917	3,147	1,932
제주	72,834	8,670	5,705	1,925	925	473
기타	213,479	24,400	12,965	5,212	2,861	1,859

구분	500만 원 미만	600만 원 미만	700만 원 미만	800만 원 미만	800만 원 이상
2018년	3,945,317	41,469	30,080	21,962	39,153
서울	600,722	8,547	6,440	4,684	7,781
인천	230,906	2,951	2,212	1,709	3,289
경기	809,016	9,748	7,289	5,240	9,897
대구	181,682	1,904	1,384	1,179	2,311
경북	217,699	1,666	1,138	790	1,464
경남	240,777	1,331	873	617	1,170
부산	274,465	2,675	2,027	1,568	2,695
울산	89,954	581	302	171	269
대전	109,998	1,574	1,153	796	1,531
세종	16,043	188	132	119	226
충남	177,340	1,749	1,142	782	1,125
충북	128,517	1,070	709	572	991
광주	123,236	1,305	927	687	1,281
전남	202,315	2,076	1,347	975	1,778
전북	165,536	1,272	960	617	932
강원	160,862	1,266	910	602	899
제주	54,531	250	143	89	123
기타	161,718	1,316	992	765	1,391

〈부표 13〉 시도별 적립금액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 명)

구분	전체	50만 원 미만	100만 원 미만	200만 원 미만	300만 원 미만	400만 원 미만
2019년	5,775,777	698,209	474,157	186,555	100,057	61,763
서울	923,410	115,632	84,401	35,631	20,209	12,648
인천	343,357	41,464	28,455	11,565	6,291	4,095
경기	1,233,493	151,959	110,483	45,465	24,272	14,907
대구	260,197	31,056	19,675	7,673	4,172	2,736
경북	302,778	35,863	22,134	7,930	4,200	2,471
경남	330,281	37,846	24,917	8,557	3,913	2,063
부산	392,678	45,496	31,235	11,943	6,174	3,840
울산	129,336	16,139	10,892	3,968	2,009	1,104
대전	164,962	20,761	13,834	5,551	3,155	2,032
세종	25,812	3,458	2,558	925	471	296
충남	253,681	30,127	20,052	7,745	4,074	2,417
충북	183,415	22,262	14,735	5,552	2,853	1,667
광주	178,991	21,904	14,095	5,413	3,014	1,931
전남	283,103	31,785	20,548	7,874	4,208	2,887
전북	231,696	28,298	17,778	6,392	3,301	1,950
강원	222,929	26,001	16,318	5,906	3,101	1,937
제주	75,928	9,106	5,776	1,955	937	506
기타	239,730	29,052	16,271	6,510	3,703	2,276

구분	500만 원 미만	600만 원 미만	700만 원 미만	800만 원 미만	800만 원 이상
2019년	4,107,418	42,382	31,171	23,288	50,777
서울	623,869	8,899	6,661	4,993	10,467
인천	240,371	3,041	2,161	1,769	4,145
경기	850,343	10,106	7,487	5,680	12,791
대구	187,619	1,901	1,380	1,118	2,867
경북	224,773	1,633	1,188	811	1,775
경남	248,670	1,321	924	655	1,415
부산	284,389	2,655	1,997	1,547	3,402
울산	93,652	645	367	218	342
대전	114,158	1,527	1,168	880	1,896
세종	17,378	194	128	111	293
충남	183,860	1,756	1,198	905	1,547
충북	132,662	1,076	785	541	1,282
광주	127,970	1,311	1,006	705	1,642
전남	208,918	1,969	1,520	1,130	2,264
전북	169,891	1,270	920	661	1,235
강원	165,693	1,252	920	631	1,170
제주	56,986	246	160	90	166
기타	176,216	1,580	1,201	843	2,078

〈부표 14〉 시도별 적립일수별 누적 피공제자수

(단위 : 명)

구분	전체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2015년	4,559,881	3,768,218	403,531	157,322	83,607	52,390
서울	741,200	592,051	74,855	30,229	15,976	10,405
인천	274,282	222,427	24,816	10,249	5,657	3,767
경기	919,206	748,073	86,417	33,479	18,122	11,390
대구	219,746	181,318	18,756	7,318	3,980	2,556
경북	256,258	216,427	21,425	7,744	3,904	2,376
경남	260,128	226,129	19,210	6,660	3,163	1,842
부산	317,105	264,940	25,483	10,252	5,618	3,647
울산	90,718	78,110	7,356	2,811	1,217	525
대전	137,795	110,838	12,668	5,275	3,035	2,083
세종	15,007	11,664	1,641	662	328	228
충남	200,666	167,051	17,797	6,919	3,701	2,175
충북	150,893	125,923	13,199	4,983	2,587	1,543
광주	150,339	124,353	13,396	5,029	2,658	1,694
전남	243,768	203,034	20,443	8,508	4,514	2,623
전북	203,751	170,721	18,133	6,470	3,420	1,974
강원	187,604	158,434	15,525	5,826	3,049	1,846
제주	60,755	51,880	5,308	1,806	802	445
기타	130,660	114,845	7,103	3,102	1,876	1,271

구분	6년 미만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9년 이상
2015년	35,039	24,189	16,321	10,255	9,009
서울	6,921	4,597	2,957	1,769	1,440
인천	2,556	1,864	1,224	876	846
경기	7,812	5,467	3,745	2,503	2,198
대구	1,949	1,387	1,104	712	666
경북	1,554	1,129	753	486	460
경남	1,106	831	535	351	301
부산	2,691	1,896	1,352	703	523
울산	300	177	86	65	71
대전	1,411	992	665	431	397
세종	165	119	86	61	53
충남	1,205	764	489	288	277
충북	975	658	429	301	295
광주	1,166	817	603	341	282
전남	1,675	1,240	826	481	424
전북	1,246	774	489	308	216
강원	1,212	734	445	260	273
제주	246	124	86	32	26
기타	849	619	447	287	261

〈부표 14〉 시도별 적립일수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 명)

구분	전체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2016년	4,892,992	4,037,252	429,332	167,694	89,795	55,367
서울	791,593	628,974	78,978	33,106	17,638	10,871
인천	293,263	237,572	26,216	10,813	5,937	3,943
경기	1,004,048	813,921	94,185	37,364	19,789	12,331
대구	231,791	191,366	19,596	7,400	4,259	2,611
경북	271,066	228,815	22,672	8,056	4,187	2,410
경남	279,354	242,633	20,728	7,083	3,300	1,941
부산	337,212	282,226	26,938	10,431	5,727	3,640
울산	99,784	86,016	7,694	3,043	1,463	694
대전	145,369	116,893	13,424	5,279	3,162	2,070
세종	17,968	14,142	1,899	736	395	217
충남	217,929	181,307	18,810	7,469	4,035	2,461
충북	159,619	132,857	14,122	5,220	2,672	1,668
광주	157,713	130,304	13,955	5,189	2,781	1,780
전남	254,351	212,048	20,866	8,376	4,761	2,875
전북	211,397	177,198	18,619	6,615	3,378	2,043
강원	197,904	166,749	16,454	6,081	3,184	1,934
제주	65,234	55,729	5,584	1,938	903	467
기타	157,397	138,502	8,592	3,495	2,224	1,411

구분	6년 미만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9년 이상
2016년	37,391	26,754	19,067	13,390	16,950
서울	7,647	5,329	3,705	2,488	2,857
인천	2,722	2,040	1,464	1,036	1,520
경기	8,390	6,198	4,391	3,250	4,229
대구	1,879	1,453	1,130	861	1,236
경북	1,613	1,131	850	568	764
경남	1,277	774	629	436	553
부산	2,619	2,041	1,441	1,083	1,066
울산	352	197	130	72	123
대전	1,445	1,093	763	522	718
세종	175	122	101	77	104
충남	1,478	909	565	415	480
충북	997	724	487	346	526
광주	1,135	888	649	482	550
전남	1,803	1,286	932	638	766
전북	1,265	881	587	380	431
강원	1,299	836	602	312	453
제주	264	156	95	51	47
기타	1,031	696	546	373	527

〈부표 14〉 시도별 적립일수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 명)

구분	전체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2017년	5,253,833	4,323,415	464,942	178,340	95,790	59,218
서울	847,363	670,205	84,380	35,320	19,211	11,956
인천	313,786	253,647	28,205	11,416	6,266	4,103
경기	1,096,685	883,631	105,665	40,921	21,986	13,330
대구	243,076	200,218	20,691	7,876	4,327	2,765
경북	284,257	239,786	23,762	8,412	4,322	2,529
경남	301,973	261,348	23,218	7,596	3,627	1,986
부산	359,800	300,055	29,611	11,076	5,939	3,760
울산	114,615	98,347	9,088	3,300	1,773	920
대전	152,826	122,748	14,131	5,496	3,140	2,131
세종	21,372	17,037	2,162	858	407	258
충남	234,052	194,812	20,175	7,688	4,131	2,634
충북	169,209	140,612	14,973	5,519	2,831	1,732
광주	165,407	136,226	14,709	5,412	2,963	1,855
전남	264,490	221,042	21,238	8,230	4,756	3,024
전북	219,573	184,082	19,156	6,740	3,441	2,052
강원	208,883	176,280	17,144	6,186	3,284	2,011
제주	69,611	59,654	5,829	1,976	934	520
기타	186,855	163,685	10,805	4,318	2,452	1,652

구분	6년 미만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9년 이상
2017년	40,046	28,766	21,267	15,599	26,450
서울	8,079	6,038	4,313	3,132	4,729
인천	2,838	2,178	1,662	1,220	2,251
경기	9,222	6,650	4,969	3,658	6,653
대구	1,864	1,417	1,190	905	1,823
경북	1,716	1,133	885	632	1,080
경남	1,324	906	633	487	848
부산	2,705	1,955	1,632	1,196	1,871
울산	508	232	173	104	170
대전	1,572	1,113	817	617	1,061
세종	177	124	104	89	156
충남	1,613	1,112	663	468	756
충북	1,120	718	570	377	757
광주	1,204	911	699	528	900
전남	1,985	1,387	927	759	1,142
전북	1,390	927	644	466	675
강원	1,317	946	634	440	641
제주	273	175	107	64	79
기타	1,139	844	645	457	858

〈부표 14〉 시도별 적립일수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 명)

구분	전체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2018년	5,534,109	4,543,130	494,736	187,673	99,478	61,633
서울	889,214	701,975	88,571	36,320	19,972	12,434
인천	329,663	266,107	29,982	11,746	6,415	4,233
경기	1,169,127	937,666	114,149	44,364	23,468	14,330
대구	252,059	207,932	21,179	8,114	4,323	2,844
경북	294,050	248,510	24,214	8,570	4,339	2,611
경남	318,095	273,267	26,018	8,324	3,773	2,100
부산	378,172	313,893	32,269	11,749	6,207	3,876
울산	123,281	104,303	10,843	3,677	1,913	1,102
대전	158,967	127,988	14,377	5,666	3,212	2,084
세종	23,861	19,087	2,441	884	460	277
충남	244,642	203,442	21,177	8,004	4,141	2,559
충북	177,566	147,451	15,883	5,694	2,914	1,780
광주	172,534	141,958	15,135	5,664	3,062	1,964
전남	273,743	228,980	21,935	8,310	4,658	2,958
전북	226,361	189,715	19,617	6,941	3,563	2,097
강원	216,461	183,107	17,530	6,308	3,228	1,995
제주	72,834	62,487	6,042	2,051	953	547
기타	213,479	185,262	13,374	5,287	2,877	1,842

구분	6년 미만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9년 이상
2018년	42,209	30,131	22,705	17,015	35,399
서울	8,580	6,295	4,918	3,442	6,707
인천	2,962	2,193	1,712	1,348	2,965
경기	9,723	7,105	5,394	4,051	8,877
대구	1,932	1,424	1,077	959	2,275
경북	1,757	1,185	869	634	1,361
경남	1,347	988	677	493	1,108
부산	2,781	2,017	1,527	1,293	2,560
울산	599	299	207	103	235
대전	1,574	1,139	896	656	1,375
세종	179	130	97	103	203
충남	1,818	1,145	818	525	1,013
충북	1,146	792	519	467	920
광주	1,313	930	739	549	1,220
전남	2,156	1,437	1,013	750	1,546
전북	1,349	954	720	520	885
강원	1,348	968	664	474	839
제주	298	166	113	67	110
기타	1,347	964	745	581	1,200

〈부표 14〉 시도별 적립일수별 누적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 명)

구분	전체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2019년	5,775,777	4,760,785	500,153	192,953	101,870	62,672
서울	923,410	732,133	88,949	36,709	20,296	12,765
인천	343,357	279,136	29,915	12,006	6,387	4,121
경기	1,233,493	992,938	116,247	46,728	24,634	14,988
대구	260,197	216,160	21,069	7,962	4,314	2,786
경북	302,778	257,821	23,837	8,359	4,278	2,550
경남	330,281	283,860	26,566	8,887	4,051	2,158
부산	392,678	327,308	32,522	12,198	6,338	3,858
울산	129,336	109,475	11,130	3,971	1,988	1,135
대전	164,962	133,694	14,492	5,679	3,170	2,076
세종	25,812	20,787	2,569	937	473	293
충남	253,681	212,132	21,140	8,058	4,212	2,453
충북	183,415	153,267	15,646	5,801	2,917	1,773
광주	178,991	148,119	15,016	5,671	3,121	2,011
전남	283,103	237,806	22,092	8,470	4,458	2,931
전북	231,696	195,541	19,266	6,765	3,521	2,042
강원	222,929	189,766	17,409	6,241	3,164	1,951
제주	75,928	65,562	6,045	2,045	948	537
기타	239,730	205,280	16,243	6,466	3,600	2,244

구분	6년 미만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9년 이상
2019년	42,345	30,999	23,119	17,995	42,886
서울	8,767	6,475	5,015	3,895	8,406
인천	3,047	2,133	1,690	1,424	3,498
경기	10,001	7,342	5,491	4,328	10,796
대구	1,962	1,357	1,074	857	2,656
경북	1,677	1,205	847	670	1,534
경남	1,322	978	686	512	1,261
부산	2,645	2,001	1,544	1,210	3,054
울산	645	387	203	142	260
대전	1,501	1,148	899	679	1,624
세종	198	118	103	85	249
충남	1,729	1,244	864	613	1,236
충북	1,106	816	523	437	1,129
광주	1,287	981	742	578	1,465
전남	2,053	1,546	1,090	805	1,852
전북	1,310	948	684	524	1,095
강원	1,241	1,010	661	492	994
제주	290	177	117	78	129
기타	1,564	1,133	886	666	1,648

〈부표 15〉 시도별 성별 누적 피공제자수

(단위 : 명)

구분	2015년	남성	여성	2016년	남성	여성	2017년	남성	여성
합계	4,559,881	3,897,319	662,562	4,892,992	4,170,677	722,315	5,253,833	4,462,183	791,650
서울	741,200	656,758	84,442	791,593	698,947	92,646	847,363	744,996	102,367
인천	274,282	234,785	39,497	293,263	250,270	42,993	313,786	266,561	47,225
경기	919,206	796,768	122,438	1,004,048	867,358	136,690	1,096,685	942,548	154,137
대구	219,746	187,165	32,581	231,791	196,597	35,194	243,076	205,229	37,847
경북	256,258	218,889	37,369	271,066	230,855	40,211	284,257	241,191	43,066
경남	260,128	219,933	40,195	279,354	236,070	43,284	301,973	255,004	46,969
부산	317,105	274,041	43,064	337,212	290,723	46,489	359,800	309,332	50,468
울산	90,718	77,247	13,471	99,784	84,854	14,930	114,615	96,858	17,757
대전	137,795	116,927	20,868	145,369	122,981	22,388	152,826	128,867	23,959
세종	15,007	12,703	2,304	17,968	15,102	2,866	21,372	17,905	3,467
충남	200,666	173,643	27,023	217,929	187,499	30,430	234,052	200,008	34,044
충북	150,893	129,263	21,630	159,619	136,410	23,209	169,209	144,039	25,170
광주	150,339	116,937	33,402	157,713	122,291	35,422	165,407	127,919	37,488
전남	243,768	194,400	49,368	254,351	202,597	51,754	264,490	210,480	54,010
전북	203,751	166,607	37,144	211,397	172,521	38,876	219,573	178,804	40,769
강원	187,604	160,228	27,376	197,904	168,832	29,072	208,883	177,762	31,121
제주	60,755	50,400	10,355	65,234	53,870	11,364	69,611	57,210	12,401
기타	130,660	110,625	20,035	157,397	132,900	24,497	186,855	157,470	29,385

구분	2018년	남성	여성	2019년	남성	여성
합계	5,534,109	4,682,436	851,673	5,775,777	4,871,423	904,354
서울	889,214	778,287	110,927	923,410	805,671	117,739
인천	329,663	278,895	50,768	343,357	289,534	53,823
경기	1,169,127	999,773	169,354	1,233,493	1,050,271	183,222
대구	252,059	212,105	39,954	260,197	218,227	41,970
경북	294,050	248,688	45,362	302,778	255,419	47,359
경남	318,095	267,962	50,133	330,281	277,329	52,952
부산	378,172	323,851	54,321	392,678	334,958	57,720
울산	123,281	103,783	19,498	129,336	108,646	20,690
대전	158,967	133,615	25,352	164,962	138,409	26,553
세종	23,861	19,860	4,001	25,812	21,484	4,328
충남	244,642	208,239	36,403	253,681	215,521	38,160
충북	177,566	150,455	27,111	183,415	154,920	28,495
광주	172,534	133,076	39,458	178,991	137,733	41,258
전남	273,743	217,392	56,351	283,103	224,213	58,890
전북	226,361	183,862	42,499	231,696	187,646	44,050
강원	216,461	183,695	32,766	222,929	188,682	34,247
제주	72,834	59,520	13,314	75,928	61,743	14,185
기타	213,479	179,378	34,101	239,730	201,017	38,713

## 〈부표 16〉 성별 적립금액별 누적 피공제자수

(단위 : 명)

구분	전체	50만 원 미만	100만 원 미만	200만 원 미만	300만 원 미만	400만 원 미만
2015년	4,559,881	3,344,421	510,071	364,484	145,499	78,777
남성	3,897,319	2,815,410	438,829	324,223	133,874	73,812
여성	662,562	529,011	71,242	40,261	11,625	4,965
2016년	4,892,992	3,561,276	554,683	390,895	156,849	85,105
남성	4,170,677	2,989,424	475,461	346,543	143,219	79,083
여성	722,315	571,852	79,222	44,352	13,630	6,022
2017년	5,253,833	3,778,808	615,717	428,631	168,062	91,465
남성	4,462,183	3,159,894	526,290	377,470	152,395	84,418
여성	791,650	618,914	89,427	51,161	15,667	7,047
2018년	5,534,109	3,945,317	659,831	461,655	178,550	95,859
남성	4,682,436	3,285,967	562,200	404,668	160,452	87,807
여성	851,673	659,350	97,631	56,987	18,098	8,052
2019년	5,775,777	4,107,418	698,209	474,157	186,555	100,057
남성	4,871,423	3,410,554	593,032	414,584	166,644	90,704
여성	904,354	696,864	105,177	59,573	19,911	9,353

구분	500만 원 미만	600만 원 미만	700만 원 미만	800만 원 미만	800만 원 이상
2015년	49,134	31,324	19,515	10,619	6,037
남성	46,415	29,920	18,719	10,278	5,839
여성	2,719	1,404	796	341	198
2016년	53,101	35,876	24,440	15,707	15,060
남성	49,966	33,981	23,345	15,079	14,576
여성	3,135	1,895	1,095	628	484
2017년	57,362	39,256	27,895	19,624	27,013
남성	53,527	36,986	26,410	18,755	26,038
여성	3,835	2,270	1,485	869	975
2018년	60,233	41,469	30,080	21,962	39,153
남성	55,831	38,740	28,328	20,849	37,594
여성	4,402	2,729	1,752	1,113	1,559
2019년	61,763	42,382	31,171	23,288	50,777
남성	56,836	39,354	29,130	21,973	48,612
여성	4,927	3,028	2,041	1,315	2,165

&lt;부표 17&gt; 성별 적립일수별 누적 피공제자수

(단위 : 명)

구분	전체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2015년	4,559,881	3,768,218	403,531	157,322	83,607	52,390
남성	3,897,319	3,179,019	356,347	143,955	78,065	49,371
여성	662,562	589,199	47,184	13,367	5,542	3,019
2016년	4,892,992	4,037,252	429,332	167,694	89,795	55,367
남성	4,170,677	3,396,505	378,258	152,467	83,193	52,116
여성	722,315	640,747	51,074	15,227	6,602	3,251
2017년	5,253,833	4,323,415	464,942	178,340	95,790	59,218
남성	4,462,183	3,624,500	407,557	161,187	88,200	55,231
여성	791,650	698,915	57,385	17,153	7,590	3,987
2018년	5,534,109	4,543,130	494,736	187,673	99,478	61,633
남성	4,682,436	3,794,330	432,218	168,337	90,954	57,077
여성	851,673	748,800	62,518	19,336	8,524	4,556
2019년	5,775,777	4,760,785	500,153	192,953	101,870	62,672
남성	4,871,423	3,965,245	435,787	172,141	92,309	57,624
여성	904,354	795,540	64,366	20,812	9,561	5,048

구분	6년 미만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9년 이상
2015년	35,039	24,189	16,321	10,255	9,009
남성	33,166	23,096	15,636	9,900	8,764
여성	1,873	1,093	685	355	245
2016년	37,391	26,754	19,067	13,390	16,950
남성	35,245	25,409	18,216	12,841	16,427
여성	2,146	1,345	851	549	523
2017년	40,046	28,766	21,267	15,599	26,450
남성	37,743	27,134	20,213	14,901	25,517
여성	2,303	1,632	1,054	698	933
2018년	42,209	30,131	22,705	17,015	35,399
남성	39,490	28,351	21,466	16,169	34,044
여성	2,719	1,780	1,239	846	1,355
2019년	42,345	30,999	23,119	17,995	42,886
남성	39,347	29,059	21,725	17,043	41,143
여성	2,998	1,940	1,394	952	1,743

〈부표 18〉 월별 연도별 적립일수

(단위 : 명)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109,710,223	127,133,960	144,006,934	138,015,761	132,278,816
1월	8,229,452	8,405,759	9,715,974	10,883,823	10,551,713
2월	6,511,295	7,541,898	10,577,743	9,305,291	8,476,964
3월	9,171,712	10,541,933	12,467,768	12,433,436	11,566,717
4월	9,129,922	10,462,544	12,120,569	12,319,383	11,715,524
5월	9,291,860	10,766,552	12,612,847	12,334,381	11,979,677
6월	9,590,391	11,145,434	12,606,751	12,158,152	11,329,476
7월	9,398,718	10,657,789	11,912,284	11,680,804	11,663,981
8월	9,306,456	11,069,322	12,226,888	10,939,938	11,148,955
9월	8,878,935	10,126,219	12,941,072	10,147,144	9,379,585
10월	10,551,868	12,016,329	11,426,492	12,610,500	12,147,589
11월	9,781,117	12,482,445	13,449,705	12,368,264	11,834,672
12월	9,868,497	11,917,736	11,948,841	10,834,645	10,483,963

〈부표 19〉 연도별 연령별 신규 외국인 피공제자수

(단위 : 명)

구분	전체	19세 이하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합계	643,855	1,520	22,649	63,847	79,431	79,548	85,449	94,447
1998년	0	0	0	0	0	0	0	0
1999년	0	0	0	0	0	0	0	0
2000년	0	0	0	0	0	0	0	0
2001년	0	0	0	0	0	0	0	0
2002년	4	0	0	0	0	0	1	3
2003년	1	0	0	0	0	0	0	0
2004년	3,990	2	78	283	679	780	682	490
2005년	2,822	1	43	140	294	463	548	499
2006년	23,564	32	260	1,126	2,450	3,949	5,071	4,259
2007년	32,000	57	512	1,676	2,946	5,258	6,022	5,672
2008년	48,205	93	874	2,681	4,189	6,992	7,887	8,369
2009년	40,199	78	1,043	2,473	3,648	5,478	6,443	7,077
2010년	22,441	48	778	1,590	2,212	2,793	3,295	3,740
2011년	26,870	64	934	2,069	2,422	2,770	3,702	4,778
2012년	31,581	70	985	2,337	2,894	3,267	4,531	5,203
2013년	40,600	109	1,512	4,614	4,677	4,436	5,737	6,149
2014년	47,727	90	1,720	5,881	5,272	4,833	6,170	7,069
2015년	45,015	96	1,738	6,030	5,675	4,822	5,284	6,064
2016년	64,646	227	2,575	9,350	9,720	7,383	7,412	8,199
2017년	83,092	352	3,918	10,370	12,715	10,010	8,726	10,334
2018년	69,783	201	2,997	7,643	10,911	8,760	7,329	8,797
2019년	61,315	0	2,682	5,584	8,727	7,554	6,609	7,745

〈부표 19〉 연도별 연령별 신규 외국인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 명)

구분	50~54세	55~59세	60~64세	65세	66~69세	70~79세	80세 이상
합계	88,653	67,750	45,735	4,353	8,024	1,708	741
1998년	0	0	0	0	0	0	0
1999년	0	0	0	0	0	0	0
2000년	0	0	0	0	0	0	0
2001년	0	0	0	0	0	0	0
2002년	0	0	0	0	0	0	0
2003년	0	1	0	0	0	0	0
2004년	423	384	149	10	23	7	0
2005년	415	302	78	6	25	8	0
2006년	3,631	2,113	506	39	98	16	14
2007년	4,989	3,299	1,245	84	161	56	23
2008년	7,819	5,402	3,238	192	353	96	20
2009년	6,461	4,409	2,494	143	308	99	45
2010년	3,599	2,651	1,352	125	183	55	20
2011년	4,391	3,542	1,586	210	314	71	17
2012년	4,808	3,985	2,656	298	420	99	28
2013년	5,442	4,356	2,711	238	501	97	21
2014년	6,813	5,154	3,708	369	488	117	43
2015년	5,824	4,954	3,523	332	524	114	35
2016년	8,220	5,388	4,567	432	882	170	121
2017년	10,590	7,737	6,221	616	1,173	207	123
2018년	8,093	6,911	5,937	648	1,253	228	75
2019년	7,135	7,162	5,764	611	1,318	268	156

〈부표 20〉 연도별 시도별 신규 외국인 피공제자수

(단위 : 명)

구분	전체	서울	인천	경기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울산
합계	643,855	210,664	33,760	216,834	7,296	12,692	18,065	11,132	10,408
1998년	0	0	0	0	0	0	0	0	0
1999년	0	0	0	0	0	0	0	0	0
2000년	0	0	0	0	0	0	0	0	0
2001년	0	0	0	0	0	0	0	0	0
2002년	4	1	0	0	1	0	0	1	0
2003년	1	1	0	0	0	0	0	0	0
2004년	3,990	1,683	193	1,282	49	146	94	49	50
2005년	2,822	1,259	140	957	22	43	46	32	16
2006년	23,564	11,274	1,056	7,148	317	354	325	289	220
2007년	32,000	15,090	1,615	9,879	395	572	427	355	314
2008년	48,205	21,359	2,473	16,475	504	695	623	541	521
2009년	40,199	16,744	2,280	14,010	389	563	721	546	422
2010년	22,441	8,984	1,700	7,596	181	317	360	282	242
2011년	26,870	10,769	1,784	9,211	184	440	450	364	252
2012년	31,581	12,317	1,803	10,407	204	446	762	588	597
2013년	40,600	14,602	2,103	13,375	396	679	1,208	738	866
2014년	47,727	15,925	2,289	15,961	570	998	1,500	726	913
2015년	45,015	12,941	2,151	14,714	795	1,322	1,645	892	960
2016년	64,646	15,798	2,996	21,291	788	1,847	2,796	1,270	1,280
2017년	83,092	19,677	3,906	28,833	758	1,814	3,601	1,745	1,778
2018년	69,783	16,671	3,586	24,328	824	1,209	2,192	1,449	1,179
2019년	61,315	15,569	3,685	21,367	919	1,247	1,315	1,265	798

〈부표 20〉 연도별 시도별 신규 외국인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 명)

구분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강원	제주	기타
합계	5,756	7,205	21,962	13,362	5,062	7,269	6,399	9,624	2,115	44,250
1998년	0	0	0	0	0	0	0	0	0	0
1999년	0	0	0	0	0	0	0	0	0	0
2000년	0	0	0	0	0	0	0	0	0	0
2001년	0	0	0	0	0	0	0	0	0	0
2002년	1	0	0	0	0	0	0	0	0	0
2003년	0	0	0	0	0	0	0	0	0	0
2004년	32	5	88	34	8	35	49	79	3	111
2005년	27	3	62	38	12	24	29	42	4	66
2006년	174	23	523	318	141	267	179	286	39	631
2007년	203	47	737	410	208	329	226	344	33	816
2008년	310	80	1,206	583	270	502	389	448	52	1,174
2009년	326	70	1,125	579	233	420	389	369	72	941
2010년	152	74	583	327	108	259	215	251	41	769
2011년	190	112	775	403	154	293	283	355	64	787
2012년	214	121	1,075	561	183	345	361	330	84	1,183
2013년	234	291	1,434	789	419	457	507	432	157	1,913
2014년	393	569	1,784	921	416	566	465	736	150	2,845
2015년	400	677	1,924	1,045	318	501	371	523	218	3,618
2016년	492	1,318	2,828	1,590	482	658	675	969	246	7,322
2017년	776	1,608	3,164	2,180	614	930	728	1,778	318	8,884
2018년	753	1,256	2,706	2,213	776	866	846	1,507	379	7,043
2019년	1,079	951	1,948	1,371	720	817	687	1,175	255	6,147

〈부표 21〉 연도별 적립금액별 신규 외국인 피공제자수

(단위 : 명)

구분	전체	50만 원 미만	100만 원 미만	200만 원 미만	300만 원 미만	400만 원 미만
합계	643,855	357,139	84,511	108,018	51,270	21,347
1998년	0	0	0	0	0	0
1999년	0	0	0	0	0	0
2000년	0	0	0	0	0	0
2001년	0	0	0	0	0	0
2002년	4	4	0	0	0	0
2003년	1	1	0	0	0	0
2004년	3,990	2,356	330	543	291	165
2005년	2,822	1,432	342	422	263	137
2006년	23,564	9,909	3,059	4,215	2,400	1,387
2007년	32,000	15,206	3,976	5,605	2,889	1,489
2008년	48,205	25,231	5,797	8,505	3,946	1,900
2009년	40,199	24,470	4,054	5,879	2,699	1,281
2010년	22,441	14,220	2,032	3,124	1,448	694
2011년	26,870	14,753	2,514	4,539	2,459	1,157
2012년	31,581	16,707	2,956	5,307	2,986	1,641
2013년	40,600	19,346	4,336	7,610	4,509	2,330
2014년	47,727	20,987	5,335	9,884	6,273	2,905
2015년	45,015	19,910	5,859	9,685	5,718	2,610
2016년	64,646	31,975	9,269	13,219	7,138	2,550
2017년	83,092	45,851	12,970	16,320	6,826	1,056
2018년	69,783	45,792	11,860	10,707	1,375	45
2019년	61,315	48,989	9,822	2,454	50	0

〈부표 21〉 연도별 적립금액별 신규 외국인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 명)

구분	500만 원 미만	600만 원 미만	700만 원 미만	800만 원 미만	800만 원 이상
합계	9,591	5,050	2,968	1,724	2,237
1998년	0	0	0	0	0
1999년	0	0	0	0	0
2000년	0	0	0	0	0
2001년	0	0	0	0	0
2002년	0	0	0	0	0
2003년	0	0	0	0	0
2004년	95	69	45	27	69
2005년	68	48	42	24	44
2006년	796	499	409	298	592
2007년	906	595	461	338	535
2008년	974	632	447	315	458
2009년	682	443	309	184	198
2010년	357	234	140	92	100
2011년	604	383	216	139	106
2012년	903	525	315	158	83
2013년	1,312	671	333	112	41
2014년	1,439	661	202	31	10
2015년	936	245	46	5	1
2016년	453	39	2	1	0
2017년	62	6	1	0	0
2018년	4	0	0	0	0
2019년	0	0	0	0	0

〈부표 22〉 연도별 적립일수별 신규 외국인 피공제자수

(단위 : 명)

구분	전체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합계	643,855	436,212	110,433	52,679	22,093	9,935
1998년	0	0	0	0	0	0
1999년	0	0	0	0	0	0
2000년	0	0	0	0	0	0
2001년	0	0	0	0	0	0
2002년	4	4	0	0	0	0
2003년	1	1	0	0	0	0
2004년	3,990	2,527	537	366	188	133
2005년	2,822	1,570	492	304	174	96
2006년	23,564	10,792	4,729	2,983	1,823	1,060
2007년	32,000	16,989	6,438	3,501	1,835	1,041
2008년	48,205	28,859	9,350	4,657	2,252	1,127
2009년	40,199	27,770	6,223	2,959	1,402	691
2010년	22,441	16,081	3,236	1,485	721	352
2011년	26,870	17,162	4,646	2,475	1,171	595
2012년	31,581	19,663	5,332	3,015	1,646	887
2013년	40,600	23,710	7,685	4,514	2,313	1,294
2014년	47,727	26,424	9,935	6,267	2,894	1,402
2015년	45,015	25,897	9,771	5,762	2,484	852
2016년	64,646	41,507	13,394	7,002	2,355	363
2017년	83,092	59,358	16,551	6,330	810	40
2018년	69,783	58,468	10,258	1,030	25	2
2019년	61,315	59,430	1,856	29	0	0

〈부표 22〉 연도별 적립일수별 신규 외국인 피공제자수 (계속)

(단위 : 명)

구분	6년 미만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9년 이상
합계	5,188	2,988	1,843	1,138	1,346
1998년	0	0	0	0	0
1999년	0	0	0	0	0
2000년	0	0	0	0	0
2001년	0	0	0	0	0
2002년	0	0	0	0	0
2003년	0	0	0	0	0
2004년	72	61	26	33	47
2005년	54	43	35	17	37
2006년	636	442	362	278	459
2007년	692	497	384	281	342
2008년	669	459	336	244	252
2009년	448	308	205	92	101
2010년	237	149	88	57	35
2011년	368	226	130	56	41
2012년	515	306	147	56	14
2013년	655	295	101	18	15
2014년	604	169	23	6	3
2015년	214	30	5	0	0
2016년	22	2	1	0	0
2017년	2	1	0	0	0
2018년	0	0	0	0	0
2019년	0	0	0	0	0

〈부표 23〉 연도별 성별 신규 외국인 피공제자수

(단위 : 명)

구분	전체	남성	여성
합계	643,855	573,227	70,628
1998년	0	0	0
1999년	0	0	0
2000년	0	0	0
2001년	0	0	0
2002년	4	2	2
2003년	1	1	0
2004년	3,990	3,701	289
2005년	2,822	2,575	247
2006년	23,564	21,643	1,921
2007년	32,000	29,327	2,673
2008년	48,205	44,328	3,877
2009년	40,199	36,173	4,026
2010년	22,441	19,986	2,455
2011년	26,870	24,271	2,599
2012년	31,581	28,688	2,893
2013년	40,600	36,562	4,038
2014년	47,727	42,243	5,484
2015년	45,015	39,705	5,310
2016년	64,646	57,761	6,885
2017년	83,092	72,949	10,143
2018년	69,783	59,755	10,028
2019년	61,315	53,557	7,758

〈부표 24〉 연도별 퇴직공제금 지급 피공제자 및 금액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피공제자수	퇴직공제금 지급액
합계	965,277	2,148,502
1999년	3	2
2000년	638	512
2001년	3,836	3,599
2002년	5,046	5,268
2003년	6,631	7,325
2004년	11,430	12,782
2005년	15,091	17,073
2006년	15,966	18,088
2007년	11,949	14,322
2008년	12,775	16,811
2009년	20,795	28,714
2010년	23,366	37,852
2011년	27,462	48,722
2012년	63,566	90,087
2013년	66,780	124,143
2014년	76,122	154,804
2015년	80,099	188,742
2016년	92,727	222,168
2017년	100,774	266,779
2018년	124,773	350,944
2019년	205,448	539,766

〈부표 25〉 연도별 연령별 퇴직공제금 지급자수

(단위 : 명)

구분	전체	19세 이하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합계	965,277	210	5,903	23,532	37,640	55,599	74,830
1999년	3	0	1	0	1	0	1
2000년	638	5	38	77	73	85	86
2001년	3,836	18	184	428	389	370	433
2002년	5,046	22	238	543	456	449	480
2003년	6,631	16	305	650	737	600	631
2004년	11,430	21	409	905	1,115	988	1,042
2005년	15,091	27	420	1,036	1,334	1,293	1,379
2006년	15,966	10	261	842	1,302	1,453	1,505
2007년	11,949	4	139	579	882	1,069	1,048
2008년	12,775	0	85	505	810	1,237	1,175
2009년	20,795	0	70	492	992	1,665	1,893
2010년	23,366	1	69	468	1,067	1,707	2,086
2011년	27,462	2	83	481	1,091	1,924	2,578
2012년	63,566	6	111	766	2,149	3,762	5,755
2013년	66,780	5	164	968	2,181	3,819	6,177
2014년	76,122	7	240	1,131	2,122	3,340	6,026
2015년	80,099	6	329	1,482	2,715	4,105	6,432
2016년	92,727	8	334	1,614	3,006	4,504	6,722
2017년	100,774	11	490	2,048	3,514	5,375	7,500
2018년	124,773	21	870	3,552	4,671	6,916	8,769
2019년	205,448	20	1,063	4,965	7,033	10,938	13,112

〈부표 25〉 연도별 연령별 퇴직공제금 지급자수 (계속)

(단위 : 명)

구분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65세	66~69세	70세 이상
합계	96,712	108,657	110,301	286,906	33,111	80,739	51,137
1999년	0	0	0	0	0	0	0
2000년	54	67	91	45	7	7	3
2001년	362	446	554	472	58	97	25
2002년	472	538	654	801	97	236	60
2003년	615	631	692	1,141	144	364	105
2004년	1,075	1,001	1,248	2,305	320	779	222
2005년	1,547	1,489	1,819	3,104	399	974	270
2006년	1,645	1,646	2,033	3,243	489	1,150	387
2007년	1,282	1,176	1,512	2,679	440	850	289
2008년	1,406	1,304	1,467	2,939	497	1,058	292
2009년	2,059	2,100	2,416	5,522	853	2,114	619
2010년	2,255	2,462	2,868	6,282	818	2,409	874
2011년	2,696	3,075	3,496	7,447	928	2,633	1,028
2012년	6,661	7,406	6,789	19,371	2,392	5,497	2,901
2013년	7,377	8,858	7,605	20,135	2,478	4,564	2,449
2014년	7,214	8,369	7,426	23,476	3,345	7,651	5,775
2015년	8,148	9,359	8,670	27,101	2,725	5,799	3,228
2016년	8,748	9,997	9,501	28,701	3,438	9,792	6,362
2017년	10,973	12,474	12,698	31,703	3,252	7,181	3,555
2018년	12,869	14,238	15,200	38,328	4,008	9,663	5,668
2019년	19,254	22,021	23,562	62,111	6,423	17,921	17,025

〈부표 26〉 연도별 시도별 퇴직공제금 지급자수

(단위 : 명)

구분	전체	서울	인천	경기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울산
합계	965,277	184,282	61,168	199,980	52,254	49,216	44,266	77,699	14,436
1999년	3	0	2	0	0	0	0	0	0
2000년	638	172	73	143	56	22	11	22	3
2001년	3,836	717	227	701	249	185	173	220	69
2002년	5,046	593	228	853	259	334	256	338	75
2003년	6,631	759	309	1,171	486	486	397	355	121
2004년	11,430	1,276	496	1,954	729	778	662	942	193
2005년	15,091	1,636	754	2,504	898	952	909	1,534	246
2006년	15,966	1,792	759	2,560	1,043	1,013	896	1,436	200
2007년	11,949	1,313	586	1,867	809	867	711	1,204	128
2008년	12,775	1,685	619	1,847	1,385	840	657	1,352	152
2009년	20,795	3,089	1,036	3,280	2,475	1,201	887	2,439	155
2010년	23,366	3,995	1,289	3,958	2,248	1,241	898	2,378	216
2011년	27,462	5,328	1,790	5,115	2,199	1,397	1,050	2,494	313
2012년	63,566	14,666	4,055	12,993	4,320	3,031	2,140	5,169	521
2013년	66,780	16,522	4,612	13,895	3,324	2,727	2,367	4,795	628
2014년	76,122	15,601	4,690	14,397	4,095	4,087	3,323	6,702	1,120
2015년	80,099	16,670	5,262	15,848	3,990	3,910	3,176	6,958	1,133
2016년	92,727	17,897	5,957	18,385	4,471	4,893	4,137	7,450	1,496
2017년	100,774	20,656	6,443	21,108	4,691	5,002	4,470	7,377	1,446
2018년	124,773	24,043	8,454	28,871	5,683	6,020	5,922	10,057	2,456
2019년	205,448	35,872	13,527	48,530	8,844	10,230	11,224	14,477	3,765

〈부표 26〉 연도별 시도별 퇴직공제금 지급자수 (계속)

(단위 : 명)

구분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강원	제주	기타
합계	33,181	3,793	40,099	30,261	32,138	45,869	42,936	34,442	8,030	11,227
1999년	0	0	0	0	0	1	0	0	0	0
2000년	51	1	14	12	7	15	13	17	3	3
2001년	189	6	234	145	178	136	223	148	30	6
2002년	242	17	226	255	244	333	413	267	109	4
2003년	296	10	298	344	395	421	429	307	43	4
2004년	550	20	528	527	595	841	792	453	57	37
2005년	800	22	674	571	726	1,011	906	626	99	223
2006년	857	31	705	688	970	1,109	1,178	541	96	92
2007년	625	17	500	542	676	806	773	429	44	52
2008년	502	14	453	455	697	737	819	490	47	24
2009년	763	36	664	547	1,099	1,159	1,142	677	76	70
2010년	848	54	778	747	1,186	1,241	1,203	827	141	118
2011년	1,022	41	823	726	1,322	1,400	1,184	925	207	126
2012년	2,224	115	1,860	1,671	2,430	2,658	2,643	2,155	388	527
2013년	2,299	176	2,391	1,819	2,152	3,001	2,894	2,151	435	592
2014년	2,751	255	3,016	2,195	2,526	4,075	3,477	2,627	537	648
2015년	2,887	350	3,270	2,435	2,461	3,802	3,730	2,782	554	881
2016년	3,022	381	4,221	2,749	2,629	4,667	4,083	3,583	794	1,912
2017년	3,235	490	4,450	2,948	2,612	4,318	3,693	3,601	851	3,383
2018년	3,741	643	5,656	3,765	3,168	4,738	4,659	4,250	1,161	1,486
2019년	6,277	1,114	9,338	7,120	6,065	9,400	8,682	7,586	2,358	1,039

〈부표 27〉 연도별 지급금액별 퇴직공제금 지급자수

(단위 : 명)

구분	전체	100만 원 미만	200만 원 미만	300만 원 미만	400만 원 미만	500만 원 미만	600만 원 미만	700만 원 미만
합계	965,277	201,553	447,237	155,209	70,813	37,124	21,340	12,876
1999년	3	3	0	0	0	0	0	0
2000년	638	521	116	1	0	0	0	0
2001년	3,836	2,692	1,116	28	0	0	0	0
2002년	5,046	3,011	1,910	124	1	0	0	0
2003년	6,631	3,681	2,567	353	30	0	0	0
2004년	11,430	6,305	4,297	726	94	8	0	0
2005년	15,091	8,258	5,593	1,029	180	30	1	0
2006년	15,966	8,883	5,657	1,136	240	45	5	0
2007년	11,949	6,743	4,188	802	193	20	3	0
2008년	12,775	6,830	4,723	993	186	38	5	0
2009년	20,795	9,869	8,430	1,949	446	82	18	1
2010년	23,366	9,281	10,381	2,773	720	171	38	2
2011년	27,462	8,944	12,344	4,324	1,373	377	75	15
2012년	63,566	27,634	23,109	8,280	3,064	1,067	317	75
2013년	66,780	17,154	29,648	11,805	4,964	2,081	787	240
2014년	76,122	18,106	33,796	12,608	6,047	3,055	1,518	641
2015년	80,099	12,644	36,600	14,467	7,491	4,300	2,359	1,293
2016년	92,727	13,735	43,793	16,589	7,972	4,526	2,801	1,635
2017년	100,774	7,000	50,873	19,682	9,497	5,280	3,283	2,155
2018년	124,773	6,204	64,019	23,410	11,881	6,932	4,418	2,927
2019년	205,448	24,055	104,077	34,130	16,434	9,112	5,712	3,892

〈부표 27〉 연도별 지급금액별 퇴직공제금 지급자수 (계속)

구분	(단위 : 명)								
	800만 원 미만	900만 원 미만	1,000만 원 미만	1,100만 원 미만	1,200만 원 미만	1,300만 원 미만	1,400만 원 미만	1,500만 원 이상	
합계	7,915	5,015	2,978	1,705	889	376	160	87	
1999년	0	0	0	0	0	0	0	0	
2000년	0	0	0	0	0	0	0	0	
2001년	0	0	0	0	0	0	0	0	
2002년	0	0	0	0	0	0	0	0	
2003년	0	0	0	0	0	0	0	0	
2004년	0	0	0	0	0	0	0	0	
2005년	0	0	0	0	0	0	0	0	
2006년	0	0	0	0	0	0	0	0	
2007년	0	0	0	0	0	0	0	0	
2008년	0	0	0	0	0	0	0	0	
2009년	0	0	0	0	0	0	0	0	
2010년	0	0	0	0	0	0	0	0	
2011년	8	2	0	0	0	0	0	0	
2012년	15	5	0	0	0	0	0	0	
2013년	79	17	4	1	0	0	0	0	
2014년	245	73	24	9	0	0	0	0	
2015년	564	263	81	27	9	1	0	0	
2016년	881	468	211	80	25	11	0	0	
2017년	1,362	838	465	221	81	26	10	1	
2018년	1,941	1,329	874	483	231	76	31	17	
2019년	2,820	2,020	1,319	884	543	262	119	69	

〈부표 28〉 연도별 적립일수별 퇴직공제금 지급자수

구분	(단위 : 명)					
	전체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합계	965,277	29,628	514,432	192,160	93,664	51,149
1999년	3	0	3	0	0	0
2000년	638	0	586	47	4	1
2001년	3,836	0	2,988	673	162	11
2002년	5,046	0	3,368	1,279	307	81
2003년	6,631	9	4,013	1,705	594	219
2004년	11,430	7	7,145	2,472	1,152	442
2005년	15,091	25	9,416	3,157	1,466	589
2006년	15,966	1,205	8,458	3,463	1,596	684
2007년	11,949	425	6,572	2,790	1,184	543
2008년	12,775	53	7,145	3,066	1,370	637
2009년	20,795	415	11,157	4,994	2,226	1,094
2010년	23,366	413	12,864	5,296	2,529	1,158
2011년	27,462	2,138	13,143	6,117	3,055	1,511
2012년	63,566	18,260	24,616	10,451	5,013	2,579
2013년	66,780	1,883	33,608	14,862	7,595	4,120
2014년	76,122	3,089	39,544	15,057	7,698	4,453
2015년	80,099	1,180	40,170	16,243	8,469	5,211
2016년	92,727	210	49,702	18,479	9,277	5,286
2017년	100,774	30	54,190	20,226	10,013	5,454
2018년	124,773	179	66,792	23,927	12,088	7,115
2019년	205,448	107	118,952	37,856	17,866	9,961

〈부표 28〉 연도별 적립일수별 퇴직공제금 지급자수 (계속)

(단위 : 명)

구분	6년 미만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9년 이상
합계	30,320	18,959	12,542	8,141	14,282
1999년	0	0	0	0	0
2000년	0	0	0	0	0
2001년	2	0	0	0	0
2002년	10	1	0	0	0
2003년	69	20	2	0	0
2004년	122	62	24	4	0
2005년	266	103	47	17	5
2006년	304	162	55	25	14
2007년	234	117	63	13	8
2008년	290	117	58	27	12
2009년	492	236	101	52	28
2010년	588	273	136	67	42
2011년	793	389	168	83	65
2012년	1,332	659	345	174	137
2013년	2,183	1,222	667	312	328
2014년	2,604	1,644	958	523	552
2015년	3,338	2,170	1,421	855	1,042
2016년	3,479	2,219	1,601	992	1,482
2017년	3,450	2,411	1,729	1,179	2,092
2018년	4,590	2,993	2,211	1,576	3,302
2019년	6,174	4,161	2,956	2,242	5,173

〈부표 29〉 연도별 성별 퇴직공제금 지급자수

(단위 : 명)

구분	전체	남성	여성
합계	965,277	858,050	107,227
1999년	3	3	0
2000년	638	530	108
2001년	3,836	2,945	891
2002년	5,046	3,448	1,598
2003년	6,631	4,479	2,152
2004년	11,430	7,758	3,672
2005년	15,091	10,715	4,376
2006년	15,966	11,548	4,418
2007년	11,949	9,157	2,792
2008년	12,775	10,401	2,374
2009년	20,795	17,349	3,446
2010년	23,366	20,199	3,167
2011년	27,462	24,004	3,458
2012년	63,566	57,461	6,105
2013년	66,780	61,341	5,439
2014년	76,122	69,372	6,750
2015년	80,099	73,674	6,425
2016년	92,727	85,341	7,386
2017년	100,774	92,269	8,505
2018년	124,773	114,398	10,375
2019년	205,448	181,658	23,790

〈부표 30〉 연도별 퇴직사유별 퇴직공제금 지급자수

(단위 : 명)

구분	전체	고령	타업종취업	부상질병	자영업	상용근로자	사망	기타
합계	965,277	421,927	144,820	126,911	39,632	26,377	15,792	189,818
1999년	3	0	0	1	0	1	0	1
2000년	638	85	118	30	19	38	4	344
2001년	3,836	1,034	448	164	79	109	30	1,972
2002년	5,046	1,474	1,042	404	272	237	54	1,563
2003년	6,631	1,723	1,361	577	369	637	86	1,878
2004년	11,430	3,607	2,425	1,068	481	575	154	3,120
2005년	15,091	4,792	3,499	1,527	574	572	142	3,985
2006년	15,966	4,954	3,346	1,640	637	518	169	4,702
2007년	11,949	4,352	2,685	1,288	654	435	148	2,387
2008년	12,775	5,050	3,341	1,328	632	382	206	1,836
2009년	20,795	9,454	4,331	2,063	971	676	332	2,968
2010년	23,366	10,078	4,768	1,869	1,136	785	1,852	2,878
2011년	27,462	11,241	5,314	2,465	1,313	800	1,024	5,305
2012년	63,566	19,931	6,485	5,312	1,700	1,380	1,255	27,503
2013년	66,780	25,352	8,045	8,869	2,179	2,235	1,219	18,881
2014년	76,122	35,773	9,083	9,026	2,452	1,743	1,206	16,839
2015년	80,099	35,198	11,776	10,601	3,073	2,018	1,146	16,287
2016년	92,727	44,915	11,606	11,615	3,407	2,489	1,165	17,530
2017년	100,774	45,114	14,263	15,713	4,219	2,779	1,206	17,480
2018년	124,773	56,624	18,443	22,589	5,324	2,994	1,253	17,546
2019년	205,448	101,176	32,441	28,762	10,141	4,974	3,141	24,813

〈부표 31〉 연령별 시도별 퇴직공제금 지급자수

(단위 : 명)

구분	전체	서울	인천	경기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울산
합계	965,277	184,282	61,168	199,980	52,254	49,216	44,266	77,699	14,436
19세이하	210	18	11	37	11	12	13	20	1
20~24세	5,903	690	416	1,281	337	325	333	478	85
25~29세	23,532	3,351	1,961	5,156	1,130	1,256	1,197	1,766	445
30~34세	37,640	6,299	2,597	8,349	1,822	1,835	1,734	2,787	581
35~39세	55,599	9,550	3,565	12,219	2,931	2,833	2,687	4,274	881
40~44세	74,830	13,918	4,692	16,242	3,874	3,783	3,474	5,677	1,078
45~49세	96,712	20,176	6,221	21,507	4,845	4,472	4,186	7,031	1,343
50~54세	108,657	23,778	7,063	24,019	5,492	4,782	4,496	8,218	1,383
55~59세	110,301	23,284	7,201	23,804	5,726	4,976	4,764	8,807	1,459
60~64세	286,906	54,124	18,153	58,192	16,381	15,308	13,203	24,205	4,718
65세	33,111	6,583	1,926	6,197	1,880	1,758	1,495	3,006	529
66~69세	80,739	14,744	4,530	14,508	4,822	4,471	3,942	7,224	1,232
70세이상	51,137	7,767	2,832	8,469	3,003	3,405	2,742	4,206	701

〈부표 31〉 연령별 시도별 퇴직공제금 지급자수 (계속)

구분	(단위 : 명)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강원	제주	기타	
합계	33,181	3,793	40,099	30,261	32,138	45,869	42,936	34,442	8,030	11,227	
19세이하	9	1	11	13	8	17	12	13	1	2	
20~24세	226	30	264	201	255	307	314	247	43	71	
25~29세	812	152	1,050	628	883	1,159	1,021	696	221	648	
30~34세	1,316	175	1,565	1,051	1,532	2,036	1,625	1,097	303	936	
35~39세	1,981	275	2,450	1,574	2,326	2,697	2,368	1,662	473	853	
40~44세	2,616	324	3,256	2,247	2,754	3,450	3,337	2,415	599	1,094	
45~49세	3,152	384	4,181	2,738	3,012	4,093	3,963	3,312	776	1,320	
50~54세	3,679	449	4,760	2,974	3,141	4,300	4,214	3,664	834	1,411	
55~59세	3,990	412	4,648	3,110	3,323	4,521	4,492	3,775	756	1,253	
60~64세	9,743	1,027	11,319	9,418	8,941	13,759	12,667	10,834	2,406	2,508	
65세	1,125	116	1,247	1,148	1,096	1,624	1,663	1,192	242	284	
66~69세	2,836	284	3,080	2,755	2,933	4,573	4,375	3,116	723	591	
70세이상	1,696	164	2,268	2,404	1,934	3,333	2,885	2,419	653	256	

〈부표 32〉 연령별 적립금액별 퇴직공제금 지급자수

구분	(단위 : 명)						
	전체	100만 원 미만	200만 원 미만	300만 원 미만	400만 원 미만	500만 원 미만	600만 원 미만
합계	965,277	201,553	447,237	155,209	70,813	37,124	21,340
19세이하	210	108	90	11	1	0	0
20~24세	5,903	1,714	3,576	520	80	11	2
25~29세	23,532	4,976	13,807	3,470	937	250	72
30~34세	37,640	8,163	20,301	5,940	2,078	715	263
35~39세	55,599	12,167	27,680	9,244	3,607	1,498	665
40~44세	74,830	15,752	34,865	13,215	5,486	2,667	1,383
45~49세	96,712	18,681	43,682	17,344	7,884	3,933	2,289
50~54세	108,657	20,337	47,936	19,775	9,253	4,926	2,667
55~59세	110,301	21,077	47,837	19,483	9,288	5,128	2,965
60~64세	286,906	54,623	128,218	44,440	22,967	13,417	8,580
65세	33,111	7,645	15,760	4,797	2,265	1,145	558
66~69세	80,739	20,404	38,951	11,011	4,621	2,376	1,290
70세이상	51,137	15,906	24,534	5,959	2,346	1,058	606

〈부표 32〉 연령별 적립금액별 퇴직공제금 지급자수 (계속)

(단위 : 명)

구분	700만 원 미만	800만 원 미만	900만 원 미만	1,000만 원 미만	1,100만 원 미만	1,200만 원 미만
합계	12,876	7,915	5,015	2,978	1,705	889
19세이하	0	0	0	0	0	0
20~24세	0	0	0	0	0	0
25~29세	15	3	2	0	0	0
30~34세	110	45	13	6	5	1
35~39세	381	188	101	38	20	9
40~44세	664	361	196	124	64	34
45~49세	1,263	715	402	260	138	77
50~54세	1,548	919	589	371	194	85
55~59세	1,826	1,154	710	403	247	105
60~64세	5,606	3,606	2,393	1,424	830	468
65세	375	221	141	96	62	22
66~69세	789	515	363	191	108	71
70세이상	299	188	105	65	37	17

구분	1,300만 원 미만	1,400만 원 미만	1,500만 원 미만	1,600만 원 미만	1,700만 원 미만	1,700만 원 이상
합계	376	160	65	18	3	1
19세이하	0	0	0	0	0	0
20~24세	0	0	0	0	0	0
25~29세	0	0	0	0	0	0
30~34세	0	0	0	0	0	0
35~39세	0	1	0	0	0	0
40~44세	12	4	3	0	0	0
45~49세	28	12	2	2	0	0
50~54세	32	19	4	2	0	0
55~59세	48	23	7	0	0	0
60~64세	204	83	35	10	1	1
65세	15	4	3	1	1	0
66~69세	29	10	6	3	1	0
70세이상	8	4	5	0	0	0

2019년도  
건설근로자 고용복지  
**사업연보**

---

발행일 | 2020년 6월

발행인 | 송인회

총기획 | 건설근로자공제회 혁신기획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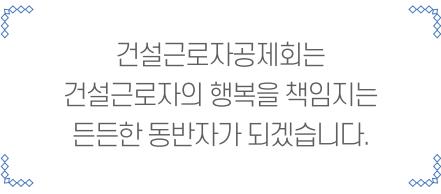
발행처 | 건설근로자공제회

주 소 | 서울특별시 종구 남대문로 109, 10층

전 화 | 1666-1122

---

※ 본 자료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튼튼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Construction Workers Mutual Aid Association

04522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09 국제빌딩 10층  
T 1666-1122 [www.cwma.or.kr](http://www.cwma.or.kr)